

# 인터넷신문의 법제화와 언론중재

황 성 기  
한림대 법학부 교수

- 서울대 법대 졸, 동대학원 법학박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논문 :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언론매체규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방송·통신의 융합과 언론매체규제  
제도의 개선방향」 외 다수

## I. 들어가는 말

요즘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블로그 등 인터넷매체의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증대하고 있다.<sup>1)</sup>

그 중에서 인터넷신문은 지난 2002년 대선 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신문에 대한 이해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대개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신문이란 정보의 제1차적 뉴스제공자가 웹상에서 하루 1회 이상의 정보내용을 갱신하여 여론을 전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신문이라고 파악될 수 있다.<sup>2)</sup>

그런데 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과 2005. 1. 27. 법률 제7369호로 전문개정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하 '신문법'이라 한다)은 기존의 오프라인 매체와 공존하고 있던 온라인매체 중에서 특히 이러한 '인터넷신문'을 법제화하기에 이른다. 그동안 인터넷은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초창기부터 오프라인상의 범규범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다. 따라서 인터넷신문의 법제화는 일단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오프라인상의 신문에 대해서 적용되었던 기존의 각종 언론 '지원' 정책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신문법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는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직무, 그리고 신문발전기금의 설치 및 조성,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특히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에는 인터넷신문이 포함되

1) 이에 관한 간략한 소개로는 최영, "인터넷매체의 현황과 문제점", 「관훈저널」 제45권 제1호(통권 제90호), 관훈클럽, 2004.4, 94-100면 참조.

2) 이러한 인터넷신문의 특성으로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배포될 수 있다는 점, 진입장벽이었던 구축비용이 없어짐에 따라 신생기업들이 기사의 질만으로도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 기사가 디지털화되어 저장가능하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공할 수 있어 그 이용가치가 높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 문주영, "인터넷신문", 「정보통신산업동향」 200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8. 25-26면 참조.

인터넷신문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제정으로 언론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  
내지 규제정책의 적용을 받게 돼

는 것으로 해석된다.<sup>3)</sup>

둘째,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오프라인상의 신문에 대해서 적용되었던 기존의 각종 언론 '규제' 정책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신문법 제12조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등록을 요구하고 있고,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제도도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동법 제40조 제1호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신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은 신문법상의 등록절차를 마친 인터넷신문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중재제도가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결국 인터넷신문의 법제화는 위와 같이 동전의 양면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글은 인터넷신문의 법제화가 갖는 의미, 한계 및 문제점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인터넷신문의 법적 지위의 문제, 인터넷신문의 개념정의의 문제,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언론중재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의 의미, 한계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인터넷신문의 법적 지위

2005. 1. 27. 제정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인

터넷신문을 법제화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은 다음과 같이 이중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 1. 언론으로서의 지위

우선 인터넷신문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제정으로 인해 여론형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 내지 언론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지니게 되었다. 예컨대 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는 '언론'의 개념을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으로 정의함으로써, 언론중재법이 적용되는 언론에 인터넷신문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점에서는 전통적인 언론기관인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셈이다. 물론 정도 내지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언론사 내지 언론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동안 방송, 정기간행물 등에 부여되었던 권리뿐만 아니라 각종 의무 등이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인정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상의 각종 지원정책 내지 규제정책이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된다.

### 2.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

인터넷신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3)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여 이전부터 인터넷신문 내지 인터넷언론의 법제화가 주로 주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인터넷 언론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경우에는, 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혜택이나 언론교육기관의 교육기회 제공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다. 장하용, "온라인 저널리즘의 윤리, 현황과 과제", 「언론중재」 제23권 제1호(통권 제86호), 2003년 봄, 90면.

로서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우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기통신사업자에는 기간통신사업자(基幹通信事業者), 별정통신사업자(別定通信事業者), 부가통신사업자(附加通信事業者)가 포함된다. 여기서 부가통신사업자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이외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sup>4)</sup>

즉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인 전화서비스, 가입전신서비스, 통신회선설비임대서비스,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비스 이외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이나 PC통신 등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중에서 주로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터넷신문은 전기통신사업자 중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도 해당된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신문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편 인터넷상에서 정보제공과 관련되어 있는 사

업자 내지 주체는 정보제공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인터넷콘텐츠제공자(Internet Content Provider : CP)는 인터넷을 통해서 콘텐츠나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제공하는 자라 할 수 있다. 일명 '정보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콘텐츠호스트(Internet Content Host : ICH)는 타인의 정보(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명 '정보매개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전통적인 PC통신 즉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상의 각종 포털 사이트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용자로 하여금 정보를 이용 내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를 관리·매개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 ISP)는 타인의 정보(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즉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일명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메가패스,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광대역 초고속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신문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및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더 나아가서 그 정보 제공형태와 관련하여 인터넷콘텐츠제공자 내지 인터넷콘텐츠호스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전기통신

4) 이상직, 「전기통신사업법론」, 진한도서, 1998, 115면.

인터넷신문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적용도 받게 되어있어  
규제 장치들 간의 조화가 요구돼

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상의 각종 규제장치들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인터넷신문의 이중적 지위로부터 파생되는  
법체계상의 문제점

위에서 인터넷신문의 법적 지위를 분석하면서, 우리는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도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중적인 법적 지위로 인해,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도 적용되게 된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콘텐츠규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조항이 존재한다. 바로 불법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53조이다. 이 제도의 헌법적·법체계적·법정책적 문제<sup>5)</sup>를 떠나서, 이 제도가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오프라인 언론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중재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인터넷상의 일정한 정보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구제 및 그와 관련한 사업자의 책임과 관련한 독특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우선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당해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적·형사적 제재는 없으나 신청인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 한도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타인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sup>6)</sup>

그런데 이러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가 규정하고

5) 자세한 것은 황성기, “불온통신규제와 표현의 자유-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사건의 평석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분석-”, 「인터넷법률」 통권 제15호, 법무부, 2003. 1. 20., 60-77면 참조.

6)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관한 설명으로는 황승흠·황성기,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414-417면 참조.

있는 정보삭제 및 반박게재청구제도<sup>7)</sup>와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중재제도가 법체계적으로 어떠한 관련성이 있고, 어떻게 상호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인터넷신문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의해 법제화됨으로써, 인터넷신문은 이중적인 법적 지위를 갖게 되지만,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제장치들과의 조화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sup>8)</sup> 이러한 문제점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인터넷신문에 대한 개념정의의 문제점과 결합되게 되면, 크게 증폭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 Ⅲ. 인터넷신문의 개념정의

#### 1. 인터넷신문과 인터넷언론

##### (1)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

신문법 제2조 제5호는 인터넷신문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한편 언론중재법 제2조 제8호는 인터넷신문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결국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의 개념과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의 개념은 동일하다.

한편 신문법의 전신인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2004. 10. 20. 정청래 의원의 대표발의에 의해 발의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이하 ‘정청래 의원안’이라 한다)<sup>9)</sup>에서는 인터넷언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안에서의 인터넷언론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이하 “전자적 발행”이라 한다)하는 전자적 간행물과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전자적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었다(정청래 의원안 제2조 제5호).

또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2004. 10. 21. 대표 발의한 신문 등의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천영세 의원안’이라 한다)에서는 인터넷신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

7) 정보통신망법 제4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삭제 및 반박게재청구제도가 기존의 반론권제도와는 차이가 있지만, 보충적으로나마 반론권을 실시하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예컨대 이재진, “인터넷언론의 보도상의 특성과 법적 책임”, 「언론중재」 제23권 제2호(통권 제87호), 언론중재위원회, 2003.6, 30면.

8) 물론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인터넷신문의 법제화를 찬성한 견해가 합리적이긴 하다. 예컨대 김재영, “집중점검 인터넷언론: 위상강화 위한 법제화 필요-정간법 제2조에 근거규정을”, 「신문과 방송」 통권 제386호, 2003.2, 146-149면 참조. 하지만 법제화과정에서 필자가 제기하는 이 문제들을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

9) 이 개정안은 기존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 정청래 의원안은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입법청원의 형태로 김재홍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신문 등의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함께 2004 년도에 한국사회를 뜨겁게 했던 언론개혁입법, 특히 신문시장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정청래 의원안에 여야합의사항이 반영된 것으로서, 2004. 12. 31. 우상호 의원 외 149인으로부터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고, 2005. 1. 1.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현재의 신문법이 제정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 개념은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매개하는 경우를 포함해  
 대부분의 포털사이트까지 법의 적용을 받게 돼

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전파하는 간행물”로 정의되고 있었다(천영세 의원안 제2조 제9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나 사이트들도 인터넷언론사에 해당될 수 있다.

(2)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

2.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방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8조의 5는 인터넷언론사를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공직선거법이 인터넷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개념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언론사의 개념정의를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 개념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정의내릴 수 있다.<sup>10)</sup>

인터넷신문이라는 용어가 ‘인터넷’과 ‘신문’이라는 용어의 합성어라고 한다면, 인터넷신문에 대비되는 개념은 바로 인터넷방송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방송은 인터넷과 방송이 합성된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방송은 “인터넷을 통해 영상, 음향정보를 방송적인 형태로(실시간으로 그리고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유선이든 무선이든 인터넷 TCP/IP 프로토콜에 의해 비디오, 오디오와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되 이를 파일전송(File Download) 방식이 아닌 스트리밍(Streaming) 방식에 의해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sup>11)</sup>

이러한 개념정의를 따르면, 사실 기존의 언론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들도 인터넷언론사에 해당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여론형성이나

그런데 방송(broadcasting)이라는 용어가 갖는 전통적인 의미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터넷방송은 수신자와 송신자가 상호작용을 통한 ‘쌍방향성’이 그 특징이기 때문에 사실 ‘방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방송으로 통칭되는 인터넷콘텐츠 내지 인터넷상의 커뮤니케이션방식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

10)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에 대한 이러한 개념정의를 대해서는 인터넷언론을 온라인 언론이 지니는 특징으로서보다는 여전히 오프라인 언론의 입장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또 이 견해는 인터넷언론을 그 온라인성에 입각하여 정의내리지 않는 경우, 기존의 오프라인 언론매체인 신문, 방송 등과 구별되는 인터넷언론의 범주가 불명확하게 과잉 포섭되거나 또는 과소 포섭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강경근, “인터넷언론과 선거”, 「헌법학연구」 제9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3. 10, 136-137면 참조.

11) 인터넷방송의 현황에 대한 소개로는 황상재, “인터넷 신문·방송 현황”, 「관훈저널」 통권 제73호, 관훈클럽, 1999.12, 165-176면 참조.

서 인터넷방송이라는 용어보다는 Narrowcasting, Internetcasting, Pointcasting, Streaming Media, Webcast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sup>12)</sup>

이상과 같은 인터넷방송의 개념에 대한 완전한 의미에서의 법적 정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유사한 개념정의는 존재한다.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3조에 의하면,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로 인터넷방송의 한 형태가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인터넷방송에 대한 완전한 의미에서의 법적 정의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인터넷방송의 특성 중의 하나를 적시하여 규제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송법 제32조 제1항은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송·통신의 융합에 대비한 것으로서 소위 인터넷방송에 대한 내용규제권한을 방송위원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규정이다. 한편 방송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방송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로 개념정의하고 있다. 결국 방송법이 인터넷방송을 직접적으로 개념정의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방송법상의 규정내용을 살펴볼 때, 방송법에서 전제하는 인터넷방송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방송법이 전제하는 인터넷방송은 그것을 제공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개념과 범위가 설정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현행법상의 인터넷방송에 대한 개념정의는, 인터넷방송에 대한 관할권의 분쟁의 타협물로서, 심의기구 중심으로 개념정의 및 규율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 것이다. 즉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은 방송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고,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규정과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언론중재법은 인터넷신문은 법제화하고 있으면서도, 인터넷방송은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 3. 정 리

이상에서는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에 관한 개념정의,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에 관한 개념정

12) 인터넷방송과 웹캐스팅을 분리하여, 인터넷방송은 스트리밍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웹서비스라고 정의를 내리는 반면에, 웹캐스팅은 전문화된 스트리밍을 비롯하여 푸쉬(push)나 온 디맨드(on-demand) 등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포괄적인 인터넷 웹서비스라고 정의내리는 견해도 있다. 최영, 『인터넷방송 : 웹캐스팅의 실제와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1999), 22면.

언론중재법은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의, 그리고 정보통신망법과 방송법상의 인터넷방송에 관한 규정내용 등을 검토하였는데, 이 개념들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1) 개념정의들간의 공통점

위에서 도표로 정리한 각 개념들간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법률안 내지 법령들이 비록 인터넷(정청래 의원안), 정보통신망(천영세 의원안),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신문법), 인터넷

홈페이지(공직선거법), 컴퓨터(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회선(방송법) 등의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 수단을 이용해서 기사나 정보 등을 보도, 제공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각 개념들이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인터넷신문과 인터넷언론간의 개념정의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그 대상을 국한시키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관련 법률	정청래 의원안상의 인터넷언론	천영세 의원안상의 인터넷신문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방송	방송법상의 인터넷방송
근거규정	제2조 제5호	제2조 제9호	제2조 제5호	제8조의 5	제43조	제3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개념정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이하 "전자적 발행"이라 한다)하는 전자적 간행물과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전자적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전파하는 간행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 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

설정한 이유는 일반적인 인터넷콘텐츠 내지 인터넷상의 일반적 정보와의 차별성을 상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발행 내지 간행의 '정기성' 혹은 '지속성'이나 '기사생산의 독자성', '기사의 취재·편집·집필'을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 (2) 개념정의들 간의 차이점

각 개념들 간의 차이점과 관련하여 주목을 요하는 것은 정청래 의원안상의 인터넷언론과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의 개념정의에서 '기사를 매개' 하는 경우까지도 개념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매개하는 경우까지 그 개념범위를 확대하는 이러한 개념정의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인터넷언론의 공표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구제의 기회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언론의 고유기능이 여론형성에 있음을 고려하면 취재·편집·집필이 없는 인터넷 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언론기능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sup>13)</sup>

### 4. 개념정의의 문제점

이상에서 우리가 각종 법률 내지 법률안상의 개념들을 살펴보았는데, 개념정의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의 개념이 일반적인 인터넷콘텐츠와 어떻게 차별적으로 정의되고 있는지이다.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인터넷신문의 법제화는 바로 인터넷신문에 대한 '지원' 및 '규제'의 법제

화를 의미하고, 따라서 지원 및 규제 '대상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문법 제12조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등록을 요구하고 있고,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제도도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 인터넷신문의 등록,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제도는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신문을 통한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집행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범위확정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현행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의 개념정의는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 (1) 적용범위의 포괄성

우선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문제점은 적용범위의 포괄성이다. 물론 신문법과 공직선거법은 적용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정보 등의 전파'의 목적을 설정하고 있고, 또한 '발행의 지속성'이나 '기사생산의 독자성', '기사의 취재·편집·집필' 등과 같은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일반적인 인터넷 콘텐츠 내지 인터넷상의 일반적 정보와의 차별성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요소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은 여전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의 것들이기 때문에, 적용범위의 포괄성 문제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도 어떻게 보면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정보 등의 전파를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문법과 공직선거법이

13) 문화관광위원회,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신문 등의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안(천영세 의원 대표발의), 신문 등의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김재홍의원 소개) 검토보고서」 2004. 11. 35면.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을 인터넷상의  
일반적인 콘텐츠나 정보와 차별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적용범위가 포괄적**

상정하고 있는 '목적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발행의 지속성이나 기사생산의 독자성, 기사의 취재·편집·집필 등과 같은 '행위요건'도 해석에 따라서는 충족시킬 수 있다. 만약 개인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이들 개인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에 대해서도 등록,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sup>14)</sup> 더욱이 신문법 제40조 제1호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범위의 포괄성 문제와 결합하여, 소위 죄형법정주의의 하위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위험성은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개념이 '매개'의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것에서 더욱더 발견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매개의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이다. 매개개념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인터넷상의 각종 포털사이트도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개념에 포섭될 여지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공직선거법상의 규제와 신문법상의 규제가 그 입법목적 내지 입법취지에서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개념이 매개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문법이 정청래의원안이나 공직

선거법과는 달리 매개하는 경우를 배제시킨 것은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sup>15)</sup>

(2) 위임입법의 한계의 일탈

두 번째로 거론할 수 있는 문제점은 위임입법의 한계의 일탈이다. 현행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을 개념정의하면서 인터넷신문의 해당기준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다. 예컨대 "...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의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의 개념정의 자체가 적용범위의 포괄성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중요한 사항의 규율을 행정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문제 즉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의 문제도 노정시키게 된다.

#### IV.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상의 차별적 규제

위에서는 인터넷신문의 법제화에 있어서 인터넷신문에 대한 개념정의의 문제점을 주로 분석하였다. 지금부터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상의 차별적 규제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14) 신문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각종 법안들에 대한 비판이지만, 이와 유사한 내용의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상헌, "인터넷언론 입법: 필요성 인정하나 매체특성 반영 못해", 「신문과 방송」 통권 제407호, 한국언론재단, 2004.11, 162면.

15) 물론 요즘 대형 포털사이트도 자체적인 기사제작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포털사이트도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의 개념에 포섭될 여지는 있다.

즉 인터넷신문과 여타의 오프라인 언론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작업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중재제도 적용의 문제점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선 여기서 ‘오프라인 언론’은 언론중재법이 개념정의 내리고 있는 ‘언론’ 중에서 인터넷신문을 제외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는 ‘언론’을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하는 오프라인 언론이라는 개념은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을 의미한다.

### 1. 신문법상의 차별적 규제의 내용 및 특징

먼저 제1장 총칙 중에서 제5조(정기간행물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6조(연수 등)는 인터넷신문에 적용되지 않는 반면에, 제3조(편집의 자유와 독립), 제4조(정기간행물 등의 사회적 책임)는 적용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론중재법상의 모든 언론중재제도가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언론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신문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기간행물 등의 사회적 책임규정도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관한 규정이 비록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 점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제2장 독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부분 중 제8조(독자의 권익보호)는 적용되지만, 제9조(독자권익위원회), 제10조(독자의 권리보호), 제11조(광고)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즉 독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원칙적 선언 규정만 적용되고, 구체적인 독자의 권익보호장치들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제3장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등록 등에 관한 부분 중, 제12조(등록), 제13조(결격사유 등), 제19조(필요적 게재사항), 제21조(등록취소의 심판청구 등), 제22조(직권등록취소), 제23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제24조(정기간행물 등 제호의 사용제한), 제25조(청문)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하지만 제14조(외국자금의 출연 등), 제15조(겸영금지), 제16조(자료의 신고 등), 제17조(시장지배적 사업자), 제18조(편집위원회 등), 제20조(납본), 제26조(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등의 설치)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등록제도를 인터넷신문에 적용하는 한, 제13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는 등록제도의 적용의 일환으로 당연히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규정들이라고 할 것이지만, 기타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등 인터넷신문 이외의 오프라인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각종 시장규제장치들이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제4장 신문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부분은 주로 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직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신문발전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33조 제1항은 신문발전기금의 설치목적은 “신문 등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진흥”으로 설정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은 신문발전기금의 용도 중의 하나로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 제4호는 신문발전위원회의 직무 중의 하나로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의 심의·의결”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제4장 부분은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제37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문유통원의 설립은 그 내용 및 성격상 인터넷신문에 적용되기 힘들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신문법상의 각 조항들의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지원정책과

언론중재법에서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 개념보다  
더 확장된 개념을 채택하는 것은 정당성의 관점뿐만  
아니라 실효성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어

관련된 제도들은 적용하고 있지만, 규제정책과 관련된 제도들은 적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언론중재법상의 차별적 규제의 내용 및 특징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언론옴부즈맨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6조(고충처리인)만이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고 있지, 기타 언론중재법상의 모든 언론중재제도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언론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정 리

위와 같이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상의 차별적 규제의 내용을 살펴 볼 때, 비록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개념이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개념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는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더라도,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문법상의 취급방법과 언론중재법상의 취급방법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일응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입법목적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즉 신문법은 거대 중앙일간지로 대표되는 신문 '시장'에서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언론중재법은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 등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기관에 의한 '개인의 권익침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인터넷신문과 기타 오프라인 언론과의 차이점의 반영이다.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으로 대표되는 인터넷매체에서 형성되는 '언론시장'의 성격과 기타 오프라인 언론, 특히 신문,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매체에서 형성되는 '언론시장'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점은 신문법상의 차별적 규제내용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신문에 대한 규제방법에 있어서 언론중재제도의 적용은 최소한의 필요한 규제장치라는 점이다. 즉 인터넷매체에서 형성되는 언론시장의 성격이 기타 오프라인 언론에 의해서 형성되는 언론시장의 성격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언론에 의한 개인의 권익침해는 인터넷신문 등과 같은 인터넷언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인터넷의 특성인 복제성, 파급성, 영향력 등으로 인해 그 피해의 정도가 더 클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언론중재제도는 인터넷신문에 의한 것이든 혹은 오프라인 언론에 의한 것이든, 일정한 언론매체를 통한 의사표현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필요최소한의 권익구제장치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채택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이라는 개념이 결과적으로 그 외형적인 '형태'를 중심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현행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개념과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개념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문법상의 개념정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여기서 언론중재법의 입법목적이 언론에 의한 개인의 권익침해의 구제에 있기 때문에,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개념보다 더 확장된 개념을 언론중재법에서 채택하여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발전과정이라든지,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모든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서 언론중재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그 정당성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실효성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파되는 의사표현이나 정보 중, 언론중재제도가 적용되는 인터넷신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기타의 규제장치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둘째, 언론중재법의 입법목적이 언론에 의한 개인의 권익침해의 구제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그러한 권익침해구제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이다. 즉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언론중재제도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침해된 권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인터넷매체를 이용하여 전파되는 의사표현이나 정보에 의해 개인의 권익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장치의 설계 및 운영의 문제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인터넷신문에 있어서의 언론중재제도의 실효성확보방안에 관한 문제를 의미하게 된다.

## V.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중재제도 적용의 실효성 확보

### 1.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중재제도 적용의 정당성문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의한 인터넷신문의 법제화는 언론을 통한 피해발생시 피해자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일단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이 유통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정보제공과 여론형성이라는 기존 오프라인 신문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율을 받을 뿐이어서, 인터넷을 통한 공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없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간편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없는 기존 법률상의 문제점 내지 법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sup>16)</sup>

일반적으로 반론권으로 대표되는 언론중재제도의 존재의의는 언론으로 인한 일반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면서도, 동시에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켜 언론보장을 더욱 더 충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언론중재제도의 존재의의를 이렇게 인정하는 한, 언론의 발현형태가 오프라인 매체이든 혹은 온라인매체이든 차별적으로 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이다.

16) 특히 인터넷신문이 다른 오프라인 언론과 비교해 볼 때 갖는 절대적인 장점은 속보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속보성이 오히려 부정확한 뉴스정보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법적 권리구제장치가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터넷언론이 갖는 속보성과 이로 인한 저널리즘의 문제들에 관한 간략한 소개로는 김재영, "인터넷언론의 오보, 명예훼손과 표현자유의 경계", 「계간 언론개혁」 통권 제4호, 21세기언론연구소, 2001년 겨울, 185-187면 참조.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적용될 정정보도 등의  
특수한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

특히 인터넷신문의 개념을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이 결합된 단지 기존 오프라인 신문의 다른 형태의 발간'으로 보는 경우<sup>17)</sup>에는, 더욱 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언론중재제도의 적용을 거부할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반면 반론권이 일방적 정보전달매체인 매스미디어에 있어서의 정보수용자의 정보접근성을 위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터넷언론의 경우에는 그 의사소통의 쌍방향성 등이 그 특징이므로, 이와 같은 의미의 반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실익은 그리 크지 않거나, 설령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형식대로 적용되기는 어렵고 변용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sup>18)</sup>도 존재할 수 있다.

결국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중재제도의 적절성 문제는 인터넷신문을 포함한 인터넷언론의 특성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들을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중재제도 적용의  
실효성 확보문제

위와 같이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언론중재제도를 적용하는 것의 정당성 내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인터넷신문에서의 언론중재제도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의 방법과 관련한 문제이다. 현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6항은 "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한 방법의 원칙'이 반론보도청구권과 추후보도청구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과연 인터넷매체의 경우에 동일한 방법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혹은 피해자의 권익구제의 효과라는 측면에 있어서 기타 오프라인 언론에서만만큼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적용될 정정보도 등의 특수한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sup>19)</sup>

그리고 언론중재를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이나 조직과 관련하여, 인터넷신문이 법제화되고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언론중재제도가 적용된 이상, 향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조정신청이나 중재신청에 대비하여 중재위원의 상근화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20)</sup>

17) 예컨대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 I-21세기 표현의 자유-」, 법문사, 2002, 453면.

18) 예컨대 강경근, "인터넷 언론의 현실과 입법방안", 「언론중재」 제23권 제2호(통권 제87호), 언론중재위원회 2003.6, 16면.

19) 예컨대 인터넷신문에서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항상 초기화면에 접속하는 경우 등장하는 팝업창의 형태로 게재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 I-21세기 표현의 자유-」, 법문사, 2002, 466면.

## Ⅵ. 나오는 말

이상에서는 인터넷신문의 법제화가 갖는 의미부터 시작하여, 인터넷신문의 법적 지위의 문제 및 법체계상의 문제, 인터넷신문의 개념정의의 문제,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언론중재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의 의미, 한계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디지털혁명의 산물인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은 현실세계에서 삶을 영위하는 우리들에게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서 논의한 인터넷신문의 법제화 및 언론중재제도 적용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히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는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상과 의견이라는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부여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사이버공간과 현실세계의 긴장관계도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민주사회

에서의 필요불가결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사이버공간에서도 가능한 극대화시키고,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가치와 개인의 인격권 등 권익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라는 또 다른 가치간의 갈등에 있어서 이들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우리의 주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인터넷신문으로 대표되는 인터넷언론의 기능과 그 법적·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사이버공간과 현실세계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에 의한 인터넷신문의 법제화는 바로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하나의 사회적 타협물에 불과한 것이지, 궁극적인 해답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바로 이 점이 궁극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토론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 중재절차의 변화에 따른 법적 고찰

김 서 중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 서울대 신문학과 졸  
동 대학원 석사, 박사
- 논문 : 「한국의 신문 개혁을 위한  
법률개정 제안」,  
「한국언론의 문제점과 과제」,  
「언론자유와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  
외 다수

언론기본법에 처음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언론 침해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해온 언론중재제도가 2005년 1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물론 언론중재제도에 영향을 미친 법개정들은 이전에도 있었다. 원래 언론중재제도의 출발은 언론기본법에서 그 형식을 ‘정정보도청구권’을 빌어 시작하였다. 이 틀은 1987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법)’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하지만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용어와 달리 이후 1986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된 바와 같이 ‘반론권’이 그 본질이었으며, 이에 따라 1995년 12월 30일에는 법 개정을 거쳐 ‘반론보도’라는 명실상부한 형식을 갖추었다. 언론 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법이 보장하고 있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는 반론보도만이 아니라 정정보도, 손해배상, 추후 보도 등이 있음은 물론이다. 또 그 각각이 다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반론보도는 피해

자의 권리 구제는 물론 여론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권리 개념으로서 언론중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을 이루는 것이었다. 또한 반론보도는 정정보도와 같이 증거조사 등 사법적 판단을 위한 까다로운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즉각적인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 적절한 방안이다. 한편 추후보도는 사실상 중재절차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언론이 수용해야 할 수용자의 권리 개념이다. 따라서 반론보도만이 전치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했던 권리 구제 방식이었고, 그 결과 중재위원회를 거쳐야 소를 제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본 기능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내용과 형식을 일치시킨 1995년 법 개정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존 정간법이 규정하고 있던 ‘침해에 대한 구제’(언론중재 관련) 조항들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수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침해에 대한 구제’ 조항과 정간법에 규정된 일반적 언론 활동 조항은 그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그런데도 단일한 법에 묶여 있으므로 해서 언론중재에

관한 개정이 순조롭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또 중재가 재판상 화해절차에 준하기 때문에 조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중재 역할을 할 수 없었고, 1995년에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직권 중재 권한을 도입하였지만, 이 또한 이행의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 것이었다.<sup>1)</sup> 더 나아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은 아예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했고, 언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 방법들을 통합하여 운영하며,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언론 피해 구제에 관한 별도의 입법을 위한 개정안들을 제시해왔다.

국회가 2005년 1월 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바로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며, 이 법은 그 동안 제기되었던 언론 침해의 구제에 관한 법적 한계의 많은 부분을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법적으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질 부분이 남아 있으며, 원활한 중재를 위해 달라지는 중재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이 글에서는 언론중재법의 법적 한계와 절차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언론중재법 개정의 방향과 그 의미를 살펴 볼 것이다. 언론중재법의 법적 한계는 결국 그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의미가 명확해질 것이며, 중재절차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 1. 언론중재법의 주요 사안들과 그 의미

분산되어 있는 법적 체계가 단일법으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전치주의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기존에는 반론보도에 한해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택했는데 이제는 모든 중재 사항에 대해서 임의적 전치주의를 택했다. 다음으로는 실질적인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사실상 조정제도이었던 기존의 중재제도를 조정과 중재로 구분하고, 당사자의 사전 약속을 전제로 하는, 즉 결정의 강제가 가능한 실질적인 중재제도를 도입하였다. 세 번째로는 조정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의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청구에 더하여 손해배상을 그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네 번째로는 온라인신문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 가. 전치주의의 변화

기존에 정간법이 19조 1항에서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필요적 전치로 규정한 것과 달리 이번 언론중재법에서는 18조에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전치로 바꾸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우선 반론보도권 행사에서 전치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중재위원회는 언론관계법령에 밝은 법조인들과 전직 언론인들 등으로 중재부가 구성되어 있어서 언론사

1) 직권중재 결정을 중재부가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당사자들이 승복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었다.

언론중재법의 취지는 강제는 하지 않지만  
중재제도가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및 피해자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또한 중재부의 절차는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행되므로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가 있고, 반론보도 사건은 그 보도의 사실여부를 불문하는 것이므로 심리가 비교적 간단하여, 구태여 법원의 상세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고, 국민들이 반론권에 대한 법적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중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토대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가 더 용이하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중재(조정)가 사실상 재판상 화해절차에 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양 당사자가 불복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고, 직권 중재의 결정조차도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시간만 지체시킨다고 보는 관점이다.

물론 그 동안의 조정 성립률만을 놓고 보면 전치주의가 갖는 실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을 불문하고 조정 성립률만을 고려할 수는 없다. 사안이 중대할수록 조정 성립은 어렵고, 반면에 시간은 지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임의적 전치로 가는 것이 수용자의 이익에 부합한다. 반면에 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동의하는 사람에게는 실질적 권리 구제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실질적인 중재제도의 도입이 갖는 의미이다.

나. 실질적 중재제도의 도입

언론중재법은 그 동안 중재제도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중재의 종류를 정확히 조정과 중재로 구분하고(7조 1항), 중재의 경우는 “당사자의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

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립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24조 1항)”고 규정하였다. 이는 종래의 조정·심의 기능에 덧붙여 실질적인 중재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언론중재법의 취지는 강제는 하지 않지만 실질적 효력이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절차를 정확히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 조정범위의 확대

언론중재법은 18조 2항에서 “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손해배상도 중재의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손해배상을 중재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어 왔다. 손해배상을 중재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구제 방법들 사이의 조정을 통해 피해자의 구제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최선의 결과로는 언론피해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찬성하는 쪽의 견해이다. 반면 손해배상은 정정보도보다도 판정의 어려움이 있는 사항으로서 심리기간, 심리 방식 등에 제한이 있는 중재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하지만 필요적 전치가 아닌 이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여타의 구제 방법과 견주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 또한 실질적 중재 도입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판정할 수 있는 수단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관건일 것이다.

## 라. 조정 대상의 확대

최근 인터넷의 활성화로 법적으로는 유사 언론에 해당하는 현상들이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인터넷 언론을 중재의 대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정간법에 중재 조항이 들어 있어서, 기타 조항의 개정과 연동되어 그 시기가 늦어지고 있었던 측면이 있다. 이번에 인터넷신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신문법의 개정과 더불어 이루어졌지만 설사 신문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언론피해로 인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당연히 인터넷신문도 포함할 수 있다. 언론피해로 인한 세 가지의 민사적인 구제방법 중에서 최소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은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인정되고 있는 것을 정간법에 다시 규정해 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정간법에 인터넷 신문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해도 인터넷신문에 의한 구제 방법은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하여도, 이 권리의 성질을 정간법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된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고, 민법에 규정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배상의 특수한 한가지의 경우로 보거나, 또는 백보 양보하여 창설적인 규정으로 보더라도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넓혀서, 인쇄매체로부터 전자매체로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법 논리상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법적인 변화로부터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론중재법의 의도는 침해된 수용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실질적인 중재제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 2. 중재 절차상의 변화

진술한 큰 흐름의 변화에 따라 중재 절차에도 몇 가지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첫째는 기일과 관련한 부분이다. 두 번째는 조정절차이다. 세 번째는 조정을 위한 수단의 확보이다. 네 번째는 실질적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마지막으로 당사자를 확대하는 규정의 도입이다.

### 가. 기일의 조정

기존의 정간법에서와 달리 언론중재법은 피해자가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늘여주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권리 보호를 확대하려는 의도의 반영이다. 반면 언론사는 그 의무 이행 기간을 좁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 하였다.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을 규정한 14조 1항에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라는 규정은 이전의 1월을 확대한 것이다. 피해자로서는 가능한 빨리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이롭지만, 권리 구제 과정이 쉽지 않고 복잡한 삶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권리보호에 합당한 것이다.

반면 언론사에게는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 정간법에서는 “언론사가 반론보도게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

언론중재법은 피해자가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해

론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16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15조 2항에서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동조 3항에서 “언론사의 대표자가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발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여 언론사의 이행 기간을 좁혔다. 언론에 의한 피해의 구제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변수이므로 언론사의 성의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나. 조정 절차의 변화

조정 절차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인의 불출석 시 자동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횡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린 것이다. 19조 3항에서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 즉 피해자의

권리를 언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으로서 진일보하였다. 반면에 4항에서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천재지변을 이유로 무한정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이 침해받은 사항을 구제받기 위한 수단의 선택에서 절차상의 경직성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언론중재법은 18조 6항에서 “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심리의 과정에서 반론보도, 정정보도, 손해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기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현재에도 행해지고 있는 것을 법제화하여 그 유연성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다. 조정 수단의 확보

언론중재위원회의 기존 중재과정은 시간의 촉박함은 물론 실질적으로 사실 또는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당사자의 진술과 당사자들이 제시하는 근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설득력 있는 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20조(증거조사)

① 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③ 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 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 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는 중재부의 위원들이 조정을 할 때 당사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법적인 논리에 따라 적극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14일(직권조정인 경우 21일)에 불과한 기간에 얼마나 효율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

#### 라. 실질적 중재의 도입

전술한 바와 같이 언론중재법은 24조 1항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공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를 통해 실질적 중재의 길을

열어 놓았다. 더군다나 2항에서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중에도 할 수 있다고 하여 효율적인 중재를 위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더군다나 25조에서는 중재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중재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 마. 당사자 범위의 확대

언론중재법 14조는 4항에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언론 보도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기관이나 단체가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언론보도는 그 기사의 모호한 표현을 통해 당사자가 명시되지 않아도 그 정황상의 관련성으로 인해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자기 권리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자의 권리를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판단은 여전히 중재부에 남아 있다. 그렇다면 하나의 생활단위를 형성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을 판단하는 것은 중재부의 일이다. 문제는 판단에 힘을 신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존하는 화해의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생활단위,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 3. 법적 보완의 필요성

언론중재법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법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법적인 보완을 필요로 한다. 그 첫째는 직권조정인

직권조정결정은 중재부가 내리는  
객관적 결정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재판과 일정한 연계를 가져야

불복 이후의 처리 과정에 대한 부분이다. 둘째는 중재결정에 관한 절차에 대한 자세한 규정 미비와 더불어 불복 시 후속 대처에 관한 불명확성 등이다.

가. 직권조정에 대한 불복

직권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에 준하는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피해자의 신청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또한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준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이의 신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직권 조정 결정은 14일 간의 충분한 조정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 접수 후 21일까지 할 수 있도록 기일을 연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의 신청 후 자동으로 소제기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제기 이후 직권조정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물론 직권조정절차도 재판상 화해절차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가질 수는 없지만,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중재부가 내리는 객관적 결정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재판에 일정한 연계를 가지고 그 판단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직권 조정은 피해자의 선택가능성(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은 넓히고, 중재는 효율화하겠다는 이번 법 개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직권 조정이 언론사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는 피해자인 신청인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만일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애초 조정기간중에 합의에 의한 조정에 호응했을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도 직권조정의 결과가

재판과 전혀 무관하다면 피해자는 소제기의 기회를 7일간 늦추어야 하며, 중재위원회를 통해 21일 간의 긴 시간을 보낸 결과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전술한 바와 같이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데 이때 피해자인 신청인의 경우 자동으로 소가 제기(22조 4항)”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상실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물론 피해자인 원고가 즉각 소 취하를 하면 될지 모르나 이는 신청인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은 아니지만 소제기 여부에 대해 신청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나. 직권 중재 절차의 미비

직권중재는 그 결정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므로 그 결정 과정이 엄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은 그 규정이 지나치게 간략한 측면이 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신청하고(24조 1항), 조정절차 계속중에도 할 수 있고(24조 2항), 그 과정은 아래와 같이 민사소송법에서 준용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고(24조 3항) 그 효력에 관해 규정(25조)하고 있을 뿐이다.

민사소송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

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다.

④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호주·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척의 재판)**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① 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수탁판사(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재부의 결정과 중재위원의 기피, 제척 또는 이 상황에서 중재과정의 정지 등만을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법원의 효력과 같은 결정을 지니는 중재 결정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권리, 피신청인의 권리, 각자의 의견 소명 방식, 증거 채택의 방법, 증인 인정 여부, 중재 비용의 부담에 대한 명시 등이 부족하다. 대표적인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는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것이 많다.

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를 보면 신청인이 신청을 하면 (가) 중재합의서, 중재신청서, 중재신청의 취지를 입증하는 서류의 유무 (나)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확인하여 접수를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신청인의 권리이다. 피

중재절차의 경우 법 개정 전이라도  
중재법을 참고하여 관련사항들을  
위원회 규칙에 규정해야

신청인은 답변서를 통해 중재의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즉 사무국은 답변서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그 답변이 적합한 것인지를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양당사자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하며, 신청인에게는 답변서 1부를 보낸다. 만약 피신청인이 위의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위와 달리 언론중재법은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한다고 했을 뿐 그 과정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언론중재법이 아닌) 중재법 8조는 다양한 합의 방식을 열거하고 있다. 상사중재원의 신청 합의 절차는 이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언론중재법 24조는 신청 합의의 절차에 관해서 '중재법 8조를 준용하고, 이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의 규칙에 의거한다'라는 조항을 포함해야 했다. 중재법 8조는 다음과 같다.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중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서신·전보·전신 및 모사전송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당사자간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중재 절차에서 또한 중요한 요소는 의견 표명 방식, 증거 채택 방식, 증인 인정 여부 등이다. 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하며 중재서기는 접수된 증거에 번호를 붙여서 기록의 일부로 하고, 중재판정부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증하기 전에 검증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당사자가 검증에 임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변경할 수 있으나 당사자 쌍방에게 증거 및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공평하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번역문의 제출 의무를 지닌다. 또 심문의 방식에서 직접 심문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서면심리에 의한 중재 심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재에 필요한 증거 채택에는 증인도 포함시키고 있으며, 심리는 비공개로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전술한 대로 중재법을 많이 준용하고 있다. 또한 중재법은 증거조사에서 법원의 힘을 빌리는 규정도 가지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증거조사 권한을 갖게 되었지만 민법 2편 3장을 준용하고 있음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는 힘의 원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따라서 법 개정은 물론 필요하고, 법 개정이전이라도 중재법을 참고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규칙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4. 언론중재법 이전의 고려 사항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의 결과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전 정간법에서나 언론중재법에서 공히 명백히 밝혀 놓지 않은 사항들이 있다. 이 사안들은 잠정적으로는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입법 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다.

이것들은 중재를 성립시키는 과정에서 협상의 산물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법 조항과 충돌하는 측면도 있으며, 법이 규정하지 않는 한 조정과 중재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측면들이다.

##### 가. 보도의 영향에 대한 평가의 문제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신문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언론 매체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동시에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언론 보도의 양태가 다양한데 전통적인 언론매체의 틀 속에서 반론, 정정, 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고려하였을 때 이것이 적절한 피해 구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인터넷 기사가 동시에 게재되는 경우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그 영향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를 더 상정해 볼 수 있다. 라디오나 뉴스전문채널의 경우는 동일한 뉴스가 여러 번에 걸쳐서 방송되는데 이때 피해구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가. 동일한 횟수를 포함하는가 아니면 대표적인 뉴스 시간대로 대체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현재 언론중재법은 이러한 영향에 대한 차별화 없이 “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

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15조 6항).”는 규정만 가지고 있다.

##### 나. 이익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중재 심리 시 부닥치는 어려움은 기사가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정부 발표를 인용하고 있는 보도의 경우 언론의 책임한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들이다.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언론은 내용에서 반론을 실었다거나 다양한 견해를 반영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통상적 읽기’의 차원에서 보면 분명 수용자의 권리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제목만을 고려하여 그 정도의 반론보도문을 실으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한편 정부 발표에 대한 인용보도의 경우 언론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관행적으로 경찰의 발표와 검찰의 발표는 분명 다르다. 하물며 최근에는 검찰의 발표도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 발표에 대한 언론 보도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다. 반론보도(정정보도)문 게재시 매체간 불균형의 문제

일반적인 경향에 따르면 동일한 지면, 동일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반론문을 신도록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신문이 1면 머리기사에 대한 반론문을 1면 구석에 실는 것과 방송이 9시 뉴스 머리기사에 대한 반론문을 9시 뉴스의 말미에 방

**언론중재법은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에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절차의 불명확성 등  
많은 논의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

송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신문은 그 위치에 따라서는 전혀 주목되지 않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방송이 받는 타격이 크다기 보다는 신문이 피해 구제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언론중재법 15조 6항이 의미하는 바는 최대한 피해정도에 해당하는 만큼 구제하라는 것이고, 법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다 규정하기 어려우면 시행령에서라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5. 결론에 대신하여

언론중재법의 제정은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에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필요적 전치주의의 포기, 조정과 중재의 분리, 증거조사에 의한 실질적 중재 시도 등이 그렇다. 하지만 조정과 중재의 절

차의 불명확성, 증거 조사의 실천 가능성, 반론과 정정보도 등에서 그 영향에 따른 중재 방식에 대한 논의 미비, 매체의 특성에 따른 중재의 차이에 대한 고려 미비 등 논의의 여지를 많이 남겨 놓고 있기도 하다.

특히 중재 절차의 경우는 중재법을 참고해야 할 터인데 중재법에 대한 고려가 없다. 지금 민사소송법은 일부분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중재 절차 전체를 규율하는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를 참고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자체의 중재절차를 고안해야 할 것이다. 법적 미비점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중재부의 중국적 결정에 따르겠다는 합의를 전제로 중재 제도를 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에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그 규정을 명확히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

#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윤 경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대 법학과 졸, 동대학원 법학과 석사, 미국 Duke대학 Law School 졸업(LL.M. 취득)
-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역임
- 논문 : 「언론피해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소송」, 「시행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외 다수

## I. 서론

### 1. 총설

종래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정정보도청구”, “반론 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에 관한 조정만을 할 수 있었고, 손해의 배상은 그 조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까지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포함시켜야만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 언론피해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손해의 배상도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고, 마침내 위 주장이 입법화되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05. 7. 28.부터 시행됨. 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은 제18조 제2항에서 “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해서 제14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 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손해의 배상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언론중재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정기능에 한정되어 있던 중전의 중재제도를 조정과 중재로 구분하여 확대하고, 조정 외에 중재에 의하여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2. 문제점 제기

언론중재법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제18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만 제18조 제3항과 제4항에서 정하고 있을 뿐, 청구권자의 범위나 구성요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모호한 측면이 있다. 즉,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중재)신청의 경우도 정정

언론중재법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  
청구권자의 범위나 구성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다소 모호해

보도청구처럼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도 당해 업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정정보도청구와 달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신청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별도의 구성요건이나 청구권자의 범위를 갖는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법원(法源)은 언론중재법 제4절(소송) 제30조(손해의 배상)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민법에 근거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다.

그리고 언론중재법 제4절(소송) 제30조(손해의 배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주체 즉,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신청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주체인 법 제18조 제2항의 “피해자”(참고로, ‘피해자’와 관련하여 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나아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주체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모호하다.

또한, 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범위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즉, 당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청구주체인 “피해자”를 법 제14조 제1항에 한정해서 해석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라고만 볼 것인지, 일반적인 인격권 침해(프라이버시

침해나 초상권 침해, 성명권 침해 등)로 인한 피해나 취재과정상 발생하는 피해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것인지가 모호하다.

한편, 법 제5조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한 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항 중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와 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도 기존의 형법 제3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자의 명예훼손죄나 동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와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밖에 법 제18조 제2항의 조정(중재)신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그리고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경합 가능한 것인지도 문제된다.

여기서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 이 법의 제정 취지, 이 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일반적인 법리 등에 비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아가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이 법상의 손해배상청구제도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 것인지, 실무운영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 II.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 1. 의의

#### 가. 법적 성격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한 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불법행위의 기본원칙이다(민법 제750조). 따라서 언론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위법행위(피해자의 명예 등을 침해한 위법한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것), ② 언론의 고의·과실(그것이 취재 기자 등의 고의나 과실로 이루어졌다는 것), ③ 손해의 발생(언론 보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④ 위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존재(언론 보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등이 심리·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은,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제30조 제1항의 규정이 없더라도 언론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민법의 일반 규정인 민법 제750조 등이 적용될 것인데, 언론중재법은 민법 제750조, 제751조 및 제764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되어 오던 구제수단을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1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인격권 침해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미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있지만,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이 없음을 의식해서인지 몰라도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이 점도 명확하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0조와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이 해석상으로는 사실상 동일한 조문이기도 하지만,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이 민법 제750조의 일반적인 내용을 언론의 손해배상책임에 맞도록 표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법 제751조의 내용도 함께 묶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법 제

750조의 특별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은 주의적인 의미에서 민법상의 일반적인 불법행위 규정과는 별도로 둔 ‘주의적 규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완벽하게 “언론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을 따로 규정한 ‘특별규정’인 것이다.

결국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언론중재법 제18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조정과 중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 나. ‘정정보도청구의 요건’과의 차이점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법 제14조 제1항),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법 제14조 제2항)하고 있어, 결국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은 ‘언론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 2. 손해액의 산정

### 가. 실손해액 산정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손해액은 피해자가 현실로 입은 손해액을 말한다.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는데, 재산적 손해는 다시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자체가 “언론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을 따로 규정한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누어진다.

대법원 판례 중 ①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사례로는, “비방 광고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광고들이 실렸던 일간지마다 동일한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 광고들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한 것이 있고,<sup>1)</sup> ② 재산상 손해를 부정한 사례로는, 연비 향상 장치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그 방송 보도를 전후하여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연비 향상 및 매년 절감 장치의 매출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도산 지경에까지 이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매출액의 감소가 이 사건 방송 보도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있다.<sup>2)</sup>

한편 그 동안의 실무와 사례들을 검토해 보면 언론 사건에서 손해액의 중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있고, 그 액수가 다른 분야의 그것에 비하여 고액화되는 경향이 있다.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의 액수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보통 1,000만 원 이하였는데, 그 후 위자료의 액수는 점차 늘어나 근래에는 1억 원 이상의 배상을 명한 사례도 꽤 있다.<sup>3)</sup>

나.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법 제30조 제2항). 따라서 법원은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합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 III. 손해배상청구권자

#### 1. 손해배상청구의 보호법익

언론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보호법익은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이다(법 제2조 제12호 참조). 주로 ‘명예’와 ‘인격권(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주된 보호법익이 되는 것이다.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sup>4)</sup> ‘명예훼손’이란 “명예 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sup>5)</sup> 따라서 ‘명예’라

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2)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

3) 법인에 대한 무형의 손해이기는 했지만,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은 3억 원을 인용한 원심을 유지하였고, 하급심 판결례로는 대통령 후보에 대하여 1억 2천만 원을 인용한 사례(서울지방법원 1998. 7. 1. 선고 97가합88220 판결, 피고 항소취하 간주로 확정), 검사에 대하여 1억 원을 인용한 사례(서울지방법원 1999. 6. 23. 선고 99가합14391 판결,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취하로 종결), 유명 앵커우먼에 대하여 1억 원을 인용한 사례(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99가합84277(본소), 97495(반소) 판결), 유명가수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그의 애인에 대하여 1억원을 인용한 사례(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3. 26. 선고 98가합93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3. 30. 선고 99나22191 판결에서 피고 항소기각으로 확정) 등이 있다.

4)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5)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 등.

고 할 때에는 외부적 명예만을 의미하고, 인격의 내재 가치로서의 '내부적 명예'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 판단이라 할 수 있는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sup>6)</sup>에 의하면,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명예감정'의 침해와 '명예'의 침해는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한편 인격권이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법 제5조 제1항 참조).<sup>7)</sup> 즉 인격권이란 '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등 개인의 인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명예는 '인격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권리이다.<sup>8)</sup>

## 2.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

### 가. 청구권자

언론중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에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 및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법 제30조 제1항)이다.

### 나. 법인 기타 당사자능력이 있는 단체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명예, 신용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sup>9)</sup>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면서,<sup>10)</sup> 구체적으로는 "자연인, 법인 또는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있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sup>11)</sup> 법인 기타 단체나 재단 등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sup>12)</sup>

대법원판례에서는 원고(법인)의 인격과 명예, 신용 등을 훼손<sup>13)</sup>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 기타 당사자능력이 있는 단체'가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의 주

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7) 인격권이란, 일반적으로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생명·신체·건강·명예·정조·성명·초상·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헌법의 경우 인격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의 존중 조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존중조항 등 그 모두에 의하여 보장된 대권영성, 「헌법학원론」(1997), 347쪽, 학설과 판례상 인정되는 인격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8)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이나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에서도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9)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707 판결(이 사건은 일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사건이었다).

10)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11)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이 사건은 구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명령(현행 반론보도청구)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판결이었다).

12) 주로 비법인 사단인 시민 운동 단체들의 명예를 인정한 사례로는 서울지방법원 1998. 8. 19. 선고 97가합93499 판결(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6집, 229면) 참조.

1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명예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당사자 능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어

체'가 될 수 있음은 별다른 의문이 없다.

다.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인지 여부 (= 소극)

법인이나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있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는 그 명예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 능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예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단체 자체가 원고로서 '언론에 의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없고,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조정신청도 할 수 없다.

다만 그 자체로 명예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는 집단의 경우에 그 구성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범위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뿐이다(예를 들면, 동창회 등의 단순 친목 모임, 모 대학 졸업생들, 어느 지역의 축구 선수들이라고 표현한 경우 등). 이는 언론 기관이 명예훼손의 보도를 하면서 집단 명칭을 사용하거나 집단 중 특정 몇몇 사람만을 지칭하였을 경우 이것이 집단 구성원들 각각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명예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어떠한지에 관한 문제로,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 훼손은 그러한 발언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 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발언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되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sup>14)</sup> 대법원 판례 중에는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는 막연한 표시만으로는 그 중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인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다.<sup>15)</sup>

(2) 정정보도청구 및 반론보도청구에서의 당사자 적격과의 차이점

① 언론중재법 제14조 제4항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청구 및 반론보도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권자의 범주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시키고 있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위 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어

14) 한위수, "집단 명예 훼손 소송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 1998 여름호, 59-60면;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1997), 111면;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1997), 378면 참조.

15) 대법원 1960. 11. 26. 선고 4293형상244 판결.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이 언론기관에 의하여 침해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신속·엄정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언론중재법상 특수한 소권으로 인정된 것으로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원문보도가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응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하여도 원문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사회적 개체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생활에서 하나의 활동단위로 특정할 수 있는 인적 결사라든가 학교, 병원, 유치원 등 영조물도 이를 운영하는 법인과 별도로 하나의 기관으로서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로 인정된다.

② 그러나 '언론에 의한 피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 주체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시킬 수는 없다. 손해배상청구의 성질상 "자연인, 법인,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조합, 재단 등"만이 청구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신속·엄정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언론중재법상 인정된 특수한 소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이러한 특수한 소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과는 다르다. 또한 언론중재법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권에서와 같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로까지 확장하는 명문의 규정이 전혀 없다.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언론에 의한 피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권자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적인 존재라거나 그 보도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라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이 제한될 것이다.<sup>16)</sup>

그러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언론에 의한 피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있으나, 기관은 당사자능력이 없고, 기관의 장은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② 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 14조 제3항, 제16조 제3항). 즉 정정보도청구나 또는 반론보도청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도 청구권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이 언론기관에 의하여 침해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신속·엄정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언론중재법상 특수한 소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관청도 그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국가목적 수행의 권한이 있는 항구적인 조직인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로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의 관청은 행정청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일반의 행정각부 외에도 법원, 국립대학의

16)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참조.

당사자 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의 경우와 달리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권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각 단과대학 등 공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포함되며 국회, 외국의 관청도 포함된다.

③ 결국 '언론에 의한 피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권자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포함이 되지만,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정보도청구나 또는 반론보도청구의 경우와는 달리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3. 상대방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조정절차에서의 손해배상청구 상대방은 '언론사'만이다(법 제30조 제1항 참조).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인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하고(법 제2조 제1호),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10호).

따라서 취재기자나 편집인, 정보제공자나 취재원, 투고·기고자 등은 그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즉 피해자는 이들을 상대로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이들의 행위가 언론의 위법행위에 함께 가담한 것에 해당한다면 피해자로서는 민법상의 일반적인 불법행위 규정을 근거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 4. '언론에 의한 피해'의 범위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에 의한 피해'란,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 또는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제30조 제1항 참조)를 의미한다.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청구주체인 "피해자"를 법 제14조 제1항에 한정된 나머지, 그 피해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라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인격권 침해(프라이버시 침해, 초상권 침해, 성명권 침해 등)로 인한 피해나 취재과정상 발생하는 피해까지 모두 위 조항(법 제1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다.

### 5. 사망한 자의 인격권 보호

#### 가. 입법 취지

형법 제308조(死者의 명예훼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죄가 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사망 후에도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지녔던 인격적 이익을 계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14조 제2항), 같은 법 제96조에서는 제14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인격적 이익 침해의 예방 및 손해배상의 담보제공, 침해물의 폐기,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등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자의 유족이나 유언집행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 제2호에서는 제14조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저작인격권의 일신전

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저작자 사망 후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법은 저작자 사망 후에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 인격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법 제14조 제2항 단서).

하지만 민법에는 이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다. 학설을 보면, 위 형법과 저작권법 규정을 근거로 사람은 사망하였을지라도 그의 인격적 가치는 남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로서의 사자의 명예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사자를 명예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sup>17)</sup> 사자는 사람이 아니므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거나, 사자에 대해서는 사회에서의 존재와 활동의 전제가 되는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이 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존경의 감정이고 사자의 명예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다.<sup>18)</sup>

판례는 형사 사건에서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여 사자의 명예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만,<sup>19)</sup>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이 문제를 직접 다루는 사례가 없었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사망 후에도 그가 생존하는 동안 지녔던 인격적 이익은 계속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제5조 제3항 내지 제5항

에서 ‘사망한 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어,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 나. 신설 규정의 내용

##### (1) 청구권자 (= 유족)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한다(법 제5조 제3항 본문). 유족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형제자매로 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 (2) 보호기간 (= 30년)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보호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까지만 인정된다.

#### 다. 위법성 조각사유

##### (1)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

언론에 의한 피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다른 민사 사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와 판례와 학설이 위 요건에 추가하여 인정하는 “허위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그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①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

17) 민법주해(Ⅰ), 박영사(1999), 256면; 손동권, “언론보도와 사자의 명예훼손”, 언론중재 12권 1호(42호), 언론중재위원회, 8-9면; 김재형, “인격권 일반 - 언론 기타 표현 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제21집, 박영사(1999), 659면.

18) 지홍원, “인격권의 침해”, 사법논집 제10집, 법원행정처(1979), 226면;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사법논집 제24집, 법원행정처(1993), 401-402면. 일본의 문헌으로는, 丸山昌一, “違法性(1) - 死者の名譽毀損” 裁判實務大系 15, 青林書院(1991), 62면 참조.

19)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

언론중재법은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

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공공성 + 진실)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②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공성 +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에는 위법성이 없다.<sup>20)</sup>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언론매체 등 언론사에 있다.<sup>21)</sup>

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손해를 구하는 청구에 대한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이므로, 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상대방의 항변사항이 된다.

(2) 인격권의 침해에 관한 별개의 위법성 조각사유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은,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새로이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① ‘피해자의 동의’가 있거나 ②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한 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인격권은 자신의 인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이므로, 이를 포기할 수 있고, 따라서 본인이 승낙 또는 동의하면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위 조항에서 말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는 전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와는 또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를 별도로 규정한 것이다.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의 하나로 규정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

이한 때”의 의미는, 전항에서 언급한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인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일 것”이라는 의미와 전혀 다르다. 후자는 ① 공공성의 요건(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과 ② 보도의 진실성(보도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할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그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언론중재법 제30조, 제31조와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과의 관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는 ‘언론에 의한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 및 제764조에 의하였다. 즉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었으며, 민법 제764조에 규정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금지청구(침해의 정지 및 예방 청구와 침해조성물의 폐기 청구 등)를 할 수 있었다.

언론중재법은 종래 언론에 의한 인격권이나 명예의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가 그 근거조문으로 들고 있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하여 법 제30조 제1항에 두었을 뿐 아니라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을 별도로 신설하

20)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21)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였다. 또한 민법 제764조에 의하여 해석상 인정되던 금지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항과 제4항을 두어 그 내용을 명문으로 명확하게 구체화시켰으며, 같은 법 제31조에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 관한 조항을 두었다.

이러한 언론중재법의 규정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언론중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과 제30조 제1항의 관계(임의적 전치주의)

언론중재법은 손해배상의 청구를 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법 제18조 제2항), 사전에 반드시 중재위원회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임의적 전치주의). 즉 언론중재법 제26조 제1항은 아무런 제한규정 없이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소기간도 역시 조정신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월로 통일하여 규정하였다(법 제26조 제3항).

임의적 전치주의 하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칠 것인지 아니면 막 바로 법원에 제소할 것인지는 당사자의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피해자는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동시에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은 그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점 등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므로, 바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실익이 크다.

임의적 전치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쳤는지 여부가 소송요건이 아니므로, 법원은 원고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를 원칙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없으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성립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소는 부적법 각하될 것이다.

## 7.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의 충돌

언론의 자유는 그것이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민주국가에 있어 절대적이고도 본질적이며 모든 자유의 중심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기본권인 반면, 인간의 존엄에서 유래하는 인격권 역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므로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두 기본권이 모두 보호되어야 한다면 그들 사이에 필연적으로 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언론에 의하여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언론의 자유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필요불가결한 생명선으로서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나(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인의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 자체에서 나오는 절

언론중재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과중하게 요구해서는 안 돼

대적·본질적인 권리이므로,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익형량이 행해져야 한다. 판례<sup>22)</sup>도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문제에 관하여 “구 헌법(1980.12.27 개정) 제20조, 제9조 후단의 규정 등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구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손해배상을 함이 타당하지만, 손해배상청구의 남용으로 인하여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사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① 그 보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② 그 보도가 진실인 경우, ③ 보도의 대상이 공적 인물 등인 경우, ④ 보도의 내용이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 경우, ⑤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 경우 등에는 가사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인정할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정함으로써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발휘하여야 한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요건, 청구권자 및 상대방의 범위, 사망한 자의 인격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점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언론에 의한 피해의 경우 그 재산적 손해를 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많은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심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 조정신청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때문에 간편한 절차에 의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과중하게 요구하거나, 심리를 하는데 오랜 시간을 소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언론에 의한 침해에 관하여 피해자는 통상 명예훼손이나 인격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보다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많을 것이므로, 당사자의 청구를 가급적 위자료 청구로 유도를 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2) 대법원 1988. 10. 10, 선고 85다카29 판결.

## 언론중재법 시행에 부쳐

# 언론중재위원회에 바란다



## 새로운 언론중재법에 거는 기대

함 종 옥

언론중재위원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작년 여름 필자가 고주파로 사각턱을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 개발해 이미 언론에 기사화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사에서 다른 의사가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기사가 게재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기사를 쓰신 기자분이 조금만 확인을 했어도 발생하지 않을 사건이었는데, 아마도 개인적인 친분과 믿음 때문에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했던 것 같았다. 처음에 기사를 접하고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민하다가 친분이 있는 기자한테 상의를 했더니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번거로움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중재를 신청하기로 했다. 기사라는 것이 잘못된 내용이라도 일단 알려지면 독자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사실 한 줄 분량의 정정보도는 찾아서 읽어보기도 어렵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정정보도 보다는 양측을 원만하게 타협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서 적절한 분량의 기사를 실어주

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참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판결이 난 후에도 방치되지 않고 중재위원회 직원이 친절하게 경과과정을 일일이 확인해 준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조정 결정의 일부만이 이행이 되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상황을 종결해야만 했다는 점이다. 법적인 강제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인의 편의와 피해구제 측면에서 많이 보강된 것 같다. 구술로도 중재신청을 할 수 있어 편리하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였던 청구기한이 3개월로 연장되어 신청인의 권리보호가 더욱 두터워졌다. 인터넷언론의 보도 비중이 커져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중재신청이 가능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인터넷신문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고도 중재 청구를 할 수 없어 난감한 사례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청인이 언론보도로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에 관해서도 다루는 원 스톱 서비스 개념의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시행

되면 많은 언론 피해 당사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부작용으로는 문턱이 낮아진 만큼 무분별한 중재신청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는 중재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므로 기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관공서의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일원화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의 원 스톱 구체절차가 잘 시행된다면 이것을 모델로 우리사회가 합리적인 발전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언론보도 피해자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언론중재위원회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 피신청인

### ‘기자들의 무덤’ 되지 않길...

이 화 섭  
KBS 시사보도팀장

7월부터 시행되는 새 언론중재법이 ‘태풍의 핵’이 되고 있다. 이제 기자들이 누리던 태평성대는 끝이 났다는 예감이 든다. 새 언론중재법은 언론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위상도 크게 높여 두고 있다. 언론은 이제 스스로 권력이 된 ‘절대 강자의 입장’을 벗어 던지고 국가법익과 사회법익, 개인법익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한국언론은 ‘사회적 책임’보다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보호막 아래 안주해 왔다. 말하자면 기사의 공익성에 비춰 면책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법원의 판단에 길들여져 온 셈이다. 하지만 새로운 언론중재법은 ‘함부로 기사쓰기’에 쐐기를 박고 있다. 더구나 언론중재위원회는 이제 결정을 내린 뒤 사후 관리는 하지 않았던 있으나마나한 기관이 아니다. 조정 기능에다 판결의 효력을 갖는 중재 기능이 생겼고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졌다. 조정결정 이후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손해배상청구, 당사자 아

닌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 신문도 언론중재 대상이 됐다. 이쯤 되면 언론중재법은 ‘기자들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처럼 통합된 언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둔 나라는 없다는 말도 들린다.

지금까지도 언론중재위원회는 ‘힘은 없었지만’ 기자들과 멀면 멀수록 좋았고, 들락거리고 싶지 않은 기관이었다. 쟁송은 기자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지만 능력 있는 기자 치고 쟁송을 한 두건씩 달고 다니지 않는 기자가 드문 게 현실이다. 그만큼 ‘완벽한 글쓰기’가 힘들다는 얘기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가는 기자들, 기자들을 대신해 출석하는 데스크들은 피곤해도 한참 피곤하게 생겼다. 이제는 예전의 언론중재위원회에 가는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나 특허법원, 행정법원에 가는 정도로 각오를 다져야 할 것 같다. 실제로 새 언론중재법은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기자들에게 ‘보다 엄격한 글쓰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연말 언론관련 법안이 개혁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할 당

시 신문법에만 관심을 쏟았지 언론중재법을 주목한 언론인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정도로 언론계가 술렁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상황 가운데 일부만 살펴보자. 우선 기자들은 기사를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웬만하면 봐주던 공인에 대한 기사도 새로운 언론중재법으로는 쉽게 넘어갈 수가 없게 됐다. 나아가 시민단체나 정당까지 나서서 기사에 시비를 걸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언론사의 논조와 관련해 보수 진보 양쪽 시민단체에서 시정권고를 요구할 수 있다. 결국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건수가 크게 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발할 것이다.

작은 언론의 부담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커질 것이다. 작은 언론의 데스크 기능은 큰 언론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바로 재송에 걸려들 위험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 적은 인력으로 속보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인터넷 매체가 바로 그 경우에 해당된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일선기자가 쓴 기사는 취재부서의 2단계의 데스크 과정과 편집부와 영상 출고 부서의 게이터 키핑 과정을 또 거친다. 초벌구이가 아니라 세벌구이 네벌구이를 한 상품을 내놓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이 그 정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겠는가? 그 점에서 인터넷

매체는 '좋은 시절' 대신 이제는 '시련의 세월'과 맞닥뜨리고 있다. 특히 인터넷 매체의 시민기자들은 사실에 바탕을 둔 객관 보도와 논평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 같다.

물론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언론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언론 수용자의 권익을 크게 신장시키는 데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율의 영역에 남겨 둘 '사회적 책임'까지 범으로 구속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다.

새로운 언론중재법은 범조계와 시민단체, 정치권의 오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언론이 스스로 권력이 되어 강자로 군림해온 데 대한 견제장치가 비로소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언론중재위원회가 스스로 권력기관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방송이나 신문이나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곧 언론중재법 시행령도 만들어진다니 이 법을 운용하면서 실효성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지켜내길 기대해 본다. 다만 언론의 보도내용을 제소하기만 하면 단돈 만 원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먹잇감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자들의 무덤'이 되고 만다면 한국 언론엔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테니까 말이다. □

## 언론단체

# 다시 태어난 언론중재위의 갈 길

김 영 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된 지도 벌써 25년째를 맞는다. 하지만 그 동안 언론중재위원회는 설립근

거인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갇혀 그 역할과 기능이 제한적이었다. 지난 10년 가까이

언론운동진영이 개혁 차원에서 언론법 개정운동을 펴왔다. 그런데 새해 벽두에 어두침침하지만 그 빛을 보게 되었다. 물론 그 내용은 운동진영이 만족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그러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어 다행이라고 하겠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독립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한국언론은 언론자유는 아나 사회적 책임을 모른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당파성이 강해 선거 때만 되면 특정한 정치집단을 두둔하는 편파-왜곡 보도를 서슴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특정인을 노골적으로 지지한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네 차례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그 같은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언론의 '대통령 만들기'라는 소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오죽하면 선거법에 선거기사 심의규정을 두어 공정성을 따지도록 했을까?

어떤 형태이든지 선거기사심의는 정부개입이라는 점에서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또 사회가 용인하고 있다. 이것은 언론의 불공정정보도가 성행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정치사안에 관한 불공정정보도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한국언론은 언론행위를 통한 정치활동을 예사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언론의 권력화 현상은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언론이 권력과 결탁하여 합법성-정통성이 결여된 정권의 영속화에 기여했다. 그 대가로 언론은 정치권력에 못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향유해왔다. 그 탓에 편파-왜곡-허위보도에 따른 피해구제를 호소해도 좀처럼 들어주지

않는다. 정당한 반론권에도 무응답으로 나간다. 최근 들어 언론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용자의 주권의식이 고양되고 있다. 그런데 언론중재건수는 오히려 늘어나니 언론매체들이 환경변화를 감지나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새로운 피해구제법에서는 언론중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했다.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이 크게 확대되었다. 조정 이외에도 중재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또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이외에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조정이나 중재가 가능하도록 되었다. 시정권고권한도 한층 더 강화되었다. 무엇보다도 구술신청이 도입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구제를 신청하기 훨씬 수월해졌다.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도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구제법이 제정되기까지 남다른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보다는 시민사회의 노력에 힘입은 바 더 크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참여단체인 언론인권센터가 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도 갖고 입법을 청원하여 얻어낸 결과물인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 법안을 토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그것은 허위보도-왜곡보도로 입은 일반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입법 취지에 따라 언론보도에 따른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마침 지난 3월 31일 언론중재위원회는 2005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새로 구성하고 다수의 시정권고위원들을 새로 선출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은 격이다. 새로 태어난 언론중재위원회는 거듭 나서 인권보호에 더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언론피해구제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보도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는 것이 언론중재위원회가 나갈 길이다. □

## ‘신속’과 ‘균형’의 두 기둥으로 거듭나기를

윤재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나에게 언론중재위원회는 제2의 고향과 같은 존재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2000년 9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중재부장으로 재임하여 최장수 중재부장이라는 영광을 얻었고 그 사이 중재위원님들과 중재위원회 직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즐거운 추억도 쌓았기 때문이다. 이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언론분쟁의 주관기관으로 자리잡는 것을 보면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 오랜 숙원이던 신청기간 연장, 손해배상, 중재기능 도입 등 권한이 늘어나 언론중재위원회가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것 같다. 하지만 권한이 늘어난 만큼 그 책임과 도전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중재경험에 비추어 예상되는 두 가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해보고자 한다.

첫째 언론분쟁의 핵심이라고 할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실질적으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종전에는 정정보도청구권은 명예를 해하는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구제방법의 하나로서 보도의 위법성과 귀책사유가 그 전제가 되었는데 신법에 의하면 이러한 요건이 불필요하게 되어 반론권의 하나로서 볼 여지가 높다. 이러한 입법이 과연 타당한지에 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법조계에서 위헌론이 벌써 제기되고 있어서 일부 조항의 수정이 예상된다) 중재실무상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의 구별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청구인은 모두 보도내용이 진실에 반한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진실 여부를 다투지 않는 순수한 반론보도청구는 그 예가 거의 없을 것이다), 정정보도의 인용한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정정보도형식을 청구인?언론사 중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 이 권리를 민법상 정정보도청구와 별개로 인정할 것인지(법 제31조에는 정정보도의 공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손해배상과 동시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 정정보도청구는 위법성과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손해배상에 국한하여 귀책사유를 따지는 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의 문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결국은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행사방법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확정판결이 나와야 할 터인데 이런 상황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독자적인 기준을 세워 새로 창안된 권리관계를 다룬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둘째 손해배상청구를 다루는 작업에는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원래 손해배상책임의 확정은 가해자의 귀책사유, 위법성, 인과관계 및 피해자의 구체적 손해, 과실상계 문제 등을 종합하여야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이므로 비사법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러한 작업을 충실히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신법상 증거조사가 가능하지만, 그 신뢰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조정률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도 심리 경험이 없는 중재위원회에서는 돌출적인 기준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법원과 중재위원회에서

나오는 손해배상액이 차이가 날 경우, 또는 중재부 상호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 쪽으로 손해배상을 포함한 언론분쟁사건이 몰릴 것이다. 자칫 언론중재위원회에 사건다운 사건은 제기 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된다. 이러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대처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입장에서는 법적 기준, 심리방법, 문례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연구와 준비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최종 법해석권을 가진 법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할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언론인을 상대로 한 세미나가 아니라 법조인과 교수를 중심으로 한 전문 세미나가 상당 기간 필요할지 모른다. ②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은 장기적으로 볼 때 피해자 입장에서의 '접근 용이성'에 강점이 있다.

언론중재제도의 간편성과 신속성은 법원의 소송제도가 따라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으로 가기 어려운 간단한 사건들의 심리방법을 계속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③ 이러한 간편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결론이 한 쪽에 치우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아 이용률이 낮아질 것이다. 손해배상문제도 다루어지므로 그 배상액수가 법원과 불균형을 이루면 결국은 불복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결론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새로운 위상을 찾아가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집중할 덕목은 '신속한 심리'와 '균형 잡힌 결론'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신속과 균형이 유지될 때 언론중재위원회는 시민이 믿고 의지하는 든든한 기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

## 언론단체

### “우리는 한 줄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사흘 밤낮을 걸었다”

이 상 기  
한국기자협회 회장

“우리는 한 줄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사흘 밤낮을 걸었다.” 2002년 11월 처음 열린 제1회 재외동포 기자대회에 참가한 <고려일보> 김성조 편집국장이 청와대 간담회에서 건배사를 대신해 한 이 말에 필자는 온 몸이 감전된 듯했다. 지금도 느낌은-아니 그 전율은-계속되고 있다.

기자생활 20년 가까이 하루에도 수없이 되뇌이는 '진실보도'를 경제후진국 카자흐스탄에서 온 고려일보 편집국장이 이 한 문장으로 압축시켜 정리하고 있다니!

여전히 대부분 기자들은 말이나 사건 혹은 자료의 진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온 몸과 혼을 쏟고 있다고 필자는 믿는다. 그것은 기자들만의 사명이다. 특권이며 보람이기 때문이다.

“팩트가 뭐야? 팩트를 찾으란 말이야! 기자가 팩트 말고 뭘로 말하냐? 팩트가 없으면 기사가 아냐, 그건 소설이란 말이야!” 수습시절부터 귀가 닳도록 듣는 이 말이 과연 오늘의 기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가 생각해 본다. 그러리라 철석같이 믿고 싶다. 믿고 싶은 단지 그뿐.

언론중재위원회는 기자들에게는 무서운 존재다. 그러나 한편으론 기자들의 오보를 막으며, 그들이 항상 진실보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다.

필자도 2000년 가을 한겨레 수도권팀장 시절 일선 기자가 쓴 기사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중재위에 제소돼 출석한 적이 있다. 반론보도문을 실어주기로 합의해 중재는 성립됐지만, 기자한테 진실보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

오는 7월 28일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시행된다. 법을 곰곰이 뜯어보면 이전보다 진일보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1980년 언론중재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법률가, 언론인 및 실무자들이 갈망해온 '단일법 제정'이 비로소 이루어졌다. 특히 언론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권리구제의 폭을 대폭 넓힌 점은 시대정신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수용자 입장을 강화하려다 도리어 피해구제가 지연되거나 기자들의 보도행위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우선 '반론보도'의 경우 종래의 정간물법은 제19조 제1항에서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한 언론중재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 법률에선 이를 삭제하고 반론보도의 경우 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있게 했다. 종래 반론보도를 청구할 때 중재위를 거치게 한 것은 중재부가 언론사 및 피해자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중재부 절차가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행되므로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반론보도 청구사건은, 그 보도의 사실여부를 불문하는 것이므로 심리가 비교적 간단하여, 구태여 법원의 상세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고, 중재 과정에서 피해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토대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

적 전치주의를 채택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새 법이 이를 삭제함으로써 언론사와 피해자간 사전조정을 회피해 피해구제가 지연될까 우려된다.

다음으로 새 법 제16조 제2항에서, 반론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거나 이같은 보도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마도 입법자가 언론보도에서의 '사실'과 '진실'을 혼동해서 이런 조항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예를 들어 보자. "국회의원 A가 건설회사 사장 B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A는 후원회 행사에서 B로부터 후원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게 진상이라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에, 만약 언론의 보도가 "A라는 국회의원이 B라는 건설회사 사장에게서 100만원을 받았다"고 보도되었다면, 일반독자는 국회의원이 회사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과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사실'에는 부합하지만 '진실'에는 부합하지 아니한 보도로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해, "A라는 국회의원이 B라는 건설회사 사장에게서 후원회비로 100만원을 받았다"라고 보도하였다면, 이는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에도 부합한다. 이 경우 반론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국회의원 A가 이러한 보도가 나가기를 설사 원치 않는다 해도 언론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법 제16조 제2항이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만일 이런 식이라면 기자들이 쓸 수 있는 기사는 매우 한정될 수밖에 없다. 재개정 때까지 재판부가 용어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자칫 법에 대한

오해를 불러와 입법 취지가 손상될까 두렵다. 2005년 이 시대, “기자로 산다는 것”의 무게는 천근만근이다. 언론중재법이 부디 기자들의 의욕을 꺾는 대신 진실

보도의 다짐과 의지를 북돋워주며 한편으로 국민들의 언론피해구제를 원활히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데 성공하기 바란다. □



## 내재적 한계와 운용의 묘를 기대하며

박 선 영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

현대국가에 있어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에게는 주관적인 진실발견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으로서, 국가와 사회에는 객관적인 민주사회의 형성과 유지에 본질적인 제도라는 이중적 성격을 누리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느 기본권보다도 중요하고 우월적인 지위를 누린다.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개인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겠다고 했을 때 정치·사회적으로 왜 그토록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을까? 여야합의로 입법은 되었지만 실행도 되기 전에 언론인과 정보수용자, 법률가 등은 왜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을까? 5월 31일 현재까지도 좁혀지지 않는 이견대립 등으로 인해 시행령은 왜 확정되지 못하고 있을까?

이 모든 논란과 소용돌이 속에서도 7월 28일부터 언론중재법은 시행될 예정이다.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하겠다는 입법취지를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그 입법취지는 동떨어진 또 다른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그에 대한 해답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앞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함)가 이 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언론중재법이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자유와 권리를 공고히 해 줄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중재위원회의 운영여부에 달려 있다. 그동안의 모든 우려와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재위원회가 최대한 자제력을 갖고 내재적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언론의 숨통을 옥죄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입법을 했다고 믿는(또는 의심하는) 언론사와 그 종사자, 그리고 수용자들에게 적어도 그들이 ‘숨 쉴 공간’이 더 좁아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줄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예컨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는 반발을 샀던 고충처리인제도(\$6)의 경우 범문 그대로 각 언론사가 ‘자율적 활동’을 하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벌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부과(\$34)도 가능한 자제되어야 한다.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정부의 어떤 간섭과 통제도 없는 곳에서만 피어나는 ‘까다로운 꽃’이라는 사실은 수백년 역사가 충분히 입증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언론중재위원

(§7) 중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공무원(현직 법관)은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재직기간 중'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의 법적 성격상 이는 논리필연적이다. 셋째, 현재 결원의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정부의 관여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중재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것으로 하되, 잔여임기에 한하여야 한다. 입법의 흠결이나 미비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중재위원회의 독립성이 발휘되도록 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추후보도에 대한 중재와 조정의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18), 이는 무료로 운용하여야 한다. 방송발전기금을 운용자금으로 하면서 국가보조금까지 받는 중재위원회가 피해자를 구제한다고 하면서 수수료까지 징수한다면 이는 입법목적에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시정권고의 경우도 역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더욱이 모법에는 전혀 근거조항이 없는 시정권고위원회의 구성과 시정권고의 심의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세부절차를 다시 중재위원회의 규칙에 위임하는 것(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그 자체로서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언론에 의한 피해배상(§18)도 조정과 중재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에 그쳐야 한다. 명예훼손의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원초적인 특성도 그러하지만, 특히 정보화사회에서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역할이 최소한에 그칠 때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비로소 신장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 언론단체

# 새롭게 기준과 판례 만들어가야 할 인터넷신문

백 병 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전문위원

언론법이 바뀌면서 인터넷신문들도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신문법에 따라 '인터넷신문'이라는 정기간행물로 인정받게 됐으며 개정 언론중재법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대상에도 포함되게 됐다. 당연한 일이지만 언론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함께 법적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 셈이다.

인터넷신문은 법적 지위를 얻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새로운 미디어로서 현실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인터넷 언론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언론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정만 있는 다른 나라와 달리 언론사를 일일이 유형화해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언론 법제 시스템이 '매스 미디어'라는 기존의 언론 개념을 뿌리부터 뒤엎은 인터넷 언론을 정의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결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

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시행령 공포를 앞두고 어디까지를 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는 개념을 전혀 달리하는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하다.

인터넷신문이 새롭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면서 이에 따라 언론중재제도나 피해구제 방안 등을 놓고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인터넷신문은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중재와 피해구제에서도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그 대상을 어느 선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중재나 피해구제법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신문의 범위는 신문법과 그 시행령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인터넷 신문 콘텐츠의 어디까지를 중재나 피해구제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인터넷신문의 특징 중 하나는 참여저널리즘이다.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이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하는 일방적 매체였다면 인터넷신문은 기사와 독자 반응이 동시에 게재되는 쌍방향성을 갖는다. 어떤 경우에는 기사보다는 독자 참여 글이 더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같은 매체 특성 때문에 독자 참여 글 등에 대한 중재나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가 된다. 독자 참여 글을 게재한 인터넷 신문사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독립된 법률적 주체로서 독자 개인의 글에 대한 정정이나 반론, 혹은 삭제 권한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법리 논쟁이 예상된다.

몇 년 전 일본 법원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한 비방 글에 대한 명예훼손 신청을 기각한 적이 있다. 피해자가 얼마든지 해당 사이트를 통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기각 사유였다. 말하자면 독자 참여 글에 대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청구 자체가 가능한지 그 자체부터 논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판결이다.

인터넷은 신문과 같은 활자매체의 성격을 갖는 한편 즉시성에 있어서는 방송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방송과 같은 리얼타임의 매체이자 보관과 기록이 가능한 신문 매체의 특성을 겸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반론이나 정정보도문 게재 방식과 관련해서도 색다른 고민거리가 발생한다. 반론 보도문은 어디에 어떻게 실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서부터 정정보도를 할 경우 기존의 기사는 아예 삭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 밖에도 포털 사이트에 중계한 기사에 대한 반론이나 정정 보도문제를 비롯해 무수한 새로운 쟁점들이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인터넷신문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응한 전담 중재팀과 연구팀의 운영이 필요하다. 직권 중재 등 그 권한이 대폭 강화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일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중재 및 피해구제 노력과 함께 인터넷신문 등 새롭게 등장하는 뉴미디어의 환경에 대비한 법제적 연구와 정비가 요구된다.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인터넷언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 사이버 명예훼손의 제문제 \*

정 상 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 5.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통상 익명의 가해자를 밝히기도 어렵고, 밝혔다 하더라도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이 공표되거나 전파되는 과정에 기여한 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로 약칭)<sup>64)</sup>의 책임을 추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하에서는 ISP가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관하여 각국의 판례와 입법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가. 미국에서의 논의

미국에서는 종래 불법행위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출판자(publisher)는 책임을 지고, 배포자(distributer)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론이 확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이론을 기반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 (1) 판례의 등장

Cubby, Inc. v. CompuServe, Inc. 사건 [776 F. Supp. 135 (S.D.N.Y. 1991)]에서 뉴욕남부연방법원(S.D.N.Y.)은, CompuServe의 전자게시판(제3자인 Cameron Communication Inc.에게 위탁운영)에 벤처사업가인 Cubby의 사업내용을 비난하는 익명의 글이 게시된 것과 관련하여, 어떤 글이 게시되면 구독자들이 즉시 접할 수 있고 CompuServe와 같은 defendant-ISP는 서점이나 신문가판대와 유사하게 그 내용을 검토할 기회가 없어 배포하는 온라인출

\* 이 글은 필자가 판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법원 내 연구모임인 언론편 커뮤니티에서 2004. 12. 4. 발표한 논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는 5.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부분과 6. 안티사이트 운영자의 책임' 부분을 게재한다. .... 편집자 주

64) ISP는 통상 웹서버(Web Server), 웹사이트(Web Site)와 관계있는 네트워크 컴퓨터를 관리하고 이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자(Multi-User)를 관리, 운영하는 자들을 통칭하는 의미이다. 이광진, 앞의 논문(주26), 77면, 주 36) 참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컴퓨터통신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컴퓨터통신이 거의 인터넷으로 대체되어 ISP라는 용어가 점점 일반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OSP보다 더 넓은 개념의 용어이다.

관물의 내용을 점검(monitor)할 의무는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CompuServe를 메시지의 단순한 배포자로 본 것이다.

그런데, Stratton Oakmont, Inc. v. Prodigy Services Co. 사건 [N.Y.Sup.Ct. May 24, 1995] (23 Med. Rptr. 1794 또는 1995 WL 323710)에서 뉴욕 주법원(N.Y.Sup.Ct.)은, Prodigy의 전자게시판 “Money Talk”에 투자중개회사인 Stratton Oakmont 등을 비방하는 글이 게시된 것과 관련하여, Prodigy에 대하여 출판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Prodigy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Money Talk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부적합한 내용들을 검열(screen)하고 있다고 광고하였고, 실제로 검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음란하거나 모욕적인 표현들을 사전 검열하는 등 편집권(editorial control)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통신풍위법(Commucation Decency Act, 이하 “CDA”로 약칭)의 제정

Cubby 판결과 Stratton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려에 따라 1996년 제정된 CDA<sup>65)</sup> 제230조 (c)(1)은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는 제3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어떤 정보에 관하여도 그 정보의 Publisher(출판자) 또는 Speaker(발언자 또는 송신자)로 취급되지 않는다.”라고, (c)(2)(A)는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정보, 선정적이거나 비속한 정보 또는 과도한 폭력성을 내포하거나 타인을 괴롭히는 내용의 정보 기타 문제 있는 정보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

하여 선의를 가지고 행한 자발적인 조치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c)(3)은 “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본 조항에 반하는 주법 기타의 지방공공단체 제정의 법령을 근거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Stratton과 같은 사건에서 ISP가 선의였다면 출판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것인데, 일종의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Good Samaritan Clauses)이다.

(3) CDA 시행 이후의 판례

Kenneth M. Zeran v. American Online, Inc. 사건 [129 F.2d 327 (1997)]에서 제4연방항소법원(4th Cir.)은, AOL의 전자게시판에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건물 폭파 6일 후부터 익명의 이용자가 폭파범을 칭송하는 내용의 티셔츠를 광고하면서 이와 무관한 Zeran의 이름과 집 전화번호를 게재하여 Zeran이 협박전화에 시달리게 되자 AOL을 상대로 배포자 책임을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sup>66)</sup> CDA 제230조를 해석하면서 ‘출판자’의 개념 속에 ‘배포자’도 포함된다고 보고, 나아가 피해자의 통지를 받고 ISP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Zeran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명예훼손적임을 알면서 악의적 의도로 삭제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AOL의 주장을 채택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ISP는 제3자가 제공한 정보에 관하여 출판자로서 뿐만 아니라 배포자로서도

65) 원래 이 법은 인터넷상 음란정보 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ISP가 음란한 이미지 등을 스크린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의도로 발의된 것이었는데, Stratton 사건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ISP의 책임제한조항이 추가된 것이라고 한다. 이해완, 앞의 논문(주9), 107면.

66) 한편, Zeran은 그 과정에서 오클라호마시 라디오방송국인 KRXO가 청취자들에게 AOL에 투고된 내용을 얻어 항의전화를 할 것을 촉구하였음을 이유로 별개로 KRX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광진, 앞의 논문(주26), 80면 참조.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사실상의 완전면책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Zeran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상고를 수리하지 않았다.<sup>67)</sup>

Sidney & Jaqueline Blumenthal v. Matt Drudge and American Online, Inc. 사건 [Civil Action No. 97-1968, 992 F. Supp. 44. (D.D.C. 1998)]<sup>68)</sup>은 할리우드의 gossip 칼럼니스트인 Matt Drudge가 AOL에게 'Drudge Report'라는 칼럼을 제공하되 AOL의 서비스표준(standard terms of services)에 위반되는 경우 AOL이 그 삭제권한을 갖기로 계약하고,<sup>69)</sup> 이후 “백악관보좌관 임명예정자인 Sidney Blumenthal이 과거 아내를 구타하여 재판을 받기도 했다는 사실을 익명의 공화당원이 제보하였는데,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그러한 주장은 클린턴의 적들이 꾸며낸 완전한 허구(a pure fiction)라고 말하고 있고, Blumenthal과의 접촉시도는 실패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가 Blumenthal 부부가 항의하자 특별판(a special edition)을 내는 형태로 종전 기사를 취소한 것에 관하여 Blumenthal 부부가 Drudge와 AOL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OL은 약식재판(summary judgement)<sup>70)</sup>을

구하는 신청(a motion)을 하였고, 콜럼비아연방법원<sup>71)</sup>은 AOL의 신청을 받아들여 Blumenthal 부부의 청구를 기각하였다.<sup>72)</sup>

#### (4) 평가

미국의 입법과 판례는 전자게시판 등을 통한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하여 ISP에 대한 면책과 아울러 ISP의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고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태도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ISP가 유해한 메시지의 선별, 편집을 행하였음을 이유로 출판자로서의 책임을 묻게 된다면 ISP는 자율적 규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는 국가에 의한 규제보다는 자율적 규제가 효과적이고 바람직하기 때문이고, 한편 자율규제의 차원에서 편집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ISP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과도한 자율규제를 행하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렇게 미국의 입법과 판례가 ISP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ISP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로서는 익명의 가해자를 알 수 없어 ISP를 공동

67) cert. denied, 524 U.S. 937, 118 S.Ct 2341 (1998).

68) <http://cyber.law.harvard.edu/property00/jurisdiction/blumenthal.html> 참조.

69) Drudge Report는 “www.drudgereport.com”이라는 독자적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구독자들(subscribers)에게 전자 메일로 Drudge Report의 새로운 내용(new edition)을 계속 발송하고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위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

70) 법률적 문제들만이 다툼이 대상이거나 사실에 관한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 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 원고나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하는 평결전 판단(preverdict judgement)을 말한다. 오랜 기간의 사실심리(trial) 없이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BARRON'S DICTIONARY OF LEGAL TERMS(3rd Edition), 1998.

71)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72) Blumenthal 부부는 이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달리 가해자가 분명히 특정되어 있는 데다가 AOL이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이 있었고 이 리포트에 대하여 광고까지 행하였으므로 CDA 제230조의 면책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장철익,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언론중재 24권 1·2호(2004. 봄·여름호) 참조. 한편, Drudge 역시 자신의 거주지가 California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기각 또는 이송을 구하는 신청(a motion)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기각되었다.

피고로 함으로써 익명의 가해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sup>73)</sup>

## 나. 다른 나라에서의 논의

### (1) 영국

영국은 1996년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1996)을 개정하면서 Publisher이면 책임을 지고, Distributer이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론에 기초하여,<sup>74)</sup>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있어 ISP에 대한 면책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의 배포에 종사한 사람이라도, 그가 ① 저작자(author), 편집자(editor) 또는 출판자(publisher)가 아니고,<sup>75)</sup> ② 정보의 공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며, ③ 그가 명예훼손적 진술의 공표를 야기하였거나 그 공표에 기여한 사실을 몰랐고 그렇게 믿을 이유도 없었던 경우에는 면책된다(제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이 규정은 common law상 배포자의 innocent dissemination 항변을 현대화한 것이라고 평가되고,<sup>76)</sup> ISP에게 면책요건의 입증책임을 지움으로써 피해자의 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있다.

영국의 고등법원은, Godfrey가 Demon Internet의 뉴스그룹에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글이 게시되어 그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10일간 방치되었음을 이유로 Demon Internet 등을 상대로 제기한 Laurence Godfrey v. Demon Internet Limited 사건<sup>77)</sup>에서, 영국의 명예훼손법과 미국의 CDA는 서로 다른 접근방식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피고가 명예훼손법 제1조 제1호 소정의 출판자 등은 아니지만, 원고로부터 통지를 받은 이후 기술적으로 당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2호, 제3호에 기한 면책을 부인하고 Demon Internet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위 판결은 영국과 미국 사이의 서로 상이한 법률에 기한 당연한 판결이라 할 수 있지만, 미국이 인터넷과 관련된 물질을 선도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법원이 명시적으로 미국 판례의 입장을 거부한 것으로서, 인터넷의 글로벌한 성격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활동무대를 가진 ISP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고,<sup>78)</sup>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이라는 문제를 야

73) 미국에서는 통상 익명의 명예훼손자에 대하여 "John Doe" 또는 "Mary Doe"라는 이름으로 피고를 특정하였다가 이후 그 신원이 밝혀지면 피고의 이름을 변경한다고 한다. John Doe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으면, 결국 ISP의 책임 여부에 재판의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고, John Doe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다. Lyrrisa Barnett Lidsky, "Silencing John Doe: Defamation & Discourse in Cyberspace", Duke Law Journal 49권 4호(2000. 2.), 855면. 위 글은 John Doe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회사들이나 그 임원들이 익명의 John Do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이유가 있는데, 주로 비판자들을 괴롭히고 입을 막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부차적으로 잠재적 비판자들이 의도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잘못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이것은 인터넷 SLAPP(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로 특징지을 수 있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인터넷은 발언권의 불균형을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송은 발언권의 불균형을 복원하도록 위협하는 것이다.

74) 이승호,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 인터넷법률 10호(2002. 1.), 법무부, 2002, 13-14면 참조.

75) 이 규정에 대한 좀더 상세한 설명은 이해완, 앞의 논문(주9), 110-111면 참조.

76) Graham J H Smith, 「Internet Law and Regulation」(3rd. ed), Sweet & Maxwell(2002), p.174 ; Matthew Collins, 「The Law of Defamation and The Internet」, Oxford University Press(2001), 199면, 장철익, 앞의 논문(주72), 주 23)에서 재인용.

77) (Case No: 1998-G-No 30 in the High Court of Justice, Queen's Bench Division, (Handed Down at Leicester Crown Court), before Mr. Justice Morland, 26 March, 1999).

78) 이해완, 앞의 논문(주9), 112면 참조.

기하였다.<sup>79)</sup>

(2) 독일<sup>80)</sup>

독일은 1997. 8. 1.부터 시행한 연방정보통신사업법<sup>81)</sup>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제1장 제5조는 “(1) 서비스제공자는 스스로 제공한 내용물에 관하여 일반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서비스제공자는 제3자 제공의 내용물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인식하고, 또 그 이용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조치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3) 서비스제공자는 제3자의 내용물에 대한 단순한 접속대개사실만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서비스제공자가 연방통신법상의 통신비밀보호 규정을 준수하면서 그 내용물을 인식하고, 그 내용물을 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또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내용물의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일반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은 ① 명예훼손과 저작권침해, 음란물유통 등 민·형사상의 모든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조항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미국, 영국의 입법례와 구별되고,<sup>82)</sup> ②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ISP에 대한 사실상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의 CDA와 차이가 있다.<sup>83)</sup>

(3) 프랑스<sup>84)</sup>

많은 프랑스법원들은 미국이나 영국의 법원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미디어분석이론에 기초하여 ISP의 책임을 판단하고 있지만, ISP의 검열능력에 대한 프랑스법원들의 판단은 일관되지 못하여 법률 상황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

Lefébure v. Lacambre 사건에서 파리지방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 'TGI'로 약칭)은 1998. 6. 9. ISP가 게시된 내용(content)이 저속하거나(conflict with decency)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여부를 검열(check)하지 못하면 독립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였고, 그 항소심인(사건명은 "Halliday v. Lacambre"이다.) 파리항소법원(Cour d'Appel, 'CA'로 약칭) 역시 1999. 2. 10. 프랑스 톱모델 Estelle Halliday의 사적 누드사진이 무단으로 게시되도록 한 것에 대하여 ISP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SA Electre v. SARL TI Communication 사건에서 파리상사법원(Tribunal de Commerce)은 1999. 5. 9. ISP가 게시물의 내용을 검열할 의무는 없고, ISP가 몰랐던 명예훼손물(defamatory information)이 게시된 것에 대하여 독립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79) Harvey L. Zuckman, "The Global Implications of Defamation Suits and the Internet: the U. S. View", Entertainment law review(2001. 2.) 12권 2호에 의하면, Godfrey사건의 피고 중 한명으로서 미국인인 Mr. Dolenga가 미국법원에서 위 판결의 승인(enforcement)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데, 국제재판관할위반과 영국과 미국의 실체법 차이를 이유로 미국법원이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80) 장철익, 앞의 논문(주72); 김유진, 앞의 논문(주15), 118-119면의 해당부분 참조.

81) Das Information und Kommunikationsdienste Gesetz, "IuKDG"로 약칭.

82) 장철익, 앞의 논문(주72) 참조.

83) 이해완, 앞의 논문(주9), 113면은 독일의 이러한 입법은 결과적으로 미국 판례의 입장보다는 영국의 판례입장과 거의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84) 이 부분은 Xavier Amadei, "Standards of Liability for Internet Service Providers: A Comparative Study of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with a Specific Focus on Copy right, Defamation, and Illicit Content",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35권 1호(2001. 11.-2002. 2.), 195-197면에 소개된 프랑스 판결들을 번역한 것이다.

하였다.

Axa v. Infonie 사건에서 뽀또지방법원(TGI Puteaux)은 1999. 9. 28. ISP가 명예훼손적 주장이 게시되는 것을 방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게시물이 자동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구독자들에게 제공되도록 되어 있어 ISP가 사전에 내용을 검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이유로 ISP의 책임을 부정했는데, 사건의 주요 사실이 미국의 Cubby 사건과 유사하였다.

한편, Lacoste v. Société Multimania 사건에서 낭페레지방법원(TGI Nanterre)은 1999. 12. 8. ISP는 일반적으로 세심한 주의의무(an obligation of cautiousness and diligence)가 있으므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고, 고지(information), 주의깊은 감시(vigilance), 조치(action)에 관하여 합리적인 방법들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실시하였다. 즉, (1) 이용자들에게 제3자의 권리들을 고지할 의무, (2) 불법적인 내용들을 검열할 합리적인 도구들을 사용할 의무, (3) 불법적인 내용들을 제거(evict)하기 위해 대응할 의무 등 삼중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Multimania에 어떤 모델의 불법 누드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된 것에 관한 것이다. 항소심인 베르세이유 항소법원(CA Versailles)은

주의깊은 감시(vigilance)의무에 대하여 좀더 정교한 정의를 하였는데, ISP는 게시물을 시스템적으로 검열할 의무는 없고 기술적 업무들(technical tasks)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게시물이 불법이라는 의심이 들면 즉각적으로 검열을 하면 된다고 하였다.

SA Ciriél v. SA Free 사건에서 파리지방법원은 2001. 2. 6. defendant-ISP는 구독자들에 의하여 게시된 명예훼손물에 대하여 법원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명예훼손물의 웹사이트에의 접근을 차단하면 책임이 없다고 하였다.

(4) EU<sup>85)</sup>

EU는 회원국들 사이의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입법의 통일을 위하여 “역내시장에서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특정 법률문제에 관한 Directive”<sup>86)</sup>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et Market :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또는 ‘E-Commerce Directive’로 약칭)<sup>87)</sup>을 제정하였는데, 제2장 4절 “정보소통을 매개하는 자의 책임(Liability of intermediary service providers)”이 ISP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85) 이 부분은 장철익, 앞의 논문(주72)과 이승호, 앞의 논문(주74), 16-17면의 각 해당부분 및 <http://google.co.kr> 및 <http://europa.eu.int>에서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라는 검색어로 검색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86) ‘directive’는 통상 최종권고안으로 번역하는데, EU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제정하는 법규의 일종이다. 각 회원국들은 이에 구속되어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 방법 및 수단은 회원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EC 재판소는 회원국이 directive의 실시를 태만히 한 경우,私人이 그 directive의 규정을 직접 원용하여 회원국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英米法辭典』(編集代表 田中英夫, 東京大學出版會, 1991 참조.

87)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정식명칭은 ‘The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가 1997. 4. 16. 법률적 기초를 제시하였고, 1998. 11. 18. ‘Directive안’을, 다시 1999. 9. 1. ‘Directive수정안’을 각 제안하였으며, 이사회(Council of European Union)가 2000. 2. 28. 위 Directive안을 채택하였고,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2000. 5. 4. 위 Directive를 승인하였으며,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2000. 6. 8. 위 Directive를 채택하였고, 관보에 2000. 7. 17. 공포됨으로써 EU 각 회원국들은 공포된 날로부터 18개월 내인 2002. 1. 17.까지 위 Directive를 각국의 국내법으로 전환시킬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현재 그 진행 상황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12조는 “Mere conduit”라는 제목 하에, 서비스 제공자가 전송(transmission)이나 네트워크에의 접속(access) 서비스 등 단순한 통로(mere conduit)로서만 행위하는 경우<sup>88)</sup> 회원국들은 서비스제공자가 전송되는 정보로 인하여 책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sup>89)</sup> 제13조는 “Caching”이라는 제목 하에, 서비스제공자의 정보전송시 회원국들은 한 수용자로부터 다른 수용자로의 효과적인 정보전송을 위하여 자동적, 중간적, 일시적인(temporary) 정보의 저장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책임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90)</sup> 서비스제공자가 Hosting에 임할 때, 즉 웹사이트나 뉴스그룹 등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들이 생산한 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제14조는 “Hosting”이라는 제목 하에, 회원국들은 서비스제공자가 ① 불법적인 활동이나 정보를 현실적으로 인식(actual knowledge)하지 못하였을 때와 불법적인 활동이나 정보가 명백하다고 볼만한 사실이나 정황(circumstances)을 모를 때, ② 불법적인 활동이나 정보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그러한 활

동이나 정보가 명백하다고 볼만한 사실이나 정황을 알고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였을 때에는 저장된 정보로 인하여 책임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91)</sup> 일반적 감시의무와 관련하여 제15조는 “No general obligation to monitor”라는 제목 하에, 회원국들은 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제공자가 전송하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감시할 일반적인 의무와, 불법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정황을 적극적으로 추적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92)</sup>

제12조 내지 제14조가 제시하는 기준은 대체적으로 미국의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유사하고, 제15조가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회원국들이 다양한 개별적 감시의무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sup>93)</sup>

위 Directive는 상업적 ISP만을 대상으로 하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mere conduit, caching, hosting의 경우를 구분하고 있고,<sup>94)</sup> 독일과 같이 명예훼손을 비롯한 각종 온라인상 불법행위를 포괄하여 규율하면서, 영국과 독일의 입법례보다 서비스제공자

88) 제1항은 면책사유가 인정되는 조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① 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전송을 촉발(Initiate)하지 않았을 것, ② 서비스제공자가 전송되는 정보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 ③ 서비스제공자가 송수신되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그에 수정을 가하지 않았을 것. 또한, 제2항은 제1항의 정보전송과 접속행위에는 정보전송시 전송을 위하여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 정도의 자동적이고 중간적이고 순간적인(transient) 저장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9) 제3항은 이 조항은 회원국들이 각 법체계에 따라 법원이나 행정청이 서비스제공자에게 위반행위를 중단하거나 막도록 요청하는 것에 영향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90) 제2항은 이 조항은 회원국들이 각 법체계에 따라 법원이나 행정청이 서비스제공자에게 위반행위를 중단하거나 막도록 요청하는 것에 영향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91) 제2항은 서비스이용자가 서비스제공자의 통제나 권한 아래에서 행위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이 조항은 회원국들이 각 법체계에 따라 법원이나 행정청이 서비스제공자에게 위반행위를 중단하거나 막도록 요청하는 것에 영향을 없고 그 절차를 규정하는 것에도 영향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92) 제2항은 회원국들은 서비스제공자들에게 서비스이용자들에 의하여 불법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불법적인 정보가 공급되고 있을 때 신속하게 관련 당국에 통지할 의무 또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 정보이용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3) <http://google.co.kr>에서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라는 검색어로 검색된 자료 중 Morrison & Foerster LLP에 게재된 내용 참조.

94) 실제, 명예훼손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hosting이다.

의 책임 및 면책 요건을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서비스이용자의 책임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제 위 Directive에 따라 상업적 ISP에 관한 한 EU의 각 회원국들의 입법과 판례가 점차 통일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5) 일본<sup>95)</sup>

일본에서 문제가 된 주요한 사건으로, 우선 니프티 사건은 PC통신 내 포럼(토론방)에서 임신중절의 허용성 등을 주장한 원고에 대하여 행해진 명예훼손적 발언이 문제된 사안인데, 제1심 동경지방법판소는 시삽(sysop)<sup>96)</sup>이 원고의 요구를 받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책임이 있고, PC통신회사는 실질적 지휘감독관계에 기한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으나,<sup>97)</sup> 그 항소심인 동경고등재판소는 가해자의 명예훼손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관리자의 삭제의무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구제할 수단이 없고, 회원들의 지적같은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생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삭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삽 및 PC통신회사의 책임을 부정하였다.<sup>98)</sup>

다음으로, 동경도립대 사건<sup>99)</sup>은 대학의 전산시스템 내에 명예훼손적 목적과 내용을 가진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피해자들이 그 홈페이지의 제거요구를 하였음에도 방치된 사안인데, 법원은 원칙적으로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명예훼손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다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가해행위의 태양이 심히 악질적이고 피해의 정도도 심대한 것 등이 일견 명백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작위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네트워크 관리자 등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이후 일본은 ISP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2. 4. 1.부터 시행하였다. 위 법은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명예훼손과 저작권침해의 경우를 모두 규율하고 있는데, 제3조에 의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①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권리침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가 아닌 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② 침해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부당한 권리침해를 믿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침해권리자로부터 송신방지신청이 있고 이에 대해 침해자가 7일 내에 부동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sup>100)</sup>

다.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 현황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ISP의

95) 김유진, 앞의 논문(주15), 119-120면; 이해완, 앞의 논문(주9); 장철익, 앞의 논문(주72); 백윤철,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ISP의 법적 책임”, 인터넷법연구 1호(2002), 한국인터넷법학회, 584면 및 589-595면의 각 해당부분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96) ‘system operator’의 합성어이다.

97) 東京地裁 平成 9. 5. 26. 판결(判夕 947호, 125면; 판례시보 1610호 22면).

98) 東京高裁 平成 13. 9. 5. 판결(확정). 判夕 1088호, 94면, 판례시보 1786호, 80면.

99) 東京地裁 平成 11. 9. 24. 판결, 판례시보 1707호, 139면.

100) 이 법규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이수진, “ISP책임제한법에 대한 검토-일본의 ISP책임제한법을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 34호(2004년 봄호), 80-96면 참조.

책임이 문제되고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명시적 법률규정은 없고,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제1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ISP에게 주의의무 및 삭제의무 등을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sup>101)</sup> 위 규정이 객관적인 정보의 공개를 넘어 명예훼손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반이론에 따라 문제해결을 시도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sup>102)</sup>

학설상으로는 완전면책을 주장하는 견해는 발견하기 어렵고, 대체로 일정한 요건 하에 ISP의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가 많으며, 판례 역시 그러하다.

**[사례] 노동조합 전용게시판 사건**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7210 판결 [공1998상, 736]

통신회사의 노동조합이 PC통신에 올린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PC통신회사가 임의로 삭제하고 전용게시판을 일시중지, 폐쇄하자 PC통신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피고 PC통신회사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삭제하고

원고 노동조합의 회원들만 사용하는 회원메뉴게시판을 포함하여 전용게시판(일반회원에게도 공개) 서비스를 일시중지, 폐쇄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등 법령과 약관에 위반한 게시물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적법하고 이를 필요한 한도를 넘은 과잉 조치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례] 팬클럽 회원 인터넷 비방 사건**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6801 판결 [미공간]

피고 회사(PC통신업체)의 공개게시판에 A가 타인의 ID로 특정 가수를 비방하는 글을 계속적으로 올리자, 위 가수의 팬클럽 회원인 원고가 그에 대한 경고의 글을 올렸고, 이후에는 A가 원고를 비방하는 글들을 계속하여 게시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게시판 담당자에게 A의 글들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게시판운영원칙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진정하였고, 위 위원회의 시정조치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A에게 경고 메일을 발송하였을 뿐 약 5-6개월간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sup>103)</sup>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제2심 법원<sup>104)</sup>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위자료 인정금액 1,000,000원), 대법원은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2심 판결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A의 글들은 피고

101) 이인석, 앞의 논문(주47), 192면; 권영준, “인터넷상에서 행해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인터넷과 법률(남효순·정상조 공편), 법문사, 2002, 580면 등.  
 102) 김용석, “인터넷상에서 행해진 제3자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홈페이지 운영자의 책임”, 대법원관례해설 44호, 법원도서관, 2003, 753면 참조.  
 10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9. 8. 18. 선고 99가소83281 판결.  
 104) 서울지방법원 2001. 4. 27. 선고 99나74113 판결.

회사의 정보서비스 이용약관<sup>105)</sup>에 정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그러한 글들이 게시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사건**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공2003하, 1661]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A 명의로 원고의 공직생활 중 성추행, 금품수수에 관한 글이 게시되자, 원고는 사실이 아님을 해명하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다시 A의 글을 옹호하는 취지의 B 명의로와 C 명의로의 글이 각 게시되자, 원고는 경고의 글을 게시하였고, 삭제를 요구하거나 C와 A의 글을 비난하는 글이 각각 게시되었다. 원고가 내용증명으로 삭제를 요청하자,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된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원고는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sup>106)</sup> 및 제2심 법원<sup>107)</sup>은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홈페이지 운영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 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명예훼손적 글이 게시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삭제의무를 지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비영리 군정(郡政) 홍보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물이 게시된 것을 알게 될 때마다 원고가 반론까지 게시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삭제를 공식 요청하자 즉시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를 삭제하기에 이르렀던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심리하지 않고 게시물의 즉시 삭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sup>108)</sup>

(2) 책임의 성질과 책임의 근거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미국과 달리 ISP의 완전책임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고, 책임의 성질에 관하여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익명예 의한 정보유통이 많아 행위자를 가려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ISP에게 그 책임을 대신 묻고 있는 것이고 (대위책임), 그 근거로는, ① 사업자는 사이버스페이스를 운영함으로써 일정 부분 경제적 이득을 누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제적 이득설, ② 현실적으로 문제의 글을 삭제하거나 취급을 거부, 정지, 제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

105)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사가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고, 게시물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등에는 회사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106) 대구지방법원 2002. 6. 25. 선고 2001가단62531 판결.

107) 대구지방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나9163 판결(인용 판결).

108) 환송심인 대구지방법원 2003. 10. 8. 선고 2003나9535 판결은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위 글들의 삭제를 요구하였던 2001. 6. 12.경에서야 삭제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부정하였다(원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03다59440호로 상고하였으나, 2004. 1. 28.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 한편, 김용석, 앞의 논문(주102), 754면은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에서 문제된 홈페이지가 공공의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로서 영리보다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이고, 주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방문자가 많아 보이지는 않으며,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관리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 전자게시판은 주로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의견개진 차원에서 개설되어 있다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에게 계속적인 검열 및 삭제의무를 지우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하고 있다.

다는 기술력보유설,<sup>109)</sup> ③ 자신이 관리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관리자책임설 등이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sup>110)</sup>

한편,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통설과 판례인 객관적 공동설의 입장에서 ISP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관하여 명예훼손행위가 가능하도록 접속을 매개하였거나 침해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을 관리, 운영하여 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예훼손의 수단을 제공하고 이것이 침해행위의 원인으로 경합한 이상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인정되므로 ISP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방조자로서 명예훼손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견해가 있는데,<sup>111)</sup> 뒤에서 보는 것처럼 ISP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ISP의 의무위반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지 않은 것에 있으며 어떤 면에서 ISP는 자신의 소유물이 명예훼손행위에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점, 명예훼손행위의 게시 즉시 실행행위는 종료하고, ISP에게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하기 이전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대부분이 발생하였는데 명예훼손의 방조자라는 이유로 ISP에 대하여 그 손해의 전부에 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ISP는 종래의 출판자와 달리 편집권이 아닌 사후적 관리통제권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출판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ISP는 단

지 작위의무위반으로 인한 독립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sup>112)</sup> ISP의 작위의무위반이 있는 시점부터는 표현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견해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 별개로, ISP가 자체적으로 sysop을 두고서 관리·운영하는 전자게시판에 있어서는 삭제의무위반을 이유로 sysop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ISP는 사용자로서 sysop과 공동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ISP와 sysop이 완전히 독립한 주체이고 sysop이 ISP의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지 않음이 외부적으로도 명백한 경우라면 ISP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우기는 곤란할 것이다.

### (3) 책임발생의 요건

지금까지의 학설과 판례를 종합하여 책임발생의 요건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ISP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작위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서, 이하의 요건은 책임발생의 성립요건이므로,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가) 제3자에 의한 인터넷상 명예훼손적 표현의 게시

ISP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에 게시된 정보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나) 삭제의무 등 작위의무의 발생

1) ISP에 의한 관리통제가 가능할 것

109) 독일의 연방정보통신사업법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위 법 제5조는 서비스제공자가 그 내용물을 인식하고 그 내용물을 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또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10) 박선영,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인터넷법률 15호(2003. 1.), 117면 참조.

111) 이인석, 앞의 논문(주47), 190-191면 및 194면 참조.

112) 이에 의하면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723 판결(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와 병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구분)과 유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ISP 자신이 명예훼손적 표현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ISP가 전통적인 언론매체와 마찬가지로 제3자에 의하여 게시되는 내용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 요건은 ISP가 출판자인가 배포자인가의 구별과 관련이 있고, 관리통제가 종래의 출판자처럼 내용수정이나 삭제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전통적 편집권과는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ISP에 의한 게시판 등의 관리는 ISP와 해당 인터넷서비스의 성격, ISP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약관, 운영방침, 관련 법령 등에 기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ISP는 IAP(Internet Access Provider,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준다),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사이트 내에 content를 제공한다), LAP(Logical Access Provider, 검색엔진을 제공하고, 인터넷상 정보들의 체계적 정리와 관련된 도구들을 제공한다)를 포함하는 개념이다.<sup>113)</sup> 삭제의무 등 작위의무는 ISP에 의하여 정보의 관리통제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SP 중 관리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IAP와 LAP에 있어서는 삭제의무 등 작위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별로 보면, ① 뉴스서비스, 공개토론, 자료실영역, www 페이지, 사실데이터베이스 등 출판영역(publishing areas)은 삭제, 접근제한 등의 관리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② 전자게시판을 통한 침해의 경우 ISP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통제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ISP가 제3자에게 대여한 홈페이지 공간에서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관의 해석에 따라 관리, 통제권이 있는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전

자우편이나 파일전송, 이용자 간의 정보전송 등 배포영역(distribution areas), 인터넷 중계토론 등 공유메시지 영역(shared message areas)은 관리통제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어 이를 통한 침해나 링크를 통한 침해의 경우는 ISP에게 그 침해에 대한 관리통제권이 있다고 보기 힘든 경우가 많을 것이다. 현재 ISP 대부분은 이들 서비스 모두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서비스 영역 여하에 따라 유통기관이나 출판자의 복합적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sup>114)</sup>

어떤 상황이든 ISP도 자신의 소유물이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불법행위에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이를 삭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sup>115)</sup> 다만, ISP가 과도하게 관리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문제가 있으나, 이것은 시장의 법칙에 맡길 수밖에 없다.

#### 2) 삭제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ISP에게 게시물에 대한 일반적이고 상시적인 감시 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ISP가 게시판 등에 투고되는 모든 내용을 사전에 점검·조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sup>116)</sup>

ISP에게 위와 같은 일반적 의무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ISP에 대하여 삭제 등 필요한

113) Xavier Amadei, "Standards of Liability for Internet Service Providers: A Comparative Study of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with a Specific Focus on Copy right, Defamation, and Illicit Content",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35권 1호(2001. 11.-2002. 2.), 191면 참조.

114) 권영준, 앞의 논문(주101), 주 50); 이인석, 앞의 논문(주47), 196면; 박창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9) 등 참조.

115) 앞서 본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7210 판결 [공1998상, 736] 참조.

116) 황찬현, 앞의 논문(주26), 33면; 이인석, 앞의 논문(주47), 196면; 이해완, 앞의 논문(주9), 114면 등.

조치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가 상업적 ISP에 대한 피해자의 삭제요청을 규정하고 있고, 약관상 삭제요청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도 이것은 확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한편, ISP가 타인(sysop)에게 대여한 동호회사이트 등과 관련해서는 통상 약관에 의하여 ISP와 동호회의 sysop이 별개로 게시물에 대한 통제권한을 갖는 것이 보통이므로, sysop에게 삭제요청을 하였다라도 그것만으로 ISP에게 삭제요청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삭제요청이 없었음에도 ISP가 명예훼손적 표현이 게시되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삭제 의무가 있는가? 어떠한 경로로 명예훼손 발언의 게시를 알게 된 ISP로서는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sup>117)</sup>가 있고, 게시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진다는 견해도 있으며, 입법론적으로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로 제한하자는 견해도 있다. ISP의 서비스내용에 대한 통제의 정도는 다양하므로 위법 또는 유해한 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대응한 ISP는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방치한 ISP는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사상의 자유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는 정보를 방치한 ISP에 비하여 정보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관리통제권을 행사한 ISP가 오히려 무거운 책임을 져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SP가 알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ISP의 삭제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특별한 사정과 관련해서는,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 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서비스의 성격이 공익적인지 상업적인지, 인터넷상에서 사상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3) 피해의 중대, 명백성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고 일견 명백해야 한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에도 ISP에게 삭제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ISP의 소유물에 관한 제3자의 과도한 개입을 야기하여 ISP의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게시된 내용이 명예훼손적임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삭제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의 명백성과 관련해서는 제3자에 의하여 게시된 명예훼손적 표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성이 명백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게시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러한 점이 명백하지 않다면 피해자가 삭제요청시에 ISP에게 충분한 자료의 제공과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sup>118)</sup>

피해의 중대, 명백성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말하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이익교량의 원칙을 무엇보다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아야 할 것인데,<sup>119)</sup> 공적 문제(public issue), 공적관심사(public concern), 공적관계인지 사적관계인지,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것인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라면 일응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될 수 있을 것이다.<sup>120)</sup> 구체적으로는,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게시의 목적(비방할 목적), 내용, 게시기간(장기간)과 방법(계속적),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고

117) 이하의 견해들은 김유진, 앞의 논문(주15), 127면에 소개된 것 참조.

118) 장철익, 앞의 논문(주72).

119) 이해완, 앞의 논문(주9), 114-115면 참조.

120) 박선영, 앞의 논문(주110), 124면 참조.

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 삭제 등 조치의 지체 또는 불이행

ISP가 삭제를 요청받거나 삭제의 필요성이 발생한 정보를 제 때에 삭제한 경우 ISP의 책임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ISP에 대한 삭제 등 의무의 면제 또는 책임 면제

ISP의 책임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의 일반법리와 연결되어 삭제 등 조치의 지체 또는 불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ISP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이것은 ISP의 항변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ISP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ISP에 있어서도 위법성조각의 일반적 사유인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ISP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 삭제 등 조치의 기술적, 경제적 어려움

당해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에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면, 이는 ISP의 경영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삭제의무 등 작위의무가 발생하였더라도 ISP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나) 성실한 대응

ISP가 삭제를 요청받은 게시물에 관하여 즉시 삭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피해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ISP가 정보의 관리통제자로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신속하고 성실한 대응(가해자에 대한 경고메일의 발송, 정정글의 게시권고, 게시물에의 접근제한 등)을 한 것이라면

정당한 관리통제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므로, ISP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다) 당해 표현의 공익성 및 진실성에 관한 상당한 이유

한편, ISP가 당해 표현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삭제 등 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의 상당한 이유는 표현 자체나 그 밖의 당시 정황에 비추어 그럴듯하다는 정도의 표현행위자의 상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정도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sup>121)</sup>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SP에 대하여 진실확인 의무를 지우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라) 유효적절한 반론

앞서 지적한 대로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개인적인 사정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반론권을 행사하기 곤란하거나 효과적인 반론이 곤란한 경우가 있고, 반론권은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청구권만으로는 피해자를 신속히 충분히 구제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므로, 피해자에 의해 반론권이 행사되었다거나 반론권의 행사가 가능하였다는 점만으로 ISP의 삭제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고,<sup>122)</sup> 이러한 점은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은 쌍방향성(interactivity)을 갖는 매체로서 ISP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제공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이 반론권의 행사를 통하여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이상 명예훼손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 표현을 삭제할 이유는 별로 없으므로, 피해자의 유효적절한 반론권의 행사에 의하여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거나 신속한 삭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ISP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121) 물론, 피해자가 앞서 본 대로 삭제요청시에 ISP에게 충분한 자료의 제공과 설명을 통하여 당해 표현이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하였다면 ISP의 이러한 항변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122) 위와 같은 논거들에 관하여는 이인석, 앞의 논문(주47), 197-198면 및 그에 인용된 글들 참조.

책임을 인정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 (5) 책임의 범위

ISP는 통상 이용약관에 ISP의 면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sup>123)</sup> 피해자가 약관의 효력이 미치는 회원인 경우, 일단 면책약관은 효력이 있지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sup>124)</sup> 여기서의 ISP 책임은 이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제3자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가한 손해의 확대방지의무위반과 관련된 책임으로서 이러한 면책약관은 위 법률 제7조 제2호에 따라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견해도 가능할 것이다.

ISP의 책임을 공동불법행위책임이라고 본다면 원칙적으로 ISP는 명예훼손행위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고 하겠고, 독립한 불법행위책임이라고 본다면 원칙적으로 삭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책임이라고 하더라도 공평신의칙상 앞서 본 독립한 불법행위책임설이 드는 여러 논거들을 이유로 ISP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론구성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독립한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면서 동시에 표현행위자에게 명예훼손에 관련된 전체 책임을 지우게 된다면 피해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ISP의 삭제의무 등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가 인격권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ISP를 상대로 게시물의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은 의문이 없다.

그러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관하여는 ISP가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동불법행위책임설을 취하든, 독립불법행위책임설을 취하든, ISP를 상대로 곧바로 정정보도 또는 정정광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곤란한 점이 있다.<sup>125)</sup> 그러나, 어느 견해를 취하든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가해자에 의한 정정광고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있어 피해구제의 곤란성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으로 당해 ISP의 홈페이지 특정 부분에 판결의 취지를 게시하는 형태의 정정광고에 유사한 처분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 6. 안티사이트 운영자의 책임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사이트의 개설방법이 쉬워지고 그 비용도 저렴해지면서, 특정 기업이나 언론사 또는 특정 종교단체에 대하여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나 특정 제품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소비자가 그 기업, 언론사, 종교단체, 제품을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넷홈페이지, 이른바 안티사이트를 개설하는 일이 많아졌다. 또한, 특정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티사이트를 등록, 개설하여 외모나 옷차림, 사생활 등에까지 맹목적으

123)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124) 이인석, 앞의 논문(주47), 198면.

125) 다만, 이인석, 앞의 논문(주47), 191면은 ISP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로 비판하거나 악성소문을 퍼뜨리는 일도 있다.

안티사이트에는 도메인등록을 하여 개설된 독립한 사이트(소유방식)도 있고, 인터넷포털사이트 등에 사이버동호회와 같은 형태(대여방식)를 취하고 있는 사이트도 있다.

이러한 안티사이트에 당연히 명예훼손적 표현이 많이 게시되고 있는데, 그 피해자가 안티사이트에 명예훼손적 표현을 게시한 자의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간을 제공한 안티사이트의 개설자 또는 안티사이트 대여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경우, 어느 정도로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 가. 안티사이트 내 표현행위자의 책임

안티사이트는 그 홈페이지의 이름만으로도 어떤 대상에 대한 반대 또는 비판의 의도에서 그 사이트를 개설하였는지를 알 수 있어 그 사이트를 접하게 되는 이용자들 역시 게시된 내용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므로 안티사이트 내의 표현에 대한 허용 범위를 다른 매체에서 보다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sup>126)</sup>

그러나, 안티사이트 내의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명예훼손적인 표현인 이상 명예훼손의 일반이론과 달리 완전한 면책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하급심 판결이다.

#### [사례] 스포츠신문 안티사이트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1. 9. 19. 선고

2000가합86668 판결 (원고 패소) : 확정

관련 시민단체에 의하여 여러 차례 원고 스포츠신문 기사의

선정성, 폭력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는 2000. 7.경 원고 스포츠신문에 반대하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게시판에 신문기사의 내용과 그 대표이사 등을 비판하는 글을 실거나 관련된 글을 복사하여 게시하였다. 원고 스포츠신문 등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기사의 해당 부분이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함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는 원고 스포츠신문의 대표가 특정 교회 목사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기독교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기독교 관련 신문의 대표인 피고가 개설한 종교적 성격을 다분히 지니고 있는 소위 안티사이트인데, 그 성격상 안티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는 다른 언론매체의 기사에 비해 보다 폭넓은 비평이 허용된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각 기사는 종교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므로 그 비평의 허용 범위가 더 넓어진다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고의 이 사건 각 기사는 기독교계 나아가 이 사회의 건전한 문화를 위한 것으로서 그 공익성이 인정되고, 원고 스포츠신문이 재미와 상업성을 추구하여 다소 폭력성과 음란성이 있는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진실한 사실을 전제로 공익을 위하여 원고 스포츠신문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면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종교적 성격의 안티사이트에서의 평론의 한계를 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기사는 위법성이 없다.

#### 나. 안티사이트 개설자의 책임

안티사이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특정 회사나 단체, 언론사, 특정 제품, 특정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의 잘못된 행태를 정당하게 지적하고 분발을 촉구하여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한다면 이는 전체 사회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126) 김유진, 앞의 논문(주15), 132면 참조.

할 것이고, 안티사이트의 특성상 안티사이트에 게재된 일부 표현이 명예훼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안티사이트 개설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위와 같은 안티사이트 개설자에 대하여는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비하여 폭넓은 면책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티사이트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내용이 공익적인 것이 아니거나, 게재되는 내용이나 정보의 대부분이 허위의 사실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안티사이트 개설자에 대해 폭넓은 면책을 허용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다만, 책임의 범위와 관련해서 사이트폐쇄청구가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민주사회의 기초로서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인데, 그 기본터전을 빼앗아 버린다는 점에서 사이트폐쇄는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견해가 있고,<sup>127)</sup> 안티사이트의 게시물 대부분이 사적 이익을 위한 악의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장래 악의적인 명예훼손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격권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당해 안티사이트 개설자를 상대로 안티사이트의 폐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다음은 이에 관련된 하급심 가처분결정이다.

[사례] 안티사이트 폐쇄

서울고등법원 2004. 7. 29.자 2003라748 결정(확정)<sup>128)</sup>

A는 B인터넷포털사이트에 '안티C'라는 사이버동호회를 만들고, C출판회사와 C정수기회사 등의 기업집단(C그룹)과 관련된 자신의 피해사례를 악의적 표현으로 게시하거나 다른 피해사례 등을 옮겨 게시하였다. C회사들의 요청에 따라 B가 접근제한 제재조치를 취하자, A는 같은 포털사이트에 새로이 'C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종전 게시물들을 그대로 옮겨 게시하는 한편 별도로 D와 함께 도메인등록을 하고 독자적 안티사이트를 개설하여 악의적 표현물들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게시되도록 하였다. 이후 A는 C그룹 간부들과 만나 안티사이트를 폐쇄하고 비방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보상 1억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C회사들은 A와 D를 상대로 위 안티사이트의 폐쇄와 위반시 간접강제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제1심 법원(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10. 17.자 2003카합2235 결정)은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안티사이트가 일정 정도 공론의 장(場)으로서 기능한 점은 부정할 수 없으나, 한편 A의 입장에서는, 안티사이트라는 수단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자신의 손실을 전보받으려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글들이 대부분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사실을 왜곡 과장하고 있는 점, A가 C회사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이버동호회 또는 사이트를 만들어 장기간 계속적으로 명예훼손적 표현을 게재 또는 전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이 사건 안티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C회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을 게재 또는 전재하는 것이 그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안티사이트가 일정 정도 공론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127) 박선영, 앞의 논문(주110), 124면 참조.

128) 이 사건의 본안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9. 9. 선고 2003가합12114 판결(확정)에서도 인터넷사이트 폐쇄청구를 받아들였고, 아울러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개설되었던 사이버동호회 안티사이트의 폐쇄청구도 받아들였다.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염려가 있는 일부 게시물에 대하여만 일반인들이 열람을 할 수 없도록 하면 되지,<sup>129)</sup> 안티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이 사건 안티사이트의 경우 대부분의 게시물이 명예훼손의 염려가 있는 글이고, 즉시 이 사건 안티사이트를 폐쇄하지 않으면 C회사들의 명예, 신용 등이 추가적으로 훼손될 염려가 있으며,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여타의 사람들은 결국 A의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안티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순수한 의사를 가진 일반인들은 언제든지 다른 인터넷사이트 혹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소위 "안티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안티사이트 전체에 대한 폐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도 할 수 없다.

#### 다. 안티사이트 대역자의 강제폐쇄

인터넷포털사이트 등이 네티즌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이용료로 사이버동호회(카페, 커뮤니티 등)를 개설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사이버동호회 형식의 안티사이트에 실린 게시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홈페이지를 대여한 사이트관리자를 상대로 그 안티사이트의 폐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이트대역자가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안티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기술적으로 네티즌의 접근을 막은 경우 사이버동호회는 그러한 조치가 위법함은 이유로 사이트대역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일단, 앞서 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비추어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피해자는 사이트대역자를 상대로 당해 정보의 삭제청구를 할 수 있고, 나아가 당해 사이버동호회사이트의 강제폐쇄청구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sup>130)</sup>

다음으로, 통상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는 홈페이지, 사이버동호회 등의 글삭제, 폐쇄로 인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약관에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피해자로부터 요청이 없었더라도 약관의 내용에 따라 안티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기술적으로 네티즌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안티의 대상이 된 기업체나 단체, 공적 인물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평가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약관의 해석이나 유무효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앞서 본 대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과 네티즌들의 자율적인 규제노력이 중요하고, 이러한 문제들은 네티즌들을 주요한 고객으로 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 사이의 시장경쟁을 통하여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에서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약관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끝으로, 사이트대역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앞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서 논한 것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

129) 이러한 이유로 다른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30. 선고 2003가합81466 판결(항소)은 안티사이트(인터넷동호회)의 폐쇄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게시물들에 대한 삭제만을 명하였다.

130) 위 법규정을 좁게 해석하면, 강제폐쇄청구는 곤란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위 법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인격권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강제폐쇄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달라진 언론중재제도와 중재위의 역할

-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살펴 본 중재절차 -

김 중 배

제주중재위원 · 전 제민일보 상무이사

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대국민홍보를 목적으로 지난 5월 27일 제주에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의 인사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중배 위원(주제발표)이 있었으며 이어서 고창실 위원(전 제주산업정보대 교수)의 사회로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주제발표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편집자 주

## I. 언론중재법 제정의 의미

언론중재위는 그동안 언론분쟁 해결기관으로서 또는 언론중재와 반론권 등의 새로운 개념을 우리 사회에 도입한 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 수요는 언론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사회가 다양화하고 개인의 인권이 중요시되면서 언론에 의한 피해와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피해나 분쟁의 심각성도 더 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가 하면 독자나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서도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언론중재위원회의 변화는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 특히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그 파급효과가 어떤 것보다도 크며, 회복하기가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책임에 대한 요구는 자칫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으며, 언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할 경우 그 영향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1월 1일에 제정되고,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로 발생될 수 있는 ‘인격권 침해’ 문제 해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II. 언론중재위원회

### 1. 언론중재위에 대한 조정신청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 등)와 관련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해야 한다.

정정보도청구 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구

주제논문

술이나 서면·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한 때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은 정정보도 등과는 달리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서 그에 상당하게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 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 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2. 직권조정 결정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직권조정 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합의가 이

뤄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직권조정 결정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직권조정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이 상실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중재신청

당사자 쌍방이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언론중재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중재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Ⅲ. 시정권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정권고는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치며,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 IV. 언론중재법 제정에 대한 평가

##### 1. 언론피해구제에 대한 관련 법률의 단일화

현행 민법과 정간물법, 방송법 등에 분산되어 있던 언론피해 관련 규정이 언론중재법으로 통합됨으로써 구제 제도에 대한 피해자들의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한 이용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2. 조정과 중재 절차의 분리

현행 중재절차는 조정에 가까워 중재와 혼동이 있었으나 언론중재법에서는 본래의 의미인 중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정과 중재의 구분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절차에 대한 선택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게 됐으며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3. 손해배상청구도 조정·중재 대상화하여 시간과 비용 절감

정간물법상 중재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만 중재를 하도록 됐으나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에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의 조정,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분쟁을 종합적으로 조정, 중재함으로써 언론피해를 현실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물론 언론사 역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사법적 소송에 따른 과중한 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분쟁을 조속하고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4. 인터넷신문에 의한 피해구제 제도 신설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신문과 달리 이에 따른 피해구제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미비했던 점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도 신속성과 함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신문은 종래 법률 규정의 미비로 인해 정간물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피해구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여론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오프라인의 역할이 점차 감소되고 온라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본다.

#### V. 맺음말

이번에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정간물법에 규정되고 있지 않은 손해배상청구제도의 신설이라든가 인터넷언론에 대한 피해구제를 새롭게 마련한 것 등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전문성 등에 비춰 어떠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시정권고 제도는 현행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의 부합 문제와 더불어 그에 대한 심의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며, 또 언론에 대한 사후 검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언론중재위의 역할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사법적 분쟁해결수단을 거치지 않고서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법부에 의한 해결은 독자와 국민들의 관심에서 한참 멀어진 뒤에야 이뤄지는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미뤄 언론중재위원회는 현재의 소극적 분쟁해결기관에서 적극적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

토 론

토 론

사회고찰실  
전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사회자** :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 전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여러 유용한 중재사례까지 소개해 주신 발표자 김종배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참석자 여러분들께서 토론주제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제도 전반에 대해 기탄 없이 의견이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원장)** : 방송에서 간혹 보도내용과 별 상관없는 일반인을 특정 뉴스의 자료화면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를 걷고 있는 몇 여성들의 모습을 본인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때 화면에 보도된 당사자들은 예측치 못한 상황에서 방송에 공표되는 것에 따른 불쾌감뿐만 아니라 간혹 스토킹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호성(국제라이온스클럽 354-G지구 총재)** : 새로 제정된 법이 언론자유와 신장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면서도 시민의 인격권 보호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칫 잘못하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연대하기도 하지만 국가권력과 시민단체가 연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시정권고청구를 제3자인 시민단체도 할 수 있게 된 점은 이 법을 악용할 여지를 남기는 것으

로 생각됩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기관도 중재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재위원회의 위촉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새 법상의 규정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행정기관의 중재신청을 보다 잘 다룰 수 있으려면 중재위원회의 구성에 행정기관 유경험자도 포함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시기에는 오보가 발생할 경우 그 당사자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데 새 법으로는 신속한 구제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대해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홍익(제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언론이 '업체탐방'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성 보도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언론이 특정 기업이나 은행에 대해 긍정적인 보도를 해 주었는데 사실은 그 기업이 외양과 달리 속은 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일반인들이 언론의 검증 안 된 보도를 그대로 믿고 그 기업과 거래를 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표자** : 언론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도를 해서 불특정의 다수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래에는 이러한 경우 당사자적격의 문제로 인해 조정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

아 별다른 대처방안이 없었지만 새 법 하에서는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나 이용자들을 대표하여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용주(중재심의실장) :** 언론이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을 함부로 공표하면서 부정적인 뉴스를 보도했다면 피해 당사자는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도내용이 본인과 전혀 무관함을 알리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초상권의 침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현재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새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공개된 자리에서 길을 걷고 있는 특정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것만으로 초상권의 침해가 성립하는지는 법률적으로 더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언론계나 학계 일부에서는 제3자에 의한 시정권고 신청이 언론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합니다만 제3자가 시정권고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권고 신청이 있게 되면 언론중재위원회 내에 설치된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시정권고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언론사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권고는 궁극적으로 권고차원에 그치기 때문에 언론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관광부 장관이 중재위원을 위촉하게 되어있지만 법률에 중재위원 중 5분의 2는 법관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위원들도 언론계나 학계, 관계나 시민

사회단체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직무에 객관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새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지만 선거시기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이미 공직선거법에 선거일 120일 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으며 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48시간 이내에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 제정된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반론보도청구의 경우 중재절차를 필수전치에서 임의전치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적 변화가 생길 경우 언론피해 당사자들이 중재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새 법은 제5조제2항에서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위헌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법성의 조각사유는 언론분쟁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는데 굳이 이 조항을 여기에 둔 이유도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법은 제5조제2항에서 인격권에 대해 규정하면서 여기에 ‘저작물 및 사적 문서’까지 포함시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적 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저작물 및 사적 문서’를 인격권에 포함시킨 연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새 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

## 토 론

충치리인 제도는 외국의 음부즈맨제도가 그 모델인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에서 자율적인 규제기구인 음부즈맨 제도를 모든 언론사에 두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조한창(중재부장) :** 먼저 중재절차가 종래와 달리 임의절차화 됨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차이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어떤 절차를 택하는 것이 소송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인지를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 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내용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대법원 판례나 형법의 내용 등을 차용, 이를 묶어서 표현해 놓은 것일 뿐 특별히 위헌소지까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새 법에서 '저작물 및 사적 문서'를 인격권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그것이 법률상 지적 재산권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언론과의 관계에서는 인격적 가치도 지니기 때문에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회자 :** 열띤 토론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고 끝으로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많은 관심과 열의를 보여준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언론자유와 국민의 인격권 보호를 잘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많은 기대와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사실 두 마리의 토끼 모두를

쫓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석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정권고 신청제도가 잘못 운영될 경우 사후검열이 될 위험성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과 같은 사후피해구제방법은 다른 절차에 비해서 신속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침해가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시정권고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다 신속히 개입하여 피해의 확산을 막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적 환기를 시키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의 중재위원 위촉권과 관련된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재위원의 위촉권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중재위원회의 운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동안의 운영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정치권력이 중재위원회의 중재심리에 관여하려는 시도도 없었거니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밖에 반론보도 청구권의 임의절차화에 대한 지적이나 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꼭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 법 개정이 논의될 시점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 중재제도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 새 법이 갖고 있는 모호한 측면이나 역기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장시간 열정을 가지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 '알게 할 권리'와 '알리지 않을 권리'

이 승 선

목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 1. 문제제기

아이를 물어가려고 민가를 어슬렁거리던 호랑이 한 마리가 '옛다 곳감'이라는 노파의 한 마디를 듣고 혼비백산, 삼십육계를 놓는다. 호랑이의 얼룩무늬 문신에 금수의 왕 사자조차 무릎을 꿇는다는 상징과 외모자본의 절대 우위 시대에 밀림의 지존 호랑이의 처세 치고는 웅졸하고 용렬한 줄행랑이다. 그러나 어찌겠는가, 우는 아이를 물어가려고 호랑이가 왔다는 '놀라운' 사실을 듣고도 '놀라지' 않던 아이가 곳감 이야기에 '뚝'하고 울음을 멈췄는데, 호랑이와 곳감 같은 이야기는 또 있다.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의 권위자인 메릴 교수는 최근에 펴낸 그의 네 번째 개정판 '글로벌 저널리즘'(Global Journalism)이란 책에서 한국의 곳감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의 언론계에선 'chonji'(촌지)를 통해 언론과 권력 간의 적대적 긴장감이 해소되고 더욱이 언론인들이 촌지를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국 언론계의 부끄러운 촌지 관행은 국제 저널리즘의 교과서로 사용되는 저명 학자의 책을 통해 고유명사 *chonji*로 버젓이 등록되고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호랑이와 권력의 매서운 '발톱'보다 곳감과 촌지의 감미로운 '달콤함'이 더 위력을 발휘하는 세상이다.

촌지의 효능은 '관심'을 통제하는데 있다. 언론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아니면 관심을 줄여달라는 메시지의 간곡한 전달이다. 혹은 세상 대중이 자신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하도록, 아니면 더 이상의 관심을 갖지 않도록 차

단하는 역할 수행을 위하여 언론인을 매수하는 공작금이기도 하다.

거먹구름 드리우듯 무관심이 팽만한 시대에 자유자재로 관심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매력적인 권력인가.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학대당하는 아동들이 골목마다 넘쳐나고 자녀에게 홀대받고 외면당하는 노인들이 병든 노구를 쓸쓸히 혼자 수습할 때조차 이에 무관심한 우리 사회의 감응장치는 무디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 급기야 지난 4월에는 가족·학교·이웃들의 무관심 속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던 부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가식 서가숙 하듯 자녀들 집을 예제 전전공공하던 노인들이 '더 이상

집이 되기 싫다'며 억지로 세상을 등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아동·노인복지 시스템은 역부족이다. 사회와 정책당국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대비·보완해 왔더라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따위의 불행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점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 내 집 '바깥'의 주위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권면에 권면을 거듭해야 할 바람직한 사회적 덕목이다.

현대 사회의 교육기구들 중 언론매체가말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갈파한 미국의 허친스 위원회는 언론이 교육자적인 자세로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상을 설명하고 명확하게 해야 할 책임을 진다고 진단한 바 있다(언론자유위원회, 2001: 47-58). 따라서 언론이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로 추앙받는 '관심'을 사회일반에 대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로 하여금 특정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교육하고

견인하는 자세는 심히 치하하고 표창할 만한 일이다. 초등학생이 자살에 이르도록 방조한 우리 사회의 '차가운 무관심'에 대해 경향 각지 신문·방송은 이를 힐난하는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그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

언론이 사회 내부의  
구석구석까지 관심을 보이고,  
권력에 대해 부단한 감시를  
포기하지 않는 근거는  
국민의 알 권리 구현에 있어

## 2. 언론의 '알게 할 권리'

언론이 우리 사회 내부의 구석구석에 대해 간단없는 관심을 보이고, 권력의 작동 시스템에 대한 부단한 감시·견제를 포기하지 않는 근거는 국민의 알권리 구현에 있다. 표현하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

본권이다. 행복할 권리를 가진 존엄한 존재인 국민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생각한 바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표현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법원도 인간 인격의 직접적인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고귀한 인간의 권리에 속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사상의 자유경쟁 시장을 형성하고 이곳에서 토론을 통해 형성되고 전파되는 여론은 민주정치가 존재하기 위해 필수적인 생명선이라고 간파하였다. 언론에 표현의 자유가 숨 쉴 수 있는 여백을 부여해야 할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았다.<sup>1)</sup>

그런데 자유로운 표현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알아야 표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표현의 자유가 정보의 자유로운 수용·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인 '알권리'는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0.10.12.선고 89가합18505판결.

판시하였다. 나아가 알 권리가 민주국가의 국정 공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구권적 기본권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sup>2)</sup>

인격권 보호와 언론자유 보장 간의 이익형량 기준을 제시한 기념비적 결정으로 볼 수 있는 97헌마265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 즉 알 권리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자기 실현은 물론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자기통치 실현의 공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의 확보와 언론매체에 의한 정보의 전달은 민주제의 필수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라고 규정하였다. '국민이 듣고, 읽고, 보는 이른바 알 권리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는 점도 설시하였다.<sup>3)</sup>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듣고·보고·읽고·말을' 권리인 알 권리는 언론이 정보원에게 위·적법

한 방식을 통해 접근할 때, 정보원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적절·부적절한 내용으로 공포할 때, 그리고 보도로 인해 국가적·사회적·개인적 법익 침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벗으려고 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언제든 뿔아 휘두를 수 있는 훌륭한 무기다. 국민들로 하여금 '알게 할 권리', 혹은 국민들에게 알릴 권리, 그것은 현대 사회의 언론매체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권리행사이면서 다른 한편 두텁게 행사할 수 있는 언론의 특권이기도 하다.

하지만 견문발검(見蚊拔劍)이라, 하찮은 모기 한 마리 베려고 장검을 뽑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국민의 '알 권리'란 이름을 걸고 언론의 체면을 보호하려든 정부와 일전을 불사하고 보도해버린 '펜타곤 페이퍼'(Pentagon Papers) 사건쯤 돼야 한다거나, 비밀 폭로에 따른 살해의 위협과 취재원 비닉으로 인한 투옥을 감히 각오하고 '딥 쓰로우'(Deep Throat)를 접촉한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의 번스타인과 우드워드라는 두 젊은 기자의 배

포 정도는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당시 워싱턴 포스트 브래들리 편집국장과 캐서린 발행인의 결단과 기자들에 대한 지원을 본받자는 외침도 나온다. 물론 근현대 한국 언론사를 일별해보더라도 부정·부당한 권력에 맞서 추상같은 기개와 담력을 선보인 언론인이 한둘 아니다.

### 3. 공인의 '알리지 않을 권리'

그러나 펜타곤 페이퍼·워터게이트처럼 언론과 권력핵심 간의, 혹은 알권리와 국가기밀보호 명분 간의 첨예한 대립만이 위협을 무릅쓰고 언론이 부담해야 할 몫의 전부는 아니다. 더러는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명예나 프라이버시 같은 개인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언론의 알 권리가 제한을 받는다. 이른바 국민들에게 '알게 할 권리'의 방식, 국민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할' 내용은 국가안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

2) 헌법재판소 1989.9.4.선고 88헌마22결정.

3) 헌법재판소 1999.6.24.선고 97헌마265결정.

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훼손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의 사사로운 내용을 개인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알리지 않을 권리, 즉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는 언론의 알 권리, 혹은 언론의 ‘알게 할 권리’를 제약하고 위축시키는,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라에 따라서는 헌법적 기본권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프라이버시를 헌법 제17조 등으로 포괄적이면서도 확실하게 규정해 두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프라이버시 권리가 무시되거나 소홀하게 취급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일찍이 100여년 전, 프라이버시 권리의 중요성과 법적 이익을 주창하고 나선 이들도 미국인 변호사 워렌과 브랜다이즈였고 현재 미국의 각급 법원 역시 이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언론법·언론윤리·저널리즘 교과서에도 언론이 취재·보도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의 해야 한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Stovall, 2005: 458-459). 대륙

법계 국가에서도 프라이버시를 일반적 인격권의 한 영역으로 보장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는 현대의 언론매체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복잡하면서도 잠재적으로 가장 광범한 법적 관심사이다. 또한 프라이버시는 아직 법적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않은 비교적 새로운 영역이기도 하다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는 언론의 알 권리, 혹은 언론의 ‘알게 할 권리’를 위협해**

(Zelezny, 2004: 170-171). 물론 국내외의 소송실무와 이론적 논의를 통해 프라이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고전적인 의미의 프라이버시는 ‘제발 가만히 혼자 있을’ 소극적·수동적 권리였으나 현대에 이르러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즉, 프라이버시는 알 필요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자 자기 관련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으로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가. 미국에서는 저명한 법학자인 사람인 프로서(W.L. Prosser)가 1960년에 발표한 분류법이 광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유형을 첫째, 개인의 은거나 독거 또는 사적 내용에 대한 침입, 둘째, 난처한 사적 사실을 공표하는 것, 셋째, 공중이 특정인에 대하여 오해하도록 만드는 공표, 넷째, 개인의 성명·초상을 침해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등 네 가지로 나누었다. 이중 네 번째 유형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성명권·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별도 논의되고 있고(한위수, 1999) 세 번째 유형은 명예훼손과 유사하게 취급되거나 명예훼손과 분리하지 않고 다루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최소한 10개주 이상에서(Overbeck, 2004: 183-185),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언론소송에서 세 번째 유형의 프라이버시침해와 명예훼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

사례가 많지 않으나 한국법원은

프라이버시란 헌법 제17조에 표현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만이 간직한 비밀을 공개당하거나 사생활에 간섭을 받아 정신적 타격을 받지 아니할 권리'라고 규정하였다.<sup>4)</sup>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이라는 것이다.<sup>5)</sup>

'알리지 않을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동시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현실에서 언론은 '알게 할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억제할 수 없는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해소시켜 주는 한편, 나아가 무관심한 국민들의 잠자는 이성을 깨우쳐 공적 관심을 갖도록 견인하는, 거룩한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언론은 불가피하게 국민들의 알리지 않을 권리, 즉,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된다. 그것도 장삼이사나 필부필부들이 아닌 '유명한 사람', 이른바 공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인들의 공적 활

동영역에 대한 언론보도가 진실이 아니더라도 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언론의 법적 책임을 묻기란 쉽지 않다. 진실하다면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문제는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공적인 영역으로 볼 수 없거나 공적인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공인과 언론간의 다툼이 있을 때 발생한다.

#### 4. 공인의 사생활과 '정당한 관심사' 간의 조화

새해 벽두에 터진 유명 광고회사의 '연예인 X파일' 파문을 비롯, 지나간 석 달 동안 우리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논쟁을 유난히 많이 겪었다. 7월 시행을 앞둔 위치정보보호법의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안, 유비쿼터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이 가져 올 부작용으로서 사생활 침해, 사회 유명인사나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한 소문을 실어 배포해 온 일명 '짜라시'에 대한 사법처리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

월초,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가 담긴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토록 한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면서 학생증 도입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였다. 또 4월초에 인권위는 공공도서관들이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해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면 해당 도서관장들에게 개인정보 인권 보호조치 마련을 권고하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인권위는 초등학교들의 일기장 검사가 아동의 양심과 내밀한 사생활을 침해한다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에 언론은 글쓰기와 학생지도라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담임의 일기장 검사가 불가피하다는 쪽과 글쓰기·학생지도는 논술교육이나 기타 활동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차제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일기장 검사식 교육방법이 합리적이었다를 반성해보자는 진영으로 나뉘어 열띤 공방을 벌였다. 그 와중에 부산 초등학교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적지 않은 언론은 그 학생의 '일기장'에

4) 서울지법 1997.2.26.선고 96가합31227판결.

5) 대법원 1998.9.4.선고 96다11327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프라이버시권이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과 관련 있음을 판시하였다.

적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공공연하게 적시하였다. 일부 언론은 또박 또박 적은 일기장을 촬영해서 그 사진까지 지면에 실었다. 자살한 초등학생의 일기장을 속속 공개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언론의 ‘알게 할 권리’의 영역이었는가, 아니면 일부의 지적처럼 센세이셔널한 선정적 보도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가.

그러나 무엇보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혹은 관심을 끌어보려고 하였던, 나아가 어쩌면 언론이 보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직한 사안은 한 국회의원의 호텔방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숨겨놓은 딸 사건, 새 병역법 시행을 앞두고 국적을 포기한 공직자 명단 공개축구 사건 등이라 할 것이다.

공인·공적 존재라 할 수 있는 이들의 호텔·딸·국적포기 내용을 다루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대상인지, 그리하여 언론이 국민들로 하여금 ‘알게 할 권리’의 영역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비록 그들이 공인·공직자이긴 하지만 위 내용들은 내밀한 자신의 사사로서 알리고 싶지 않은, 나아가 법적으로 ‘알리지 않을 권리’의 영역에 속하는 프라이버시인지에

대한 논쟁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문제를 보는 다양한 관점과 견해들이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을 통해 교환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사고 다양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공인·공직자의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언론보도가 법정에서 쟁점될 때, 법원은 그것이

**언론은 보도하고자 하는 사안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대상인지에 대해  
타율적 법리에 앞서  
고도의 자율적 판단을 내려야**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였는지를 기준으로 책임유무를 가린다. 이를테면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성적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를 구성할 때에는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범위에 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타율적 판단법리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이 보도하고자 하는 사안이 공인의 사생활과 관련이 있을 때, 혹은 사

생활 침해의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과연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도의 자율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국민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관음증을 해갈시켜주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관심사’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언론의 ‘알게 할 권리’의 영역이 아닌 공인의 ‘알리지 않을 권리’에 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언론자유위원회 저, 김택환 역 (2001).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 중앙 M&B.  
한위수 (1999).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언론중재》, 제19권 제2호, 통권71호, 47-61쪽.  
Beer, A.S. & J.C. Merrill (2005). *Global Journalism: Topical Issues and Media Systems*, New York: Pearson Education, Inc.  
Overbeck, W. (2004). *Major Principles of Media Law*, Belmont, CA: Wadsworth/ThomsonLearning.  
Stovall, J.G. (2005). *Journalism*, New York: Pearson Education, Inc.  
Zeletzny, J.D. (2004). *Communications Law*,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 상생(相生)을 낳는 언론중재위원회

임 경 속

경남중재부 중재위원, 대한YWCA연합회 실행위원

옛날에는 싸움을 하여도 구경할 만했다. 침을 튀기며 말다툼을 하다가 먹살을 잡고 씨름하듯 엇치락뒤치락하노라면 어느 샌가 구경꾼들이 몰려오고 떼어 말리는 사람이 있어 싸움판의 열이 좀 식어지면 겹연쩍은 듯 툭툭 털고 일어나 막걸리 한잔으로 화해를 한다. 싸움이 오히려 정을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은 싸웠다 하면 칼부림이고 총질이다.

‘상생정치’란 말에 온 국민이 귀가 솔깃하여 가슴 설레었던 때가 있었다. 기대에 어긋나긴 했지만 그 덕에 우리사회엔 상생이란 말이 아름다운 날개를 달고 ‘어디 정착할 곳이 없나’ 이곳 저곳으로 찾아 다니고 있다. ‘노사 간의 상생’, ‘언론과 언론 간의 상생’, ‘사제 간의 상생’ 등등.

언론중재위원회는 벌써 오래전부터 묵묵히 이 몫을 담당하고 있어왔다. 상생을 만드는 언론중재위원회! 아직 만족스럽진 않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하고 있다. 연초에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생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언론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언론피해구제와 관련된 법률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피해구제규정을 기반으로 일해 왔으나 이제 단일법에 의해 보다 확충된 기반에서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적극적으로 개입,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분쟁을 해결하거나 훨씬 다양해진 중재방법으로 그동안 못다 한 ‘상생’을 만드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명실 공히 ‘상생을 낳는 산실’이 되기를 바라고 믿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피해자의 구제는 물론 소중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여 발전시키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언론피해자나 언론 쌍방이 함께 공생하며 함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지혜롭게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죽이는 역할이 아니라 살리는 역할이다. 쌍방이 다함께 적극적으로 공생하게 하는 역할이다. 실제로 당사자 법정으로 달려갈듯 격한 감정으로 중재부에 찾아 온 이들이 중재위원들의 합리적이고 객관

적이며 수준 높은 설득에 합의를 이루고 기분 좋게 돌아가는 일이 허다하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법정에 가기 전에 언론분쟁의 사전중재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완충 역할을 하고 있어 피해자뿐 아니라 언론에도 유용하다. 더 나아가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그 산하에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를 설치, 언론기관이나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분쟁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신뢰할 만한 '상생의 산실'이다.

혹자는 언론중재제도가 언론을 위축시킨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오해이다. 또 일부 시민 단체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청구외에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보다 밝고 명랑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분쟁의 사전예방과 치유야말로 가장 중요한 필수과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언론중재위원회는 예리한 판단력과 지혜로 공명정대한 심리를 이끌어 가는 훌륭한 법조인도 있고 언론계나 학계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경륜을 갖춘 분들도 있으며 언론피해자 입장에서 서서 인간의 소중한 인권과 행복을 추구하려 애쓰는 시민사회인사도 있기 때문에 심리 결과는 항상 발전적이다.

실사 중재부가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냈을 경우가 혹 있을지라도 짧지 않은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이든 피신청인이든 양측 모두가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되고 삶에 유익한 영향을 얻게 된다. 언론중재위원들의 탁월한 능력과 열성은 상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는 것이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인다는 말이 있지만 현대는 무섭도록 무관심의 시대다. 성서에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살벌하기 짝이 없는 이 세대에 어디에서 진정한 상생을 찾을 수 있겠는가? 언론중재위원회야말로 그 쾌적한 산실이 되어야 한다.

얼마만큼 뜨거운 가슴으로 언론을 아끼고 언론피해자를 사랑하며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와 열성으로 중재에 임하느냐의 척도에 따라 상생의 폭도 달라질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 역시 올바른 의식과 사명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해 일하는 훌륭한 인재들이어서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상생의 산실'이 아니겠는가?

듣는 이가 없고 보는 이가 없으면 언론이 무슨 소용이며 언론이 없으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누가 귀가되고 눈이 되어줄 것이며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삶을 살아 갈 수 있겠는가? 서로가 서로의 존재가치를 알고 귀하게 여긴다면 상생은 저절로 되어질 것이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상생을 낳는 훌륭한 산실이 될 것이다. □

**해를 거듭할수록  
소송사건 수는 감소하는 반면  
언론사의 승소율은 높아져**

- 미국 MLRC 2005년도 판결연구보고서 -

MLRC 2005년도 판결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에 언론사의 편집내용(editorial content)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12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5건으로 평균 손해배상액은 3백4십만 불이었으며, 언론사가 지불한 손해배상액은 6십2만5천5백 불이었다.

이 보고서는 1980년부터 2004년까지의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총 527건을 연구, 분석했다. 527건 가운데 506건이 종결되었고, 이 중 언론사가 승소한 사건은 199건으로 전체 39.3%였다.

MLRC는 1980년 이래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사건들의 통계를 유지해 왔다. 이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볼 때 소송건수는 감소하고 언론사가 승소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론사가 패소한 경우 지불한 평균 손해배상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측은 1심에서 패소한 경우 대부분 항소를 제기했으며, 전체 소송건수의 1/3인 35.9%에서 1심 손해배상액의 판결이 유지되었다. 연구보고서에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송 사건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매년 평균 26.3건의 소송이 제기 되었는데, 1990년대에는 17.9건, 2000년대에 와서는 매년 평균

12.5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2004년도의 12건의 소송사건은 지난 25년간의 걸쳐 가장 낮은 건수이다.

둘째, 언론사가 승소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져왔다. 2004년의 경우 언론사 승소율이 41.7%로 가장 높았다. 1심에서 언론사가 승소한 사건은 1980년대 이래 매 10년마다 증가했다. 2000~2004년간의 언론사 승소율은 54.7%였다. 이에 반해 1980년대에는 35.7%, 1990년대에서 39.1%였다.

셋째, 공무원이나 개인보다는 공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언론사가 승소한 경우가 더 많았다. 공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언론사가 승소한 경우는 40.8%인데 비해, 개인의 경우는 38.5%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37.8%의 승소율을 나타냈다. 언론사가 승소한 경우는 지난 25년간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넷째, 원고가 1심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판결후의 재정신청이나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자주 있었다. 1980년 이후 원고가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은 총 506건 중 307건으로 승소율은 60.7%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25.2%인 72건의 경우 재정신청에서 원고측이 패소했다. 또한 31건인 10.5%의 경우 재판부는 1심 판결 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측에 유리한 배심판결을 뒤집고 언론사측에 승소판결을 했다. 1심판결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의 47.8%가 항소심에서 삭감되거나, 폐기되었다.

다섯째, 1심판결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액이 최종판결에서 확정된 경우는 전체 사건의 3분의 1이었다. 이 가운데 99건인 32%가 최종심에서 이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1심판결 후 재정신청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된 경우가 31건이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된 사건은 64건이 있으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이 35건이었다.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 조정된 경우는 132건이었다.

일곱째, 손해배상액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는 1심 판결에서의 평균 손해배상액이 3백40만 불인데 반해, 1990년대에는 3백20만 불, 1980년대에는 1백5십만 불이었다.

여덟째, 전체 손해배상액 중 보상적 손해배상금은 증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의 경우 1심 판결의 손해배상금의 97.7%가 보상적 손해배상금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전체 보상금액 중 7.5%가 징벌적 손해배상금이었으며 1980년대에는 61.7%가 1990년대에는 67%가 징벌적 손해배상금이었다.

아홉째, 각 주별 언론소송사건을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펜실베이니아주 32건, 텍사스주 27건, 플로리다주 21건이었다. 그러나 인구당 신청건수를 비교해보면 델라웨어주가 1백만 명당 6.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열째, 각 주의 1심 법원에서 언론사가 승소한 경우는 38.9%였다. 코네티컷주와 오리건주가 1심판결에서 언론사가 승소한 비율이 83.3%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아칸소주, 하와이주, 캔사스주의 경우 언론사가 승소한 사건이 전혀 없었다. 평균 손해배상액은 오하이오주가 9백1십만 불로 가장 높았다.

열한째, 연방법원 1심 재판 사건을 보면, 제1순회법원이 16건, 제5순회법원이 15건이었다. 1980년 이래 연방법원에서 언론사가 승소한 비율은 40.7%였다. 제3순회법원의 경우 언론사 승소율이 70%로 가장 높았고, 제 4순회법원의 경우 30%로 가장 낮았다.

열두째, 매체별 신청건수를 보면 인쇄매체와 방송매체의 신청건수는 동일했다. 1980년대에는 인

쇄매체 특히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건수가 206건이고 방송매체의 경우는 57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인쇄매체의 경우 32건, 방송매체의 경우 31건으로 그 격차가 현저히 줄었다. 그러나 방송매체의 경우 언론사가 승소한 경우가 더 많았다. 1980년대에 방송매체는 47%가 승소한 반면 인쇄매체의 승소율은 36.1%에 불과했다.

열셋째, 최종심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액은 변동이 심했다. 2000년대에는 최종 확인된 평균손해배상액은 7십9만5천 불이었다. 1990년대의 1백2십만 불에 비해 33.1%가 감소했다. 1980년대의 평균 손해배상액은 2십7만7천 불이었다.

(www.medialaw.org MLRC 2005 Bulletin No.1) □

### 부당하게 제소된 교수의 실명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 인정

-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

여성으로부터 「진료중에 성희롱을 당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埼玉의과대학 교수가 부당하게 제소당했다고 여성과 제소사실을 기자회견한 변호사, 이를 실명 보도한 毎日신문사 등을 상대로 총 2,710만 엔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 민사제42부는 지난 3월 24일 부당한 제소를 인정하여 여성에게 330만 엔, 명예훼손으로 변호사에게 55만 엔, 毎日신문사에 11만 엔의 배상을 각각 명령했다. 원고, 피고 3자 모두가 항소했다.

이 여성은 지난 2000년 교수를 제소했으나 2002년 패소가 확정되었으며 毎日신문사는 2000년 3월 7일자 조간에 제소사실을 교수의 실명과 함께 보도했다.

재판부는 每日신문 기사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 「보도에는 일정한 사회적 의의가 있는데, 교수는 저명인이 아니어서 실명사용의 필요성에는 의문이 있다. 성희롱을 부당하게 강조하는 체재도 이용하는 등 위법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문협회보 2005년 4월 12일자) □

### 중국정부, 「미디어종사자 관리규정」 공포, 기사에 집필기자의 실명기재 의무화

중국정부와 공산당은 최근 국내 보도기관에 대해 기사 집필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미디어종사자 관리규정」을 공포했다고 일본의 共同통신이 전했다. 전문가들은 「조사보도, 지방정부에 대한 비판기사가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중국의 미디어들은 조사보도를 할 때 기자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규정은 기자나 편집자에게 「당 선전」의 역할을 준수하고 당과 국가의 기밀 엄수를 요구하고 있어 지식인이나 미디어에 대한 규제강화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규정은 또한 취재시 금품을 받거나 신문 구독을 강요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인정, 위반시에는 기자증을 몰수하고 5년간 미디어 관련 직장에서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금년 초 취재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사이버기자의 횡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15만여 명의 신문, 텔레비전 기자들의 기자증을 전면 갱신한 바 있다.

(신문협회보 2005년 4월 12일자) □

### AFP통신, 구글(google) 제소 자사 뉴스 무단게재 중지 요구

프랑스 AFP통신이 지난 3월 자사의 기사를 무료뉴스사이트 「구글·뉴스」에 무단게재 했다는 이유로 인터넷 검색엔진 최대업체인 미국의 구글(google)을 워싱턴의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 제소사건은 세계의 미디어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으며 AP통신은 지난 3월 22일 성명을 발표, 「뉴스도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고 AFP에 찬동을 표명했다.

AFP통신은 구글에 1,750만달러(약 18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 지불과 자사기사의 게재금지를 요구했다.

재판에서 주목되는 것은 「구글·뉴스」에서의 기사제목의 게재가 저작물에 허용되는 공정이용(公正利用)의 범위내로 인정되느냐의 여부이다.

1985년에는 인터넷과 관련된 소송은 아니었지만, 설령 작은 인용문이라도 작품전체의 핵심을 표현하고 있을 경우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AFP통신은 「게재된 제목과 한 문장만으로도 독자의 주의를 끌게 되며 나머지 문장 전체를 묘사하게 된다」고 저작권 침해조건의 충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 측이 피소된 후 AFP통신기사의 게재를 중단하는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재판이 끝날 가능성도 있다.

더 복잡한 것은, AFP가 국제적인 통신이고 통신기사를 받는 쪽은 지명도를 올리기 위해 높은 인기가 있는 AFP뉴스를 게재하기를 원하는 미디어가 많다는 점이다.

구글은 세계속의 미디어 4,500사 이상의 사이트로부터 기사나 사진을 자동적으로 수집, 무료뉴스 사이트에 제목이나 축소사진을 일괄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다. 독자는 제목을 클릭하면 각 미디어의 뉴스페이지에 접속하도록 되어있다.

미국의 대형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야후(yahoo)는 AFP를 포함한 일부미디어에 뉴스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구글은 사용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신문협회보 2005년 3월 29일자) □

### 웹사이트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사법관할권 문제로 보도기관들 긴장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지는 지난 3월 8일 동지(同紙)의 온라인 기사 등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캐나다 온타리오주 거주 전 유엔직원이 제소한 온타리오 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 캐나다에서의 사법관할권을 인정한 1심판결을 뒤집어 주도록 요구했다.

이 소송의 결말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프리카 중서부의 가나 출생인 이 직원은 1997

년 워싱턴포스트의 기사로 아프리카 근무시의 성적(性的), 금전적 스캔들이 보도되어 명예훼손의 피해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며 900만 캐나다 달러(약 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1심은 원고가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든 동 신문은 이 직원의 인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어야만 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직원이 주장하는 근거는 해당 기사가 계속해서 캐나다에서 온라인으로 읽을 수 있다는 점이며, 웹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는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나라에서 출판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원고의 이러한 주장이 인정된다면 웹사이트로 세계의 뉴스를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보도기관은 무한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워싱턴포스트 측은 이 직원이 온타리오주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당시는 케냐에 살고 있었으며 2000년까지는 온타리오주에 없었기 때문에 캐나다에는 이 문제에 대한 사법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CNN, 뉴욕타임즈 등 미국 내외의 50여 미디어들도 이것이 인정되면 일부국가로부터의 웹사이트의 액세스를 차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보고 워싱턴포스트지를 지지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신문협회보 2005년 3월 29일자) □

### 아일랜드 법무부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될 위험에 처해

아일랜드 법무부장관 Michael McDowell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될 위험에 처해있다. 이는 그가

The Daily Ireland지는 진보적이 IRA를 지지하기 위해 역사를 다시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The Daily Ireland지 발행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McDowell은 “The Daily Ireland는 나치즘 정권의 일간지인 Volkischer Beobachter과 유사하며, IRA의 후원을 받고 있다.”면서 신페인당의 지도자인 Martine McGuinness와 Gerry Adams가 IRA 평의회 위원이라고 주장해 더욱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Belfast 지역 The Daily Ireland지 대변인은 “법무장관이 파시즘적이고 불법적인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은 진행될 것이다. 그의 주장은 쓰레기이고 명예훼손적이며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다.”면서 “우리는 발행초부터 폭력을 반대하고, 평화를 선호하며 어떤 특정인을 위한 나팔수가 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를 발전시키는데 또 다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우리를 법무부장관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Press Gazette 2005년 2월 25일자) □

Meyer 위원장은 언론사에 벌금을 물리는 제도는 “대단히 파괴적인 발상”이라면서 “벌금제도를 도입하는데 찬성한다면 물론 그 금액은 상당한 액이 될 것이다 이의 도입은 이에 반대하는 측과 격렬한 법률논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불만신청인이고, 오직 변호사들만이 큰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벌금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편집인들은 정정보도나 위원회의 결정을 지면에 효율적이고 현저하게 눈에 띄게 보도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Meyer 위원장은 불만처리위원회 위원들이 기사제목 특히 전체 기사와 상당히 모순되는 기사 제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서 “위원회는 기사제목은 기사의 본문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기사 말미에 제목과 일치되는 조금의 정보가 있다고 해서, 기사 제목에 대한 불만신청을 기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Press Gazette 2005년 3월 29일자) □

### 보도윤리강령 위반 언론사에 벌금부과하는 제도 도입 않기로, PCC 위원장 밝혀

영국불만처리위원회는 보도윤리강령을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편집인협회가 주최한 강연에서 Christopher

### 이라크 주둔 미군에 의한 로이터기자 폭행사건 재조사 안 해

미 국방부는 이라크에서 있었던 로이터 현지 직원들에 대한 미군의 폭행사건을 재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로이터측은 폭행당한 3명의 기자에 대한 직접

심문없이 진행된 조사는 불충분하다며 재조사를 요구했었다.

3명의 로이터 이라크직원들은 NBC 이라크 현지 기자와 함께 팔루자 인근에 있었던 미군 헬리콥터 추락 현장을 취재하던 중 미군에 의해 체포되어 구금된 바 있었다. 구금 시 이라크인들은 미군으로부터 구타와 성고문 및 성적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장관 특별보좌관인 Lawrence Dirra는 초기 미군의 조사 결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군은 이 사건을 충분히 조사했고, 이를 재조사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로이터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 세계면 편집담당자인 David Schlesinger는 “미 국방부가 확실히 문제가 있는 사건에 대해 재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단히 실망했다.”며 재조사를 거부한 미 국방부를 비난했다.

(Press Gazette 2005년 3월 11일자) □

**가해자가 합리적인 손해배상금  
지불을 약속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삭감할 수 있어**

영국 항소법원은 영화배우인 Nail이 Newsgroup News papers와 발행인인 Haper Collings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Nail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1996년의 명예훼손법에 따라 가해자가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

요한 판결로, 담당 판사인 Suid, May, Gage는 “가해자가 제시한 손해배상금이 합리적인 액수인 경우 피해자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을 삭감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Nail은 2002년 자신의 성적행동을 잘못 보도한 The News of the World와 발행인을 상대로 4만5천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언론사측은 보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했음은 물론 3만7천5백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Nail은 이를 거부했고, 법원이 3만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Nail측 변호사는 3만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은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며, 1996년 법에는 피고인이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경우,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요구한 손해배상금을 삭감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이 설사 이 규정을 적용 손해배당금을 삭감한다면, 무책임한 언론을 양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결문에서 May 판사는 “명예훼손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어느 정도 삭감해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발행인들이 냉정한 판단하에 기꺼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가에 대해 판단했다. 왜냐하면, 과도한 손해배상금은 언론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면서 “피고측은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고 사과문마저 게재된다면 이는 실질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측의 사회적 평판 또한 최대한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Press Gazette 2005년 1월 7일자) □

언론중재신청사례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위가 삼익-영창약기의 합병을  
불허한 것에 대해 KDI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72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강 철 규)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5. 3. 1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매일경제 : 『공정위정책 정면비판』 제하의 기사 (2005년  
3월 4일자 4면)

내 용 :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이 한국개발연구원  
(KDI)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  
용행위규제와 기업결합심사 등과 같은 ‘경쟁정책’  
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공정위의 경쟁정책이 국내시장 조건 변화에 따른

해외시장 움직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다.

3일 KDI는 ‘해외 부문과의 잠재적 경쟁과 시장구  
조에 대한 실증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가  
경쟁정책을 위해 기업체의 시장점유율을 파악할 때  
는 잠재적 해외경쟁요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중략)

지난해 공정위가 합병을 불허한 삼익약기와 영창  
약기의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KDI는 공정위가  
잠재적 해외경쟁압력의 중요성을 고려했지만 국내  
시장조건의 변화에 따른 해외부문의 반응과 같은  
동태적 측면도 함께 살펴 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2005년 3월 4일자 4면 『공정  
위정책 정면비판』 제하의 기사에서 KDI가 삼익-영  
창약기 합병 불허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  
습니다.

KDI는 ‘해외부문과의 잠재적 경쟁과 시장구조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에서 "삼익-영창악기 합병 불허는 잘못"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습니다. KDI는 공정위가 "국내기업 간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는데 있어 잠재적인 해외경쟁압력을 고려하여 그 정도가 매우 낮다고 판단함으로써 삼익-영창악기 기업결합을 기업결합 규정 위반행위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잠재적 해외경쟁 압력의 중요성을 고려한 점은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나, 국내시장조건의 변화에 따른 해외부문의 반응과 같은 동태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4일자 4면 『KDI "삼익-영창악기 합병불허는 잘못"』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을 불허한 것에 대해 KDI 보고서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KDI 보고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의 합병을 불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바가 없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매일경제 4면 우측 하단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2005년 4월 1일까지 게재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매일경제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5년 3월 31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 현행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상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정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80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노동부 (장관 김 대 환)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5. 3. 22.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한겨레 : 『대화커녕 법정싸움 번져, 노동부 책임 회피 비난도』 제하의 기사 (2005년 3월 3일자 8면)

내 용 :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서로 책임을 넘기는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현대차 주요공장들의 사내하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노동부가 불법판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현대차의 시정계획에 타당성이 없어 현대차의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법적인 시비가 여기까지만 가려졌다는 데 문제가 있다. (중략)

노동부는 관련 법령의 미비에 원인을 돌리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검찰에 사업주를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법원에서는 사업주에 대해 몇천만원짜리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뿐 가장 중요한 고용관계 시정은 사업주에게 우호적인 판결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은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노동자와 고용계약

을 맺은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한다. 또 2년 이상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 의무가 있다. 이런 고용의제 조항이 법원에 가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한겨레 3월 3일자 8면에 게재된 『대화커녕 법정싸움 번져, 노동부 책임회피 비판도』 제하의 기사 중 “현행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은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한다. 또 2년 이상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바로잡습니다.

동 기사에 대해 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현행근로기준법과 파견법상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파견법 제6조 제3항에서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사업주의 근로자로 본다는 고용의제규정이 있으나, 동 조항이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판례추세는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적법파견은 물론, 불법파견에도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불법파견 뿐만 아니라, 적법파견의 경우라도 이를 강제할 제재규정이 없어 해당사업주를 행정지도하는데 근원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한계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는 파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3월 3일자 8면의 “현행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은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한다.”는 내용의 보도에서,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한다는 법적인 규정이 없기에 바로잡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2년 이상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직접고용의무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8면 이내에 2005. 4. 4. 까지 게재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 4일자 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들이 치매에 걸린 부모봉양을 소홀히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86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정 ○ ○ 외 4인

피신청인 : SBS-TV  
 중재부 : 서울제4중재부  
 접수일 : 2005. 3. 25.  
 처리결과 : 합의

### 보도내용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2005년 3월 6일 20:20)  
 내용 : ▷ 앵커 : 중증 치매를 앓고있고, 생계까지 곤란한데도 국가로부터는 아무런 지원도 못받는 노인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법적 요건이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아직도 복지국가는 먼 얘기입니다. 김○○ 기자의 '현장 속으로'입니다. (중략)

▷ 기자 : 할아버지는 6년 전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 뒤 할머니와 함께 친척집을 전전하다 지난 2003년 이곳에 월룸 셋방을 얻었으며 둘째딸이 매달 보내주는 3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 할아버지 : 복지관에 10만원 내고... 가스비, 전화세, 전기세 이것이 7,8만원 돈 10만원이나 나온단 말이야. 그거 주고 나면 내 약 값하고 하면 쓸 것이 없지 뭐. 쓸 것이. 돈이

▷ 기자 : 답답한 마음에 가끔씩 아들 집을 찾지만 사업에 실패한 아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이미 오래입니다.

▷ 할아버지 : 며느리하고 셋이 중국 가서 있는데... 연락이 안돼, 나하고.

▷ 기자 : 아들을 단념한 할아버지는 지난해부터 할머니를 무료 요양시설에 보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생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 할아버지 : 내가 앞에 간다면 첫째 나 치우는 것보다도 저 사람 어디다가 관리를 맡겨야 하는데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한심스럽지 뭐... 한

심스럽고 걱정이지.

▷ 기자 : 그러나 현재 할머니를 무료요양시설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가무료요양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들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부양의무자로 규정된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SBS가 3월 6일 일요일 저녁 「8시뉴스」 프로그램 '버림받은 치매 노인들'이라는 제하의 방송에서 중증 치매 부인과 함께 사는 정모 할아버지가 6년전 사업 실패로 본인의 전재산을 날린 아들과는 연락이 끊기고, 월룸 셋방을 얻어 둘째딸이 매달 보내주는 30만원의 생활비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모 할아버지 자녀들은 치매에 걸린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사실은 자식들이 돈을 모아 마련한 전세방에서 매월 보내드리는 생활비로 생활하고 있으며, 큰아들은 옆에서(같은 동) 부모님의 근황과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부양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합의사항

- 제목 : "치매부모봉양에 최선 다해"
- 내용 : 지난 3월 6일 「8시뉴스」 시간에 방송된 '버림받은 치매 노인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정모 할아버지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전세집을 마련해드리고 매월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으며, 큰 아들이 인근에 살면서 부모님의 근황과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부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SBS-TV '아침뉴스' 2005년 4월 8일까지 프로그램에 아나운서 육성으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되, 화면에는 동 보도문의 제목("치매부모봉양에 최선다해")과 내용을 자막으로 표시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아침종합뉴스」 프로그램 (2005년 4월 4일 06:15)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공공용지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특정업체에 사용을 승인해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경기중재13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장 류 영 하)

피신청인 : 기호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5. 3. 28.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기호일보 : 『평택해양청 수익사업 말썽』 제하의 기사 (2005년 3월 7일자 1면)

내 용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임항지구내 공공용지 또는 녹지지역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뒤 특정

업체의 야적장이나 주차장 부지로 승인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지자체가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항만개발 주체인 해양청은 현재 결방살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세관 등 항만지원 행정관서들이 수년전부터 청사마련을 위해 임항지구내 공공용지를 할애해 줄 것을 요청함에도 이를 외면해왔으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치 않고 사안에 따라 일방통행식 업무추진을 감행하는 등 수입에 급급한 편의주의적 행정을 펴 비난을 사고 있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기호일보가 2005년 3월 7일자 신문에 『평택해양청 수익사업 말썽』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항을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 컨테이너 등 수출입 화물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부두내 이를 처리할 야적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부두배후부지를 수출입화물처리지원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허가계획을 공고하여 경쟁을 통해 실수요자를 선정한 것으로, 이는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이를 위해 부지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 또한 현재까지 큰 수요가 없는 항만 관련 기관의 청사부지는 장기적으로 내항에 계획하고 있다.

반론보도신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
- 내 용 : 기호일보가 2005년 3월 7일자 1면 『평택

해양청 수익사업 말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으나 일부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항을 이용하는 자동차, 컨테이너 등 수출입 화물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부두내 이를 처리할 야적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 이어서, 동 부두배후부지를 수출입화물처리지원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허가계획을 공고하여 경쟁을 통해 실수요자를 선정한 바, 이는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이를 위해 부지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 아울러 현재까지 큰 수요가 없는 항만관련기관의 청사부지는 장기적으로 내항에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반론보도신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기호일보 2005년 4월 2일자 1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항내 녹지 무단용도 변경... 특정업체 야적장등 허가)과 같은 활자체로 하고, 내용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기호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 2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부인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90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김 세 호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5. 3. 2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SBS-TV : 「생방송 임성훈의 세븐데이즈」 프로그램 (2005년 3월 6일 23:00)

내 용 : ▷ 임성훈 : 안녕하세요. 지난주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이후 허탈한 분들 참 많으실겁니다. 유례없는 불황속에서도 재산이 억단위로 늘어난 공직자가 많은데 그 중 상당수의 재테크 수단은 다름아닌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겠다면 정부의 약속만 철석 같이 믿고 따랐던 서민들만 지금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중략)

▷ 성우 : 부동산 투기만큼은 잡고야 말겠다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무색해지고 말았다.

▷ 성우 : 그런데 부동산으로 재산이 크게 증가한 고위공직자는 이부총리뿐만 아니었다. 지난 17일 부동산 안정 정부대책을 발표했던 김세호 건교부 차관!

▷ 성우 : 그가 지난해 부동산으로 올린 이득은 무려 11억원! 부동산만 놓고 보면 재산증가 1위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송파구 장지동 택지개발지구! 김차관에게 엄청난 이익을 남겨준 행운의 땅이다!

▷ 성우 : 김차관의 가족은 2001년 11월 부인명의로 송파구 장지동의 농지를 매입했다고 했다. 그런데 취득 3개월만에 이곳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예고 됐다. 이어서 지난해 1월 토지가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이 18억... 3년이 되지않아 11억원의 차액이 생긴 것이다.

그의 해명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는 한 적이 없으며 상속을 받은 토지라는 것!

▷ 성우 : 83년도에 사망한 장인이 친척의 명의로 사둔 땅을 매매형식으로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 경제정의실천연합 박병욱 사무총장 : 사전에 개발정보를 알고 미리 땅을 구입해서 판매해서 매매수익을 얻은 것이아니냐는...

▷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 본부장 : 근거자료가 없이 이렇게 본인의 발언만으로 해명을 끝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공직자의 태도로서 옳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2005년 3월 6일 23:00 「생방송 임성훈의 세븐데이즈」 프로그램에서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이 부인의 명의로 송파구 장지동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위 장지동 농지는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이 부인의 명의로 매입하였던 것이 아니라, 김세호 차관의 장인이 국가로부터 농지분배 받아 계속 보유해 오던 것을 김세호 차관의 부인이 그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사실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SBS-TV 2005년 4월 10일 「생방송 임성훈의

세븐데이즈」 프로그램 말미에 청색바탕에 흰색 자막으로 표시하고, 아나운서에게 낭독하게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생방송 임성훈의 세븐데이즈」 프로그램 (2005년 4월 2일 23: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한국해양연구원이 새만금 방조제 완공시 과거보다 더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93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한국해양연구원 (원장 변 상 경)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5. 3. 29.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서울신문 : (1) 『새만금 물막이 공사 중단해야』 제하의 기사 (2005년 3월 21일자 1면)

내 용 : 정부 계획대로 내년 초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돼 1단계 개발이 마무리될 경우 과거 시화호보다 더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정부용역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미 물막이 공사를 끝낸 4호 방조제의 일부 구간을

트고, 현재 미완공 구간(2.7km)의 물막이 공사도 중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단순 예측이나 주장 차원이 아닌, 국책연구기관의 수년간에 걸친 과학적 연구조사를 토대로 한 분석이어서 담수호 정책 철회 등 새만금 개발사업 내용의 전반적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새만금 해양환경보전 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요약보고서(3차년도)'에 따르면 한국해양연구원(원장 변상경)은 최근 이같은 조사·분석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용역사업발주처인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조사기간은 2004년 2월~2005년 2월까지이며, 해양연구원을 비롯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학계 등 178명의 전문가가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단은 287쪽에 이르는 요약보고서를 통해 “새만금 해역 담수화시 저서생물 폐사에 의한 오염부하량 및 이에 따른 COD(화학적산소요구량) 증가분이 최소 25로 나타났다.”면서 “현재의 새만금 개발계획은 시화호 초기 오염의 주범이었던 생물폐사로 인한 수질오염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해역수질등급상 COD가 4를 넘으면 ‘등급외’로 분류되며, 지난 1997년 시화호가 최악의 수질오염에 시달렸을 때도 18.3 수준에 불과했다.

조사단은 “현 상태에서 담수화가 진행될 경우 COD 증가분이 25(저수량 12억 7000만㎡)에 달하며, 이후 동진수역 개발시는 32(8억3000만㎡), 만경수역까지 개발(3억 5000만㎡)하면 COD 증가분이 9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에 따라 ▲현재 미완공된 2호 방조제의 개방구간(2.7km)을 그대로 유지하고 ▲4호 방조제 일부 구간을 추가 개방(800m)하는 등 해수유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한 ‘대책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후략)

(2) 『새만금 어떻게 변하고 있나』 제하의 기사 (2005년 3월 21일자 26면)

새만금 개발사업이 1991년 착공 이래 최대 고비에 맞닥뜨렸다. 2002년부터 4년째 갯벌 생태계와 해수 움직임, 수질오염 등을 현장에서 관찰해 온 한국해양연구원 등 새만금 조사단이 사실상 ‘새만금 담수호 정책 철회’를 주문하며 강력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제2의 시화호 우려’ 주장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이 첨단 장비를 동원한 여러 과학적 조사를 통해 입증되었다는 점은 정부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정부가 발주한 대형 용역사업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라는 점에도 남다른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오는 6월까지 정부가 내놓기로 한 새만금 개발종합계획 수립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새만금 물막이공사 중단해야』 보도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21일자 1면에 『새만금 물막이공사 중단해야』 제하의 기사에서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될 경우 과거 시화호 사업보다 더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된다”,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미 물막이 공사를 끝낸 방조제 일부 구간을 트고 미완성 공사 구간도 중단해야 한다”, “현 상태에서 담수화가 진행될 경우 COD 증가분이 25ppm에서 90ppm까지 증가한다”, “새만금 조사단이 방조제 완공단계부터 문제를 삼았으며 새만금 담수호 정책철회를 주문하여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해당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술되거나 제시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 조사단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새만금 담수호 정책 철회 및 해수유통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나 주장을 제기한 적이 없기에 사실을 바로 잡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새만금 물막이공사』 관련 기사에 대한 해양연구원의 입장
- 내 용 : 본지 3월 21일자 1면 『새만금 물막이공사 중단해야』 제하의 기사에서 해양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될 경우 시화호보다 더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막이 공사를 끝낸 방조제 일부 구간을 트고 미완성 공사 구간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새만금 조사단이 방조제 완공단계부터 문제를 삼았으며 새만금 담수호 정책철회를 주문하여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해양연구원은 해당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기술되거나 제시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 조사단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새만금 담수호 정책 철회 및 해수유통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나 주장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신문 6내지 7면에 2005. 4. 11.까지 게재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신문 : 『‘새만금 물막이 공사’ 관련 기사에 대한 해양연구원의 입장』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 7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 신청인이 ‘상안검이완증’ 치료 수술을 받으면서 이마 성형수술도 함께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정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94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권 양 숙

피신청인 : 월간조선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5. 3. 30.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월간조선 : 『권양숙 여사 성형수술설』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호 98~100면)

내 용 : (전략)

권양숙 여사는 눈꺼풀이 처지면서 눈 바깥쪽에 잔주름이 많이 생긴 경우라고 한다. 의료진의 설명이다.

<권여사는 속눈썹 아래까지 눈꺼풀이 처져서 시야까지 가리게 됐다. 눈꺼풀을 올려 주는 근육이 약화됐다. 권여사는 이마의 피부가 늘어져서 눈꺼풀이 더욱 처져 보이는 경우였다. 그래서 「이마거상술」까지 같이 하게 됐다. 이마의 피부를 당겨 주는 수술이다. 그렇게 하면 미간과 콧날이 조정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얼굴의 균형이 잡히게 된다.>

-그런데 권여사가 코 성형수술을 했다는 이야기가 도는 이유가 뭐냐.

『예전에 찍은 사진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많다. 이러면 코가 높은 사람도 낮아 보인다. 이번에 수술 후 공개된 사진은 화장도 완벽하고, 콧대가 가장 예쁘게 나오는 각도에서 찍어서 그렇다.

쌍꺼풀 수술 한 가지만 해도 얼굴 전체의 이미지가 달라진다. 그래서 여성들이 성형수술을 하려는 것이다』

-누가 권여사 수술을 했다.

『성형외과 교수 한 명이 가서 했다. 성형외과나 의대 본부를 통하지 않고, 청와대가 직접 그 의사에게 수술을 요청했다. 그래서 서울대 사람들도 언론보도를 보고 서울대팀에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권여사는 수술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와 성형외과 쪽에서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성형한 후 한 달까지는 부기가 완전히 빠지지 않고 자리가 잡히지 않는다. 두달쯤 지나면 권여사께서 만족하실 걸로 생각한다. 서울의대 성형외과 의사 6명은 의료적 측면뿐만 아니라 미용 쪽에도 전문가들이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5년 4월호에서, 『권양숙 여사 성형수술설』이라는 제목 및 『눈꺼풀 수술하면서, 이마 성형을 함께 실시했다.』라는 부제로, 권 여사가 최근 눈꺼풀이 늘어나 눈을 뜨기 힘든 증상인 ‘상안검이완증’ 치료 수술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권 여사가 눈꺼풀 수술과 함께 이마의 피부를 당겨주는 성형수술인 ‘이마거상술’을 하였고, 권 여사가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않아 서울의대 성형외과 쪽에서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권 여사는 상안검이완증 치료수술 외에는 이마 등 다른 성형수술을 한 사실이 없고, 수술결과에 대하여 불만족스럽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보도로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

한 것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뜻을 밝힙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권양숙 여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조선 2005년 5월호에 100쪽 이내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목차 부분에 제목(권양숙 여사 관련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 쪽수를 다른 목차 부분과 비슷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제목활자 크기(권양숙 여사 관련 정정보도문)는 중재대상 기사의 중간제목(확인취재)크기로 하고, 내용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월간조선 : 『권양숙 여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5월호 8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OECD가 기업소유구조에 대한 정부규제가 제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96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강 철 규)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5. 3. 31.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문화일보 : 『OECD가 권고한 선진한국의 조건』 제하의 기사 (2005년 3월 5일자 23면)

내 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일 한국이 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조기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과보호를 시정하고, 서비스부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며 기업소유구조에 대한 정부 통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등의 권고 사항을 담은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개혁보고서'를 발표했다. (중략)

이에 반해 OECD보고서는 한국의 서비스부문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60%에 불과한 것은 높은 진입장벽과 규제에 기인한다면서 "서비스 가운데 전기 가스 통신 등 네트워크 산업이 독립된 규제기관보다는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 정부의 정규직 과보호에 직접 원인이 있다면서 이는 과보호의 시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시각이다. 고용확대와 기업투자 증대를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소유구조에 대한 규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한국정부의 기업정책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음도 지나칠 수 없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 2005년 3월 5일자 23면 『OECD가 권고한 선진한국의 조건』 제하의 사실에서 "OECD가 3월 1일 발표한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개혁 보고서'에서 고용확대와 기업투자 증대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소유구조에 대한 규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동 OECD 보고서는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외국인 소유관련 규제를 제거하라고

권고한 것이며, 우리나라의 기업소유구조의 규제 및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해서는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보는 지난 3월 5일자 23면 『OECD가 권고한 선진한국의 조건』 사실 가운데 OECD가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개혁보고서'에서 '고용확대와 기업투자 증대를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소유구조에 대한 규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하였으나 확인결과 기업소유구조의 규제 및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 오피니언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의 활자크기는 4호 활자크기로 하고, 2005년 4월 18일 이내로 게재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 16일자 2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능인불교선양원이 조계종의 감사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단감사를 거부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99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재단법인 능인불교선양원  
 (대표자 이 정 섭) 외 2인  
 피신청인 : 불교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5. 3. 31.  
 처 리 결 과 : 합 의

**보도내용**

불교신문 : 『능인선원, 종단 감사 두차례 거부』 제하의 기사 (2005년 3월 1일자 2면)

내 용 : 서울 강남의 대규모 사찰인 능인선원(원장 지광스님)이 종단 감사를 두 차례나 거부했다. 서초구 포이동의 능인선원은 지난해 연말 조계종 총무원의 종무감사에 이어 지난달 실시한 직할교구 감사 등 두 차례의 종단 감사를 거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그 같은 일이 있었다”며 능인선원의 종무감사 거부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조계종 소속 사찰임을 표방하며 신도를 모집하고 각종 신행활동과 교육 등을 진행해 온 능인선원의 감사거부에 대해 총무원은 “정확한 경위를 재차 확인한 후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감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중헌종법에 근거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능인선원은 또 종단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능인선원이었던 서초동 건물이 재개발로 건물이 사라져 공찰등록요건이 해제된 것이다. 현재 건물인 포이동 능인선원은 종단에 등록하지 않았다. 총무원은 능인선원 측에 종단과의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1일자 2면에 『능인선원, 종단감사 두차례 거부』 제하의 기사에서 “포이동 능인선원은 지난해 연말 조계종 총무원의 종무감사에 이어 지난달 실시한 직할교구 감사 등 두 차례의 종단 감사를 거부한 사실이 밝혀졌다”와 “현재 건물인 포이동 능인선원은 종단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포이동 능인선원은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의 기본재산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이므로 조계종 총무원의 종무감사나 직할교구 감사의 대상이 아니어서 감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지, 감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포이동 능인선원 건물은 종단에 등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어서 종단에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1일자 2면 『능인선원, 종단감사 두차례 거부』 제하의 기사에서 능인선원의 조계종 총무원의 종무감사에 이어 직할교구 감사 등을 거부하고, 포이동 능인선원 건물을 종단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능인선원 지광스님은 능인선원이 개인 사찰과 달라서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조계종 중헌에 의하더라도 조계종 감사를 받거나 재산을 등록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불교신문 2면 우측 하단에 박스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중재대상기사 부제

목(재산도 미등록...)의 활자 크기로 2005년 4월 19일  
까지 게재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불교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 19  
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여수시가 항의하자 해수부는 이미 제작된 12만부  
외에 나머지 8만부의 내용을 수정하느라 법석을 피  
우고 있다는 것. (중략)

여수시청 일부 직원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바뀌  
면서 박람회 유치전략이 수정돼 ‘여수’ 대신 ‘남해  
안’ 이라고 표기한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가 지난 3월 24일자 11면에 『여수박람회 홍보  
‘삐걱’』 제하의 기사에서 박람회 홍보물(팸플릿)에  
개최지인 ‘여수’ 대신 ‘남해안’으로 표기된 것에 대  
해 여수시가 항의하자 해양수산부가 홍보물 내용을  
수정하느라 법석을 피우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  
이 바뀌면서 박람회 유치전략이 수정되어 ‘여수’ 대  
신 ‘남해안’ 이라고 표기된 것 같다는 내용의 보도  
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박람회 홍보물(팸플릿)의  
제작은 전남도와 여수시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실  
제 제작은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  
부가 홍보물 내용을 수정하느라 법석을 피운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홍보물에 ‘여수’ 대신 ‘남해  
안’으로 표기된 것은 현 해양수산부장관 취임 이전  
부터 이미 추진된 사항으로, 장관이 바뀌면서 박람  
회 유치전략이 수정된 결과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해양수산부가 여수시의 항의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홍보책자의 내용을 수정하느라 법석을 피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106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해양수산부 (장관 오 거 돈)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5. 4. 8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경향신문 : 『여수박람회 홍보 ‘삐걱’』 제하의 기사  
(2005년 3월 24일자 11면)

내 용 : 작년말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홍보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여수시는 해양수산부가 주축이 되어 오는 25일 일본  
아이치현에서 개막하는 세계(등록)박람회에서 회원국  
을 상대로 펼칠 첫 유치 홍보전의 팸플릿에 개최지인  
‘여수’ 대신 ‘남해안’으로 표기 됐다고 23일 밝혔다.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3월 24일자 11면 『여수박람회 홍보  
‘삐걱’』 제하의 기사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박람회  
홍보물(팸플릿)의 제작은 전남도와 여수시가 실제  
제작하므로 해양수산부가 홍보물 내용을 수정하느

라 법석을 피운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홍보물에 '여수' 대신 '남해안'으로 표기된 것은 현 해양수산부 장관 취임 이전부터 추진된 사항으로 장관이 바뀌면서 박람회 유치전략이 수정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지역면에 2005. 4. 18. 까지 게재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 15일  
일자 1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108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강 철 규)

피신청인 : 서울경제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5. 4. 11.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서울경제 : 『노대통령, 공정위에 꾸지람』 제하의 기사  
(2005년 3월 17일자 2면)

내 용 : “범죄 발생 전에 범인 수부터 확정(?)”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 대상이 확정되기도 전에 적발 목표치부터 내놓았다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꾸지람’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공정위는 올해 추진할 정책과제 성과지표로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 기업결합 차단금액, 시정조치할 신문지국 수 등을 수치로 만들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가 올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할 기업 수는 141개, 독과점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허용하지 않을 건수는 금액으로 1,200억원, 경품 과다지급 등으로 시정조치를 내릴 신문지국 수는 240개이다. 한마디로 죄를 짓기도 전에 잡아넣을 범인 수부터 결정해놓은 셈이다. 이에 대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해당 실국에서 과거 통계를 추계한 후 올해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업무보고를 들은 노 대통령은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잡아넣을 범인 수부터 내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3월 17일자 2면에 “노대통령, 공정위에 꾸지람”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 대상이 확정되기도 전에 적발 목표치부터 내놓았다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꾸지람’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에게 ‘꾸지람’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사실은 본지 기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지난 3월 17일자 2면 『노대통령, 공정위에 꾸지람』 기사와 관련, 사실 확인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보고과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다소의 지적은 받았으나 ‘꾸지람’을 들은 사실은 없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경제’ 2면에 2005년 4월 26일까지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의 활자크기는 본 건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조사대상 등 확정도 전에…)의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경제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 2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국방부가 장성급 인사를 앞두고 육군 후방군단 2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109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국방부 (장관 윤 광 응)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5. 4. 12.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한겨레 : 『육군 후방군단 폐지 검토』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 2일자 12면)

내 용 : 군이 장성급 후속 인사를 앞두고 중장이 사령관을 맡고 있는 2개 육군 후방 군단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윤광웅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이 후방부대의 지휘체계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며, 영남 지역을 담당하는 11군단과 충청·호남 지역을 담당하는 9군단을 없애고 휘하사단을 2군 아래에 바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본 문 : 본지가 지난 4월 6일자 2면에 보도한 『육군 후방군단 폐지 검토』 제하의 기사 중에서 장성급 후속인사를 앞두고, “2개 육군 후방군단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또한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도 없었음”을 밝혀드립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 지난 4월 6일자 2면 『육군 후방군단 폐지검토』 제하의 기사와 관련, 국방부는 “육군 후방 군단 폐지 검토는 향후 군구조 개선 중장기추진 과제이기는 하나 장성급후속 인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

겨레 2005년 4월 23일까지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  
 되, 제목활자 크기(반론보도문)는 중재대상 기사의  
 소제목(9·11 군단…)크기로 하고, 내용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 23일  
 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청부규제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SK텔레콤으로부터  
 10억원의 성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112  
 청구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이주헌)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재부 : 서울제5중재부  
 접수일 : 2005. 4. 13.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문화일보 : (1) 『SKT, 국책연예 20억 제공 ‘물의’』 제하  
 의 기사 (2005년 4월 6일자 15면)

내 용 : 정보통신정책연서 SK텔레텍 프로젝트수  
 행중 성금받아

정통부 적발... 수뢰연구원 사표수리 상급자 2명  
 중징계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생산 자회사인 SK텔레텍에  
 대해 정부 규제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프로젝  
 트를 수행하면서 이해당사자인 SK텔레콤으로부터  
 10억원의 ‘성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는 용역을 발주한 정  
 보통신부에 보고되기에 앞서, SK텔레콤에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최근 자  
 체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관계당국  
 등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감  
 사원 또는 국무총리실이나 정보통신부를 통해 정밀  
 감사를 벌이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통부 자체조사 결과 KISDI는 정보통신부로부터  
 SK텔레텍의 120만대 생산물량 제한에 대한 규제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SK텔레콤으로부터 모두 2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SK텔레콤이 KISDI에 대해 이 돈 중 10억원을  
 ‘성금’조로 지불했고, 나머지 10억원도 구체적 연구과  
 제 없이 포괄적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KISDI는 프로젝트 보고서 초안에서 SK텔레  
 콤이 자회사 SK텔레텍을 통해 단말기 생산을 확대  
 하더라도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아 경쟁제한 요인  
 은 없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정부 관계자는 “KISDI가 지난해 방만한 운영 등으로  
 예산에 쪼들리자 이례적으로 직접적 이해당사자에게  
 손을 벌린 것으로 보인다”며 “오비이락인지 여부에 대  
 해 어떤 식으로든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KISDI의 예산에 대해서도 불요불급  
 한 집행은 없었는지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 보고서의 유출과 관련, 정통부는 지  
 난달 10일 KISDI출신 SK텔레콤의 상무급 인사가  
 KISDI의 인트라넷에 있는 자료를 후배 연구원을 통  
 해 건네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KISDI는 이 연구원

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상급자 2명에 대해 징계했다.

(2) 『“SK텔레텍 규제 계속돼야”』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 12일자 14면)

(전략)

앞서 KISDI는 지난달 중순 유출된 이 연구의 중간보고서에서는 SK텔레콤이 단말기 제조의 필수정보를 SK텔레텍에만 제공해 발생하는 시장선점효과와 부작용만을 지적하는 등 지난해 말 SK텔레콤으로부터 ‘성금’ 조로 받은 10억원 등과 상관관계가 있는게 아니냐는 논란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한 규제 지속에 대해 KISDI최종보고서는 가능한 규제에 대해 의견을 내면서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최종보고서는 사전규제의 경우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제한돼 논란에 휩싸일 수 있으며, 최근의 규제완화 및 중복규제 철폐 추세와 달라 논란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4월 6일자 15면에 『SKT, 국책연에 20억 제공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레텍에 대해 정부규제 지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해당사자인 SK텔레콤으로부터 10억원의 ‘성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4월 12일자 14면에 『“SK텔레텍 규제 계속돼야”』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말 SK텔레콤으로부터 ‘성금’ 조로 받은 10억원 등과 상관관계가 있는게 아니냐는 논란을 빚어왔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KISDI는 위 연구를 진행하면서 SK텔레콤으로부터 성금

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SK텔레콤과 체결한 연구용역은 해당 정책연구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6일자 기사의 부제 중 『정통부 적발..... 수뢰 연구원 사표수리』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결과 문건유출 연구원이나 그 누구도 SK텔레콤으로부터 수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가 정보통신부에 보고되기에 앞서 SK텔레콤에 유출됐다는 내용과, 보고서의 초안이 ‘SK텔레텍의 단말기 생산이 확대되더라도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아 경쟁제한 요인이 없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보고서에는 선택 가능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같은 결론을 내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6일자 기사에 언급된 “KISDI가 지난해 방만한 운영 등으로 예산에 쪼들리자 이례적으로 직접적 이해당사자에게 손을 벌린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지는 지난 4월 6일자 15면 『“SKT, 국책연에 20억 제공 물의”』 및 4월 12일자 14면 『“SK텔레텍 규제 계속 돼야”』 제하의 기사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레텍에 대한 정부규제 지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해당사자인 SK텔레콤으로부터 10억원의 성금을 받고 중간보고서에서 규제가 해제될 경우 시장경쟁제한의 부작용은 적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를 하였다.

이에 대해 KISDI는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은 10억

원은 성금이 아니라 SK텔레콤과 체결한 연구용역비의 중도금으로 받은 것이고, 그것이 SK텔레텍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에 영향을 끼친 바가 없으며, 또한 프로젝트 보고서에서도 SK텔레텍의 단말기 생산이 확대되더라도 시장경쟁제한 요인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니고, 수뢰한 연구원도 없으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해당사자에게 성금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 산업면 우측하단에 상자기사로 2005년 4월 29일까지(단 토요일자는 제외) 게재하되, 제목(반론 보도문)의 활자크기는 본건 중재대상기사(SKT, 국책연에 20억 제공 물의)의 부제목(정보통신정책연서 SK텔레텍 프로젝트수행중 성금받아)의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 26일 1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정부가 중국 쌀 협상과 관련해 별도의 합의서가 없다고 강조해오다 추가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부가 합의를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116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농림부 (장관 박 홍 수)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5. 4. 1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겨레 : 『다른 합의 없다더니 중국에 ‘뒷문’ 개방』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 13일자 3면)

내 용 : 지난해 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에 대한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관련 국가들의 이의 제기없이 인증된 것은 지난해 9개국과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주고 있다.(중략)

이런 점은 정부가 이행계획서에 대한 국회 비준을 받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부정적이지 않았다. 또 협상 당사국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국제 협상안을 당사국인 우리나라 국회가 비준하지 않기로 쉽지 않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 별도의 합의서가 없다고 강조해온 정부가 중국에 일부 농산물의 추가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부가 합의를 해 준 사실이 드러난 것은 국회에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가합의 사항이 국내 과수농가나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쌀 시판 등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고 있는 농민들이 ‘제2의 마늘협상 파동’으로 받아들인다면 큰 파장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13일 3면에 『다른 합의

없다더니 중국에 ‘뒷문’ 개방』 제하의 기사에서 ‘쌀 비준 긍정 전망속 정부 거짓말 드러나’, ‘협상과정에 별도의 합의서가 없다고 강조해온 정부가 중국에 일부 농산물의 추가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부가합의를 해준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정부는 지난 12월 30일 쌀 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행계획서에서 “통보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 동안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행계획서 수정안 외에 국가별·쟁점별로 문서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입니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쌀협상 관련 “정부 거짓말”이란 보도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상호 문안을 협의하여 200자 원고지 6매 내외의 분량으로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오피니언 면의 ‘왜냐면’란에 2005. 4. 28. 게재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쌀 협상, 정확한 이해를』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 27일자 21면)

내 용 : 협상 결과 발표시점에서는 어느 나라와도 양자 현안이 문서로 최종 합의된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앞으로 석 달 동안의 검증기간이 남아 있어 쌀 이외 품목의 협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할 경우 다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의 추가 요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최근 정부의 쌀 협상 결과를 놓고, 중국 등 협상 상대국들에 추가적인 부가합의를 해줬다는 비판과 지적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치 〈한겨레〉 3면 ‘다른 합의 없다더니 중국에 뒷문개방’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같은 차원에서 제기되어, 이에 대한 해명과 반론을 하고자 한다.

쌀 협상의 본질은 ‘관세화 유예 연장’이라는 우리 요청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협상이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는 유예 연장을 위해서는 상대국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도록 돼 있다. 이 때 상대국 요구사항이 쌀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일부 상대국들은 다양한 양자 현안 해결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쌀 협상 기간 내내 농민단체, 언론 등에 상대국들이 검역 등 양자 현안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별도의 양자 협의 경로를 통해 이를 논의하자는 태도로 우리 쪽이 대응하고 있음도 지속적으로 알려 왔다. 또한, 지난해 12월30일 쌀 협상 결과를 발표할 때 양자 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의 검증기간에 협의를 계속하여 나라별로 문서 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임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면합의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중국산 사과, 배 검역문제처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정부가 당시에는 왜 소상히 밝히지 않았느냐는 물음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협상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 협상 결과 발표시점에서는 어느 나라와도 양자 현안이 문서로 최종 합의된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앞으로 석 달의 검증기간이 남아 있어 쌀 이외 품목의 협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할 경우 다른 무역기구 회원국들의 추가 요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정부로서는 농업인, 농민단체가 열망하여 왔

던 10년 추가 관세화 유예라는 쌀 협상 결과를 무역기구 검증과정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부가적 사항에 관한 합의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정제된 문구로밖에 발표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오해가 생겨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당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부의 고충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부가적 합의사항 중 정부가 중국과 합의한 내용은 “사과·배에 대해 검역상 수입위험 평가를 신속히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며,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합의 내용은 검역 기준을 완화하거나 절차를 생략한다는 뜻이 아니라 과도하게 늦추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한, 검역 전문가

들이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 수입위험 평가 결과가 이로 인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참고로 오스트레일리아는 89년, 일본은 92년, 미국은 93년 사과에 대한 수입위험 평가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도 평가절차가 진행 중이다.

쌀이 우리 농업과 한국인의 정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당시 협상 상황과 부가적 합의사항의 실질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만이 쌀 협상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최근의 국내 언론관계 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판결 1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검찰의 불법 감청에 관한 의혹제기는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다

대법원 2005. 1. 14자 판결 (2001다28619)

사실개요

대법원 제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999년 7월 20일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성원들로서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이었던 원고들이 조선일보사와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과정에서의 감청 등 그 직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사실 중 검찰의 불법 감청에 관한 의혹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

므로, 이는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는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고들은 조선일보가 지난 1999년 7월 31일자 조선일보 서울지역 가판에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제하로 원고들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수사 과정 중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전 조폐공사 사장과와의 통화내용에 대해 불법 감청을 한 후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감청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을 게재하자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및 검사로서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겼고, 일반 독자로 하여금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안겨주어 검찰 구성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 7집 295~307면 참조).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항변을 이 사건 사실에 적시된 사실 및 정황만으로는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사실의 전체 취지가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제되는 중요 사실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바 있다(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 9집 96~107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01다28619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 1. 이 ○ ○
- 2. 이 △ △
- 3. 주 ○ ○
- 4. 길 ○ ○
- 5. 윤 ○ ○
- 6. 김 ○ ○
- 7. 조 ○ ○
- 8. 최 ○ ○
- 9. 한 ○ ○
- 10. 김 △ △
- 11. 이 □ □
- 12. 신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우 식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 2. 정 ○ ○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조선일보사 내)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루, 김 태 수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1. 4. 19. 선고  
2000나9859 판결

판 결 선 고 : 2005. 1. 14.

주 문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피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상고이유보충서 II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들은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로서 1999. 7. 20.부터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성원들이었는데, 위 수사 본부에서 원고 이○○는 본부장, 원고 이△△은 주임 검사, 나머지 원고들은 각 수사검사의 직책을 수행하였으며, 한편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의 발행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정○○은 피고 회사의 논설 위원이다.

(2)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이던 진○○은 1999. 6.

7. 기자들에게 검찰이 조폐공사 파업 유도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 발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권과 일반 시민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으며, 그 보도를 접한 노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함에 따라 대검찰청은 그 진상 조사를 위하여 위 수사본부를 구성하였다.

(3) 원고들은 1999. 7. 21. 위 사건 수사에 착수하여 진○○와 전 조폐공사 사장 강○○의 집과 대검찰청 공안부에 대한 압수 수색과 진○○와 그 가족들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하고, 기타 관련자 소환 조사를 거쳤는데, 그 수사 결과 위 사건은 '진○○가 구조 조정에 반발하는 노조의 파업에 대응하는 선례를 만들어 업적을 쌓을 목적으로 행한 1인극'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들은 1999. 7. 30. 진○○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위 수사를 종결하였다.

(4) 그런데 위 수사 과정에서 진○○가 강○○에게 전화를 하여 '집 전화로 통화하면 수사기관에 추적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기를 보내겠다'고 제안한 다음 휴대전화기를 강○○에게 전하였고, 진○○와 강○○이 그 휴대전화기로 수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

(5) 한편, 원고 이○○ 등은 위 수사본부에서 위 수사 내용과 관련된 일문일답식의 브리핑을 가끔 하었는데, 1999. 7. 27. 오후에 진○○가 강○○에게 휴대전화기를 전달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다고 처음으로 공개하였고, 1999. 7. 29. 오전에는 강○○의 진술임을 전제로 진○○가 강○○에게 "강사장, 우리 딱 한 번 만난 거야... 알았지", "우리가 5월에 한 번 만난 것밖에 없지", "당신이 나와 통화한 것은 범죄신고 차원이 아니냐", "구조 조정은 조폐공사 스스로 한 것인데 내가 뭘 알겠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쑥추기를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브리핑

을 하였으며, 그 때 그 통화 내용이 감청으로 알아낸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위 통화 내용은 감청이나 비화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강○○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청취한 진술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6) 위 브리핑 관련 기사를 취재한 피고 회사 소속 이○○ 기자는 '검찰이 감청이 아닌 강씨 진술로 밝혀진 것이라는 전제를 달고 위 브리핑을 하였고, 그 브리핑 전달까지도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던 통화 내용을 그 다음날에 상세히 공개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그러한 취지의 기사가 1999. 7. 30.자 조선일보에 보도되었다.

(7) 피고 정○○은 위 보도 기사와 기타 다른 언론 보도를 참작하여 '검찰의 감청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원심판결 판시 별지 제1 사설(이하 '이 사건 제1 사설'이라 한다)의 내용에 상응하는 사설을 쓴 다음 피고 회사 내부의 상의 또는 보고 절차, 편집 절차를 거쳐, 1999. 7. 30. 18:00경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1999. 7. 31.자 조선일보 서울지역 가판(街版)에 이 사건 제1 사설과 같은 내용의 사설을 실어 배포하였다.

(8) 그런데 원고 이○○가 위 신문을 보고 피고 회사 소속 서울지방검찰청 범조 출입 기자에게 위 사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항의를 하자, 피고 정○○은 다시 피고 회사 내부의 상의 절차를 거쳐, 다음 그 사설의 제목을 '휴대폰도 도청되나'로 바꾸고 내용을 일부 고쳐 원심판결 판시 별지 제2 사설(이하 '이 사건 제2 사설'이라 한다)의 내용에 상응하는 사설을 쓴 다음 내부 편집 절차를 거쳐, 1999. 7. 30. 23:00경 1999. 7. 31.자 조선일보에 이 사건 제2 사설과 같은 내용의 사설을 실어 배포하였다.

#### 나. 피해자의 특정 여부

(1)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

드시 사람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한편, 언론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보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보도가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보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보도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각 사실의 문면에 의하면, 문제된 각 감청행위의 주체로 '검찰' 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원고들을 특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위 각 사실 중 원고들과 관련된 부분은 진○○와 강○○ 사이의 휴대전화기 통화 내용을 검찰이 감청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 그 판단은 검찰이 파업유도 사건을 조사, 발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들을 전제로 한 것인바, 당시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는 검사인 원고들과 원고들의 지휘를 받는 검찰 직원들뿐이었으므로 원고들의 업무를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원고들의 직역과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파업유도 사건 관련 기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일반 독자들도 쉽게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들은 위 각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배포됨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특정 또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다.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 여부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의견 또는 논평이라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신문 등 언론 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 인정 사실에 터 잡아, ① 피고가 이 사건 제2 사실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든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2 사설은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하였다든 내용을 간접적, 묵시적으로 암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그 내용 중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② 이 사건 제1 사설은 ‘검찰의 감청 의혹’이라는 제목 아래, 첫 문단에서 검찰이 공개한 진○○와 강○○ 간의 휴대폰 통화내용이 감청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적시한 뒤, 그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근거로서, 검찰이 전날 까지도 ‘개인 프라이버시’ 라던 통화내용을 공개하고, 감청이 아님을 애써 강조하였으며, 검찰이 공개한 내용은 진○○와 강○○이 주고받은 대화체로 되어 있고, 한 달도 더 넘은 시점부터 약 20일 동안 10차례에 걸쳐 나눈 비밀통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바, 비록 위 사설 중에는 통화 내용의 공개가 이례적이라든가 감청이 아님을 강조한 점이 석연치 않고 비밀통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된 것이 자연스럽게 못하다고 적시한 부분 등 의견 또는 논평이라고 보아야 할 부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 독자가 사설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위 사설의 제목과 앞서와 같은 사실들을 포함한 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사설은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한 다음 그 감청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그 감청 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든 취지의 사실을 간접적, 묵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위 사설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그 사설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전체의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 보면, 위 사설은 비록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설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고 사실상 타인의 명예

를 해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 또는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라. 위법성의 조각 여부

(1) 원심은, ‘이 사건 제1 사설에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으로서 내용이 진실하므로 위 보도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신문 또는 방송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적시된 기사 또는 방송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증명되는 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판시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설은 검찰이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던 휴대전화 감청을 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서 그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것이나, 나아가 위 사설 중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하였다거나 불법 감청을 한 다음 감청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그 감청 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든 점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함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고, 또한 ‘이 사건 제1 사설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피고들은 피고 회사 및 다른 언론사들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 보도 사실에 터 잡아서 위 사설 내용을 작성한 다음 신문에 게재하여 배포하였고, 위 사설은 평가, 비판, 촉구 따위의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한 것인데,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의 증거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도, 언론 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실제 진○○와 강○○의 대화를 감청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원고들에게 감청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원고들의 해명을 듣는 등의 다른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선일보의 관련 보도나 다른 언론사들의 관련 보도를 사실로 잘못 알고서,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한 다음 그 감청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감청 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은 위 사실을 작성하여 그대로 신문에 게재하여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적시된 사실 및 정황만으로는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사실의 전체 취지가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제되는 중요 사실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배척하였다.

(2)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

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등 참조).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1 사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사설의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나 원심이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특히 검찰 등 국가기관

의 수사과정에서의 감청 등 그 직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사설의 내용은, 그 첫머리에서 “검찰이 공개한 진○○ 전 대검공안부장과 강○○ 전 조폐공사 사장의 휴대폰 통화내역이 감청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검찰의 불법 감청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다음, 이어서 그와 같이 의혹이 제기되는 근거로, ① 검찰이 전날까지도 ‘개인 프라이버시’ 라던 통화내용을 공개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 ② 검찰이 통화내용을 공개하면서 그것이 감청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애써 강조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점, ③ 검찰이 공개한 내용이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체로 되어 있는 점, ④ 한 달도 더 넘은 시점부터 약 20일 동안 10차례에 걸쳐 나눈 비밀통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않다는 점 등의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면서,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추가해명을 요청하였으며, 나아가 도청과 감청은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 누구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아래, “이미 보급대수 1,000만 대를 넘어서 국민의 생필품이 된 ‘휴대폰’마저 도청된다면 국민생활은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밝히면서 “도청 없는 사회를 만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수사기관의 감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사설 중 검찰의 불법 감청에 관한 의혹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

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는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재윤

주심 대법관 변재승

대법관 고현철

□

## 판결 2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에 의한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2005. 2. 3.자 결정 (2004헌가8)

### 사실개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희 재판관)는 2005년 2월 3일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에 의한 외국 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에 대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에 의한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외국비디오물의 수입·배포라는 의사표현행위 전에 표현물을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표현행위의 허용여부를 행정기관의 결정에 좌우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의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라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외국비디오물의 수입추천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검열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01. 5. 24. 법 개정시에 그 근거규정이 공연법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관련조항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인정되고 있는 외국비디오물의 수입추천업무를 수행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개정 전 공연법에 의거 설치되고 있던 것으로서 위 현재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결정에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보류제도의 운영주체로서 행정기관성 여부를 판단하였던 바로 그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동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검열과 관련해서는 그 조직과 구성면에서 행정권의 성격을 가진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청신청인 손○○은 동생과 공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1999. 12. 초순경부터 2000. 11.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빌딩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마존”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음란·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삭제되지 아니한 외국 영화 DVD 600점을 우송받아 외국의 비디오물을

수입하고, 이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통하거나 유통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 기소되어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00고단8228).

이후 제청신청인은 같은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01노167), 대법원에 상고하여 소송계속중(2001도3495),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2001초472), 대법원은 동법 제16조 제1항 본문 중 외국비디오물에 관한 부분, 제29조 제1항 제4호 중 제16조 제1항의 외국비디오물의 수입부분, 제30조 제5호 중 제24조 제3항 제2호의 수입비디오물의 유통 또는 보관한 자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됨을 인정하여, 2004. 4. 13.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결 정 문

제청법원 : 대법원(2004. 4. 13. 2001초472 위헌제청 신청)

당해사건 : 대법원 2001도349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본문 중 외국비디오물에 관한 부분, 제29조 제1항 제4호 중 제16조 제1항의 외국비디오물의 수입 부분, 제30조 제5호 중 제24조 제3항 제2호의 수입비디오물을 유통 또는 보관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

##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가.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 손○○은 동생인 청구의 손△△과 공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1999. 12. 초순경부터 2000. 11.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빌딩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마존”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음란·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삭제되지 아니한 외국영화 DVD 600점을 우송받아 외국의 비디오물을 수입하고, 이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통하거나 유통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 기소되어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00고단8228).

(2) 제청신청인은 같은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01노167), 대법원에 상고하여 소송계속중(2001도3495),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2001초472), 대법원은 동법 제16조 제1항 본문 중 외국비디오물에 관한 부분, 제29조 제1항 제4호 중 제16조 제1항의 외국비디오물의 수입부분, 제30조 제5호 중 제24조 제3항 제2호의 수입비디오물의 유통 또는 보관한 자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됨을 인정하여, 2004. 4. 13.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본문 중 외국비디오물에 관한 부분, 제29조 제1항 제4호 중 제16조 제1항의 외국비디오물의 수입부분, 제30조 제5호 중 제24조 제3항 제2호의 수입비디오물의 유통 또는 보관한 자 부분이며,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법 제16조(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수입)

①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음반의 원판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음반"이라 한다)·비디오물(비디오물의 원판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비디오물"이라 한다) 또는 게임물(게임물의 원판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게임물"이라 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④ 생략

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외국음반·외국비디오물 또는 외국게임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추천을 할 수 없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폭력·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제적 외교관계,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략

4.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음반·외국비디오물 또는 외국게임물을 수입 또는 제작한 자

5.~10. 생략

② 생략

법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생략

5. 제24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유통·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 등을 하거나 유통·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 등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법 제24조(폐쇄 및 수거조치등) ①, ② 생략

③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제작 또는 반입된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

3.~5. 생략

④~⑥ 생략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근거규정은 별지로 첨부.

2.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1) 원심판결은 제청신청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하고, 또한 등급분류도 받지 아니한 외국비디오물을 유통 및 유통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는 제청신청인의 상고에 따른 이 법원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

(2)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의사표현의 자유는 바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비디오물은 의사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수입 및 유통 등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법 제1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수입추천제도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외국비디오물의 수입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법 제16조 제5항의 수입추천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외국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수입·유통 등을 금지하고,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비디오물을 수입·유통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 나. 문화관광부장관의 의견

(1) 영화는 시청각을 표현수단으로 하는 영상매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일단 상영되고 나면 그 자극이나 충격이 매우 강하게 그리고 직접 전달되어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비디오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해졌고, 일단 소비자에게 보급되고 난 뒤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마저 없으므로 영화·비디오를 상영 또는 보급하기 이전에 심사·규제할 필요가 있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각 전문분야별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기관·단체에서 선정한 사람을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에서 행정권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법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율성이 보장된 민간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율적 민간기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외국비디오의 수입추천제도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라는 사전검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3. 판단

#### 가. 검열금지에 관한 헌법규정과 검열의 개념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보장하고,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언론에 대한 검열금지원칙을 헌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명문으로 언론에 대한 검열금지원칙을 선언하면서,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1996. 10. 4. 선고 93헌가13등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검열제도가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와 더불어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검열개념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러한 검열제가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위에서 밝힌 검열의 개념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판례집 8-2, 212, 222-223)."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소를 사전검열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위 결정에서 제시된 위와 같은 기준은 그 후 검열이 문제된 일련의 헌법재판소 결정들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었으며, 헌재 2001. 8. 30. 선고 2000헌

가9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사건에서 위 기준에 입각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를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게 하는 영화진흥법상의 '영화등급분류보류제도'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 나. 수입추천제도의 연혁 및 내용

##### (1) 입법연혁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1991. 3. 8. 법률 제4351호에 의해 제정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던 외국비디오물 수입허가제도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당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은 외국비디오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거나 이를 국내에서 판매·배포·대여 등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법 제24조 제1항 제2호는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995. 12. 6. 법률 제5016호에 의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전문개정되면서, 문화부장관에 의한 수입허가제도는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수입추천제도로 바뀌었고, 이 때부터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외국비디오물의 유통에 대해서도 별도의 형사처벌이 부과되었다.

1997. 4. 10.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으로 수입추천의 주체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바뀌었다가, 1999. 2. 8. 법률 제5925호에 의해 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해, 수입추천의 주체는 다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바뀌었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하는 행위와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외국비디오물의 유통 및 유통목적 보관행위 등에 대

해 부과하는 형벌도 강화되었다. 1999. 2. 8. 법률 제5925호에 의해 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수입추천제도 관련조항들이 바로 제청신청법원의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다(외국비디오물에 대한 수입추천제도는 2001. 5. 2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 전문개정시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 (2) 수입추천제도의 내용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비디오물에 대하여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하고, 이 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수입추천신청의 대상이 된 당해 외국비디오물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 및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입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는 당해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하거나 유통시킬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비디오물에 대한 수입추천제도의 연혁과 수입추천불가 판정의 기준에 관한 관련조항(법 제16조 제5항)을 살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는 유통을 위한 외국비디오물의 수입 이전에 외국비디오물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외국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폭력·음란의 과도한 묘사로부터 청소년 및 공서양속을 보호하고, 기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외국비디오물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수입추천제도가 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외국비디오물의 수입과 언론·출판의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의사표현의 자유는 바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한다.

“음반 및 비디오물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며, 이러한 작용을 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호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3. 5. 13. 91헌바17, 판례집 5-1, 275, 284 ; 1996. 10. 31. 94헌가6, 판례집 8-2, 395, 401 참조).

외국비디오물의 수입·배포행위도 의사형성적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의사의 표현·전파 형식의 하나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외국비디오물의 수입·배포행위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있고, 이러한 영역에 대한 사전검열은 우리나라 헌법이 금지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수입추천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가,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소를 갖춘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법 제16조 제1항은 외국에서 제작된 비디오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입하고자 하는 비디오물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수입추천할 수 없는 비디오물에

관한 내용상의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조항과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외국비디오물이라는 표현물이 국내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수입추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유통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나) 헌법상의 검열금지원칙은 검열이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외국비디오물의 수입추천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검열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결정에서 영화진흥법(1999. 2. 8. 법률 제592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1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던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보류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영화에 대한 심의 및 상영등급분류업무를 담당하고 등급분류보류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경우에도, 비록 이전의 공연윤리위원회나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와는 달리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보고 내지 통보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공연법 제18조 제1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공연법 제18조 제2항, 공연법시행령 제22조), 국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공연법 제30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비록 그의 심의 및 등급분류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라 할지라도(공연법 제23조), 그것이 검열기관인가 여

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심의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단지 심의절차와 그 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심의절차에 요구되는 당연한 전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국가에 의하여 검열절차가 입법의 형태로 계획되고 의도된 이상, 비록 검열기관을 민간인들로 구성하고 그 지위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영화진흥법이 정한 등급분류보류제도의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라는 요건도 충족시킨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01. 5. 24. 법 개정시에 그 근거규정이 공연법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로 바뀌고 관련조항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인정되고 있는 외국비디오물의 수입추천업무를 수행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개정전 공연법에 의거 설치되고 있던 것으로서 위 헌재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결정에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보류제도의 운영주체로서 행정기관성 여부를 판단하였던 바로 그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검열과 관련하여서는 그 조직과 구성면에서 행정권의 성격을 가진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수입추천제도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에 관해 본다.

법에 의하면, 외국비디오물이 유통을 위해 수입되기 위해서는 그 수입 이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고(법 제16조 제1항), 외국비디오물의 내용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수입추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법 제16조 제5항), 추천을 받지 않고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하거나 또는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외국비디오물을 유통하거나 유통목적으로 보관하였을 경우에는 각 형사벌이 부과되고(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및 제30조 제5호), 추천을 받지 않고 수입된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 등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법 제24조 제3항 제2호).

이러한 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외국비디오물의 내용이 법 및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비디오물 수입업자가 자진해서 문제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한 당해 외국비디오물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의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 비록 그 외형적인 형태가 '수입추천'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는 한 외국비디오물을 통한 의사표현이 금지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수입추천제도는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그 절차를 관철하는 수단으로서 형사처벌규정 및 강제수거·폐기규정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라는 요소도 구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 (3)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외국비디오물의 수입·배포라는 의사표현행위전에 표현물을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표현행위의 허용여부를 행정기관의 결정에 좌우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의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라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송인준의 합헌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 5. 재판관 송인준의 합헌의견

나는 위 다수의견에서 언급하고 있는 헌재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영상물에 대한 사전검증절차의 필요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판례집 13-2, 134).

“무릇,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여 그 표현으로 인한 해악이 해소될 수 없을 때에만 비로소 국가의 개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언론·출판의 영역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은 원칙적으로 2차적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표현이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표현은 일단 표출되면 그 해악이 대립되는 사상의 자유경쟁에 의한다 하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니

고 있다. 바로 이러한 표현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고, 따라서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1차적인 것으로 용인된다.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의 이러한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표현을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이라고 정의되는 음란표현은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할 수 없는 표현의 일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떠한 표현이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호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표현은 사전에 적절한 방식으로 검증하고 여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영화는 시청각을 표현수단으로 하는 영상매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일단 상영되고 나면 그 자극이나 충격이 매우 강하게 그리고 직접 전달되어 영향력이 아주 크다. 그뿐 아니라, 비디오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일단 소비자에게 보급되곤 뒤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마저 없다. 그러므로 영화를 상영 또는 보급하기 이전에 심사·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특히 청소년이 음란, 폭력 등 영화에 접근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절실함도 크다.

영화에 대하여 이미 다단계의 등급을 분류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있으므로 등급분류보류

제도는 청소년보호라는 공익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법령상의 규제와 현장에서의 실행 사이에 괴리가 큰 현실을 간과한 것으로서, 더욱이 현재와 같이 동일한 영화관에서 여러 등급의 영화가 동시에 상영되는 제도하에서는 청소년보호라는 공익은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비디오 기기가 이미 광범하게 보급되고, 거의 모든 영화가 다시 비디오물로 재생되는 현실에서 영상매체로서의 비디오물 또한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라는 면에서의 사전검증절차 필요성은 영화에 못지않음은 말할 나위도 없고,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볼 때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검증절차의 필요성은 오히려 영화의 그것에 비해 더 크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의 경우에는 극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상영되므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받는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도록 규제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선전물의 배포·게시 또한 위 제한상영관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단계에서의 이용자별 출입제한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디오물은 극장에서만 상영될 수 있는 영화와는 달리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라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통단계에서의 관리가 영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영화보다도 상영·보급 이전 단계에서의 내용에 대한 사전검증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외국비디오물의 경우에는 내용과 관련하여 제작에 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서를 해치는 지나치게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이 적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외국비디오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국내의 청소년들에게 유포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인터넷 문화가 급속도로 발달하여 그 유포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속화 되었는데, 불법적 내용의 비디오물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될 경우에 그 해악이 정말 심대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최근 불법적으로 인터넷에 유포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연예인 관련 비밀과일 사건이 그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외국비디오물의 수입추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성격에 관하여도 나는 위에서 언급한 현재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결정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이 각 전문분야별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기관·단체에서 선정한 사람을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의 형식적 위촉으로 선임되는 점, 과거와 달리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의무 및 문화관광부장관의 위원장·부위원장 승인제도가 없다는 점, 위원장·부위원장을 위원회가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가 법정되어 있으며, 임기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는 점, 위원회에 대한 국고보조가 20%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들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과거 공연윤리위원회나 한국공연예술진흥협회의 회에 대하여 행정기관성을 인정하여 검열기관으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행정기관적 색채를 불식하고 출범한 것으로서 행정권과는 독립된 민간 자율기관”이라고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비디오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제도는 영상물에 대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사전검증절차로서 우리나라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한다.

다수의견이 검열금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하에서 검열을

정부입장의 옹호 내지 홍보수단으로 악용하던 데 대한 반응으로 일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표출된 후의 교정이 불가능한 해악으로부터 건전한 사회윤리의식과 청소년을 보호하여 국가사회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가치혼돈시대의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서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한다.

재판장 재판관 윤 영 철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 효 중  
 재판관 김 경 일  
 재판관 송 인 준  
 재판관 전 효 숙  
 재판관 이 상 경  
 주 심 재판관 주 선 회

〈별 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근거규정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사건 당시 공연법에 의해 설치되었고, 따라서 직무범위에 관하여도 공연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공연법(1999. 2. 8. 법률 제592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7조(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의 공공성 및 윤리성을 유지함과 아울러 연소자 관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영상·청소년·법률·교육·언론 등의 분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가 영화·비디오 등 공연 및 게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한 15인을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21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2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2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4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상물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가 상영등급을 분류한 영상물 등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이를 등급분류 등 관련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상물관련업체 등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상물 수입·제작자 등 관련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회의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위원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위원회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이상 미리 예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할 수 있다.

**제30조(지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 판결 3

신속 보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는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 취재원의 진술내용을 믿어 보도한 것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9.자 판결 (2003가합46616)

####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2004년 12월 29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동아일보사와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동아일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가 동아일보 2003년 6월 14일자 1면 『“박지원 씨에 2억 줬다”』라는 제목과 『김○○ 씨 ‘관광협회장 임명에 도움 대가’ 진술』, 『검찰 월드컵 회장권 수사 … 김씨 영장 청구』라는 중간제목

의 기사에서 월드컵 회장사업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이 원고가 문화관광부장관 재직 당시 김○○ 관광협회중앙회장에게서 2억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자 사실무근이라며 피고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김△△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하였는바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기 전 원고에 대한 그러한 의혹제기가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해 수사가 바로 진행되지 않아 김△△의 진술내용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김△△가 원고에게 2억원을

건네주기 위해 돈을 마련해 주었다는 김○○에 대해서 따로 취재하지 않은 사정, 이 사건 기사의 가장 중요한 취재원인 김△△ 자신이 월드컵 휘장사업과 관련하여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있었고, 김△△의 검찰에서의 진술 그 자체도 진술을 할 수록 로비 대상이 점점 확대됨은 물론 그 일관성도 없어졌던 사정, 그런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김○○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제목과 본문 내용 등에서 김○○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것처럼 보도한 사정, 당시는 대북송금사건에 원고가 깊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원고가 월드컵 휘장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일반 독자들이 쉽게 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상황이었던 사정, 김○○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김△△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 사정 등 이 사건 기사의 취재경위, 취재원인 김△△의 진술내용 및 그 신빙성, 취재 당시 원고의 상황,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김△△의 진술을 믿어 보도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과 함께 원고가 김○○ 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명하였다.

**판 결 문**

사 권 : 2003가합46616 손해배상(기)  
 원 고 : 박 지 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 정  
 담당변호사 김 주 원  
 피 고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표이사 김 재 호

2. 이 ○ ○

3. 이 △ △

4. 이 □ □

피고들의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미디어센터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용 현, 이 병 삼

변 론 종 결 : 2004. 12. 1.

판 결 선 고 : 2004. 12. 29.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8.부터 2004.

12. 29.까지는 연 5%의, 200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 후  
 첫 번째로 발행하는 동아일보 제2면 우측 상단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3.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그  
 의무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씩의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한다.

5.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3/4은 피고들이 각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억원 및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동  
 아일보사(이하, ‘피고 동아일보사’ 라고 한다)는 별  
 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동아일보 제1면 우측 상단에  
 가로 3단, 세로 16cm의 크기로 게재하라. 피고 동아  
 일보사는 원고에게 이 판결선고일로부터 위 정정보  
 도문 게재일까지 1일 1,000만원씩의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4호증의 1 내지 4, 을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7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8년경부터 2003. 2. 24.까지 문화관광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 동아일보는 일간지 동아일보를 발행하는 법인이며, 피고 이○○, 이△△, 이□□은 아래에서 보는 동아일보 2003. 6. 14.자 기사를 작성한 피고 동아일보사 소속 기자들이다.

### 나. 동아일보 2003. 6. 14.자 기사

동아일보는 2003. 6. 14.자 1면 우측 상단에 “박지원씨에 2억 줬다”라는 제목과 “김○○씨 ‘관광협회장 임명에 도움 대가’ 진술”, “검찰 월드컵 회장권 수사 … 김씨 영장 청구”라는 중간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2002 한일월드컵 축구대회 회장사업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관광부 장관 재직 당시에 김○○ 관광협회중앙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박 장관이 2000년 5월경 초기 회장사업권자인 CPP코리아 회장이던 김씨에게서 “관광협회중앙회장으로 임명되는 데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CPP코리아의 비자금으로 조성된 현금 2억원을 받았다는 관련자의 진술 및 정황을 확보했다. 김 회장이 당시 홍콩

에서 열린 태평양아시아관광협회(PATA)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직후 박 장관에게 총회결과를 보고하러 가면서 김△△ 전 CPP코리아 대표(38)에게서 받은 2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13일 김 회장에 대해 CPP코리아 등으로부터 정관계 로비 등의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원이 박 전 장관에게 전달됐으며 다른 2억원이 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권 전 고문은 최근 본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돈을 받지 않았으며 김○○씨를 관광협회중앙회장이 되도록 한 사람은 박지원씨”라고 말했다. 검찰은 월드컵 회장상품 생산업체인 G&B월드와 회장사업권자였던 코오롱TNS가 각각 월드컵 홍보관 사업권을 획득하고 CPP코리아로부터 회장사업권을 이전받기 위해 박 전 장관에게 거액의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 및 진술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본보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박 전 장관측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기사 보도 전후의 언론보도 등

이 사건 기사 보도 전부터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 회장사업과 관련하여 관련업체들이 2000년경부터 2001년경 사이에 사업권 확보를 위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 국회의원,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월드컵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 동아일보는 2003. 4. 28.자 동아일보에 “월드컵 회장권 수십억 로비 … 의원, 전 장관 등 20여 명 수사”라는 제목으로 “...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를 검찰이 포착해 27일 전면 수사에 나섰다. (중략) 검찰은 또 당시 DJ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모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 정부 투자기관 고위 인사 등에게 거액이 전달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검찰은 조만간 CPP코리아와 코오롱TNS 관련 인사 등을 소환 조사해 정관계에 전달된 정확한 금품 액수와 로비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SBS는 2003. 5. 21. '8시 뉴스'에서 “검찰, 박지원씨 금품수수 진술 확보”라는 제목으로 “...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회장사업업체 관계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중략) 검찰은 최근 CPP코리아 김모 전 사장으로 부터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월드컵회장 사업에 깊이 연루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G&B월드 대표 심○○씨가 월드컵 홍보관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지난 2000년에서 2001년 1월 사이에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수 억원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중략) 그러나 박 전 실장은 심○○씨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회장사업과 관련해 어떤 로비도 받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정점에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다고 말해 이미 박 전 실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빠르게 파악해 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방영하였으며, 중앙일보 2003. 5. 22.자, 경향신문 2003. 6. 12.자, 연합뉴스 2003. 6. 14.자, 문화일보 2003. 6. 14.자 등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가 김○○ 관광협회중앙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을 당대로 금품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고, 검찰은 김○○가 2000년 3월부터 2000년 7월까지 회장사업대행업체인 CPP코리아와 코오롱TNS월드측으로부터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받은 10억원 중 2억원씩을 구(舊)정권 실세 K씨와 P씨 등에게 건넸다는 '전언' 진술을 확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각각 보도하였다.

#### 라. 김○○에 대한 수사 경위

(1) 이 사건 기사에서 취재원으로 기재된 김△△는, 2000년경 2002년 월드컵회장사업권을 가진 CPP코리아의 대표이사였는데, 2002년 월드컵회장사업과 관련하여 CPP본사로부터 2000. 12. 20. 이전에는 총판계약(월드컵 휘장이 들어간 제품의 독점판매권 설정계약)이나 OEM(월드컵 휘장이 들어간 제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11월경부터 2000년 8월경까지 사이에 월드컵 회장사업의 제주총판권을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9억 여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되어, 2002. 9. 6.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이 법원 2002고합577, 2002고합822(병합)), 김△△가 그에 대해 항소하여 2003. 4. 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2003노2434, 그 판결에 대해 김△△가 상고를 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약 11개월만에 구금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2) 그와 같이 김△△는 구금상태를 면한 후 2003. 4.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당시에는 서울지방검찰청이었다. 이하, '서울지검'이라 한다)에서 2000년 당시 CPP코리아의 회장이었던 김○○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당시 김○○를 CPP코리아의 회장으로 영입한 이유가 김○○의 인맥을 이용하여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로비를 하여 월드컵 회장사업권을 유지하겠다는 목적이었다고, 자신이 김○○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김○○는 그 금품을 사용하여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월드컵회장사업과 관련된 청탁을 하였다는 것이었다(김△△는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김△△의 2003. 4. 29.자 진술서 말미에는 “제가 얘기해야겠지만 ... 모든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002년 10월 당시에도 여담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김△△가 김○○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앞서 본 김△△ 자신의 형사재판 과정 중 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계속 중에 검찰에 그와 유사한 내용을 진술하였고, 그것을 계기로 김△△가 구금상태에서 벗어나자 검찰이 김○○와 관련된 사안의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3) 김△△는 위와 같이 진술한 후 2003. 4. 29., 2003. 5. 23., 2003. 6. 2. 및 2003. 6. 13.의 각 검찰조사에서 “정치권 인사 등에 대해 로비를 하기 위해 정관계 인사와 두터운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고 당시 관광협회중앙회장이었던 김○○에게 CPP코리아의 회장으로 취임하도록 부탁하였고, 김○○가 그 취임을 승낙한 후(2000. 3. 28. 취임하였다) 김△△ 자신에게 관광협회중앙회장으로 선출되도록(1999. 12. 28. 선출되었다) 도움을 준 원고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면서 2억원을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0. 5. 20. 경 김○○에게 2억원을 건네주었고, 그 후 김○○가 자신에게 ‘김사장은 걱정말고 사업이나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등에 비추어 그 2억원이 원고에게 건네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김△△는 검찰에서 처음으로 진술할 때에는 원고와 관련된 부분을 진술하지 않았으나 2003. 5. 31. 처음으로 그와 관련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대해 2003. 6. 2.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4) 한편 김△△의 그와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은 2003. 6. 11. 김○○를 긴급체포하여 구속하였으나, 김○○는 2003. 6. 13. 김△△와의 대질신문 등에서 일관하여 김△△로부터 2000년 9월경에 급여 명목으로 23,956,700원을 교부받은 외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김○○에 대한 공소제기 및 그에 대한 재판결과

(1) 서울지검 소속 검사 박용호는 그와 같은 김△△의 진술을 근거로 2003. 7. 1.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에게 돈을 준 사람으로 보도된 김○○에 대해

“1999년 11월경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202 소재 신라호텔에서, 김△△로부터 월드컵조직위원회 등 정·관계 및 체육계 등에 로비를 하여 CPP코리아의 월드컵회장사업권이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관공서 등에서의 납품 등 월드컵회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명목상 CPP코리아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기존에 피고인이 인간관계를 맺어오던 각계의 고위공직자 등을 통해 로비를 함으로써 청탁 내용을 실현키로 마음먹고, 고위공직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년 3월경부터 2001년 12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함께 7억 5,000여 만원을 교부받았다(2000. 5. 20. 원고에게 건네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2억원 포함)”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03고단6122, 2003고단8532(병합)).

(2) 그러나 이 법원은 그와 같은 공소제기에 대해 2003. 12. 11. 가장 중요한 직접증거인 김△△의 검찰 및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해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이 법원 2003노11524호), 이 법원은 2004. 10. 5.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에 대해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04도6958호).

바. 원고에 대한 당시의 수사 상황 등

(1) 2003년 4월경부터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2003. 03. 15. 법률 제6864호)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에 의하여 이른바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당시에는 대북송금사건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하여 국가정보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등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절의 핵심인사들이 연이어 구속되거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언론에서는 그 사건의 가장 중심적 인물로 원고를 지목하고 있었으며, 특별검사도 조만간 원고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었고(원고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2003. 6. 16. 특별검사에 소환되어 2003. 6. 17. 긴급체포되었다),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북한에 돈을 주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자 원고를 비롯한 대북송금사건의 관련자에 대한 수사결과에 관해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2) 한편 김△△의 그와 같은 진술이나 김○○의 그와 같은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로비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원고 등이 그에 관하여 실제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지는 않았다.

## 2.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내용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사실은 원고가 김○○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김○○가 검찰에서 관광협회중앙회장 임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원고에게 2억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서 마치 원고가 김○○로부터 관광협회중앙회장에 임명되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2억원을 받은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성,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한편 언론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

적인 흐름, 기사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사건 기사의 경우,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동아일보의 제1면 우측 상단부분에 배치하면서 “박지원씨에 2억 줬다”라는 제목을 중간 제목보다도 훨씬 큰 활자로 표시하고 있고, 그 바로 밑에 “김○○씨 ‘관광협회장 임명 도움 대가’ 진술”이라는 중간 제목을 기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기사 가운데에 원고의 사진을 함께 게재하면서 본문 내용에는 원고가 김○○로부터 돈을 받은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검찰이 원고의 금품수수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원고를 수사할 예정인 것처럼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권노갑이 피고 동아일보사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돈을 받지 않았으며 김○○씨를 관광협회중앙회장이 되도록 한 사람은 박지원씨”라고 말했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본문에 원고가 “문화관광부 장관 재직 당시 김○○ 관광협회중앙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김회장이 ... 박 장관에게 총회결과를 보고하러 가면서 김△△ 전 CPP코리아 대표에게서 받은 2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의 배치, 제목과 중간 제목의 문구 및 크기, 원고의 사진 게재, 관련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를 읽는 대부분의 일반 독자들로서는 먼저 기사 제목에 의하여 원고의 범행사실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은 다음 본문 내용은 그냥 읽어 넘어가기가 쉽고, 본문 내용을 읽어보더라도 원고의 금품수수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단순히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보다는 원고가 김○○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대북송금사건으로 인해 원고가 여론의 집중적 관심의 대상이었으므로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이 사건 기사에서의 사실의 적시는 “원고가 김○○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한편 이 사건 기사는 중간 제목으로 “김○○씨 관광협회장 임명 도움 대가 진술”이라고 게재하였으나, 이 사건 기사의 본문에는 김○○가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 아니라 김△△가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기사에서의 그와 같은 사실의 적시는 그 자체로 전직 공직자였던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나. 피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 (1) 피고들의 주장 내용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전직 고위 공직자였던 원고의 직무 청렴성 등에 대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임은 물론 이 사건 기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서울지검 특수1부에 대한 취재와 다각적인 확인절차, 김△△ 등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인물에 대한 직접 확인 및 기타 주변 정황에 대한 검토 등 당시로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기사를 작성·보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 (2)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제16대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절 문화관광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원고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그 직무에 속하는 관광협회중앙회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김○○로부터 그 임명에 도움을 준 대가로 김○○로부터 2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기사는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원고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관련된 사안이므로 대다수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기사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5, 을제7호증의 9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가 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2000. 5. 20.경 김○○가 원고에게 인사하여야 한다면서 2억원을 준비하라고 하였고, 자신이 현금으로 2억원을 준비하여 김○○에게 주었는데, 그 후 김○○가 자신에게 ‘이제부터는 사업이나 열심히 하라’고 하였고, 또 그 후부터는 월드컵조직위원회의 CPP코리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으로 보아 김○○가 그 2억원을 원고에게 전달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김○○는 김△△의 그와 같은 진술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김△△가 본사에서의 자금지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액의 자금을 들여 로비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 원고가 김○○로부터의 금원수령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거나 입건, 기소되지 않았고 김△△가 김○○에게 교부했다는 돈 중 상당부분을 수표로 교부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의 김△△와 김○

○의 각 계좌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김△△로부터 김○○에게 전달되었다는 수표나 돈이 송금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점, 김△△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의 위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김○○로부터 2억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다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 10208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 기사와 같이 보도 내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인 경우, 일반 독자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별다른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그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보도에 앞서 더욱더 그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정도로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한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동아일보사 소

속 기자인 피고 이□□, 이○○, 이△△ 등은 2003. 4. 25.경 김△△의 아버지(성명을 알 수 없다)로부터 월드컵회장 사업권 관련 수사에서 청와대 등 정치권 인사들, 특히 원고가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2003. 4. 27. 직접 김△△를 만나 김△△에 대한 서울지검 특수1부의 수사경위, 직접 관련된 정관계 로비 등을 취재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4. 28.자 동아일보에 원고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보도하였고, 그 후 서울지검의 수사경과를 지켜본 후 2003. 6. 1.경 및 2003. 6. 13. 김△△를 다시 취재한 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실(다만 피고들은 서울지검 특수1부 관계자들로부터도 김△△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김○○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취재원 보호를 위해 그 경위를 밝히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사 말미에 원고에게 사실확인을 위해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대북송금사건 수사 등으로 인하여 원고를 상대로 사실확인을 위한 직접 취재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김△△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하였는바(서울지검 특수1부의 관계자들로부터 확인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당시 월드컵 회장사업과 관련해서 원고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이미 피고 동아일보사 발행의 동아일보 및 다른 언론들에 의해 보도되었던 내용으로 보도가치의 측면에서 그다지 신속하게 보도할 필요는 없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기 전인 2003. 4. 28.경 원고에 대한 그러한 의혹제기가 있었음에도 그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해 수사가 바로 진행되지 않아 김△△의 진술내용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김△△가 원고에게 2억원을 건네주기 위해 돈을 마련해 주었다는 김○○(그 당시 김○

○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였다)에 대해서 따로 취재하지 않은 사정, 이 사건 기사의 가장 중요한 취재원인 김△△ 자신이 월드컵 회장사업과 관련하여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있었고, 김△△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검찰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김○○와 관련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정(김△△가 김○○와 관련된 진술을 시작한 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월드컵 회장사업과 관련하여 김△△ 자신이 사기죄로 제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을 때로 보이는데, 김△△로서는 편취한 돈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님을 주장함으로써 형량의 감경을 피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여러 면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편취금액의 지출내역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 이○○, 이△△, 이□□이 김△△로부터 그가 검찰에 원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면 김○○가 그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었을 것이며, 김△△의 검찰에서의 진술 그 자체도 진술을 할수록 로비 대상이 점점 확대됨은 물론 그 일관성도 없어졌던 사정, 그런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김○○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제목에서 “박지원씨에 2억 줬다”, “김○○씨 ‘관광협회장 임명 도움 대가’ 진술”이라는 제목과 “김○○가 당시 홍콩에서 열린 태평양 아시아관광협회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직후 박 장관에게 총회결과를 보고하러 가면서 김△△ 전 CP코리아 대표에게서 받은 2억 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는 본문 내용 등에서 김○○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것처럼 보도한 사정,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는 대북송금사건에 원고가 깊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 사건과 별개로 원고가 월

드컵 회장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일반 독자들이 쉽게 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상황이었던 사정, 김○○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김△△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 사정 등 이 사건 기사의 취재경위, 취재원인 김△△의 진술내용 및 그 신빙성, 취재 당시 원고의 상황,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김△△의 진술을 믿어 보도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기사의 작성·보도에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원고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기사의 위치와 내용 및 크기, 피고 동아일보사가 언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그에 대한 평가, 이 사건 기사와 유사한 내용이 이미 다른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3,000만원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03. 7.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12.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아울러 피고 동아일보사는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 판결 확정 후 첫 번째로 발행하는 동아일보 제2면 우측 상단에 게재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제1면 우측 상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나, 앞서 본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면 우측 상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명한다), 피고 동아일보사가 그 정정보도문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그 의무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씩의 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상 군  
판사 최 정 인  
판사 강 재 원

〈별 지〉 정정보도문

본보 2003. 6. 14.자 “박지원씨에 2억 줬다”라는 제목과 “김○○씨 ‘관광협회장 임명 도움 대가’ 진술”이라는 중간 제목 이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관광협회중앙회장 임명에 도움을 준 대가로 김○○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정정보도문 글씨체 및 크기 : 명조체, 28급  
본문 글씨체 및 크기 : 명조체, 14급 끝. □

3. 결론

판결 4

보도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발행인이나 편집책임자가 편집책임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기사의 작성·편집에 간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대외적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05. 1. 25.자 판결 (2003나82497)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

사)는 2005년 1월 25일 한나라당과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이재오 씨가 오마이뉴스 편집자 겸 발행인 오○○ 씨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언론매체가 그 보도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발행인이나 편집책임자가 불법행위자로서 그 보도로 인한 대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당연하고, 내부적으로 그에 대한 편집책임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구체적인 기사 작성이나 편집에 간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대외적인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사 작성 및 편집에 간여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 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언론이 더 넓은 표현의 자유영역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적인 인물이나 공공의 관심 사항에 관한 문제제기가 가지는 영향이나 결과를 고려하여 반드시 문제를 제기하게 된 전제사실이나 취재원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피고들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나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같은 제보가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인식 아래 이 사건 보도를 하게 된 이상,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거나 그와 같이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오마이뉴스사가 주간 오마이뉴스 2002년 12월 3일자 제16, 17면, 인터넷 오마이뉴스 2002년 12월 4일자 『‘김○○ 테이프 조작 거짓증언’ 대가로 이재오 의원측에서 3,500만원 받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이 이재오 의원을 통하여 금원지급을 대가로 김○○ 씨의 조작진술을 청탁하고 실제로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자 원고들은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1집, 251~263면 참조).

## 판 결 문

사            건 : 2003나82497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1. 한나라당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4-17

대표자 박 근 혜

2. 이 재 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봉 규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 윤 숙

피고, 항소인 : 1. 오 ○ ○

2. 김 ○

피고들 주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강

담당변호사 이 지 은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3. 11. 12. 선고

2002가합81643 판결

변 론 종 결 : 2004. 12. 21.

판 결 선 고 : 2005. 1. 25.

주            문 :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당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추가판단부분

가. 피고 오○○는, 자신이 이 사건 보도가 게재된 오마이뉴스 2002의 명목상 발행인 겸 편집자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기사의 작성 및 편집에 간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언론매체가 그 보도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발행인이나 편집책임자가 불법행위자로서 그 보도로 인한 대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당연하고, 내부적으로 그에 대한 편집책임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구체적인 기사 작성이나 편집에 간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대외적인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금○○의 제보(이하 금○○의 피고들에 대한 제보를 '2차 제보'라 한다)를 직접화법을 사용하여 여과 없이 인용하거나 그에 대한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논평을 게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반론도 지면의 상당부분을 할애하여 이를 함께 보도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

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금○○의 2차 제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법으로 '원고 한 나라당이 원고 이재오를 통하여 금○○에게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금○○로 하여금 김○○과 함께 테이프를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폭로하도록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대가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을 직접 대중에게 전달하거나 최소한 보도를 접하는 독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암시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에서 금○○의 2차 제보를 단순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면서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내용을 전개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가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논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기사 내용에 일부 반론 등을 함께 게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를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원고들은 김○○과 테이프를 조작하였다는 금○○의 당초의 제보(이하 '1차 제보'라 한다)가 여러 정황을 통하여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허위제보 내용을 언론에 유출시켜 이 사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를 자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금○○의 2차 제보나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한나라당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스스로 언론 매체 종사자임을 자처하는 피고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자신들이 발행하는 주간지에 함부로 게재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금○○의 2차 제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보도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김○이 항공기 탑승자 명단을 확인하고 금○○의 동거녀인 이○○과 원고 이재오의 보좌관 및 원고 한나라당의 당직자를 통하여 원고 이재오와 금○○가 접촉하거나 만난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들로서는 금○○가 피고 김○과 접촉하여 2차 제보를 하기에 앞서 원고 한나라당에 김○○과 테이프를 조작하였다는 내용을 1차 제보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1차 제보 당시 원고 이재오를 비롯한 원고 한나라당의 당직자들이 금○○와 접촉하여 제보사실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은 원고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므로, 원고 이재오가 금○○를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원고 이재오가 금○○를 매수하여 테이프 조작에 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도록 하였다는 2차 제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금○○는 제보 이전에 있었던 김○○의 기자회견이나 관련 병역

비리 수사과정 등에서 전혀 언급되거나 관련자료지목된 적이 없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상반되는 내용을 여기저기에 제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보한 이후에도 입장을 바꿔 기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등 2차 제보 내용을 선뜻 신뢰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었던 반면 그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발생할지 모르는 결과의 증대성을 고려하여, 이를 취재하는 기자라면 과연 금○○가 그와 같은 제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제보 내용 자체의 모순은 없는지, 제보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사실확인 작업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사를 작성한 피고 김○ 스스로가 이 사건 보도 내용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금○○가 허위제보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2차 제보 내용을 기사의 큰 제목 등으로 부각시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를 보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보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보도를 통하여 당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에서 원고 한나라당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겠다는 현실적 악의가 존재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결국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피고들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 보도가 공적인 관심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그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는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 사항에 관하여는 언론

에 의한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 또한 완화되어야 하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언론이 더 넓은 표현의 자유영역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적인 인물이나 공공의 관심 사항에 관한 문제제기가 가지는 영향이나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그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게 된 전제사실이나 취재원에 대한 보다 고도의 사실확인 작업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금○○의 2차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나 노력을 하지 않고 도리어 그와 같은 제보가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인 인식 아래 이 사건 보도를 하게 된 이상, 이 사건 보도가 공적인 관심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의 게재 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3. 2. 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3. 11.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상 훈  
판사 김 대 응  
판사 박 인 식



일본 판결

법적인 견해의 표명은 법원이 판결로 그 견해의 정당성에 대한 공권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의견 및 논평에 해당한다

상 고 인 : 小林善範 · 주식회사 小學館

피상고인 : 甲野太郎

최고재판소 2003(受)제1793호, 2003(受)제1794호,  
 사죄광고등청구사건, 2004.7.15 제1소법정 판결,  
 파기자판, 원심도쿄고법 2002(木) 제3647호,  
 2003.7.31 판결, 원원심도쿄지법 2002(7)  
 제18782호, 2002.5.28 판결

판결요지

명예훼손의 성립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법적인 견해의 표명은, 판결 등에 의해 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의견 및 논평의 표명에 해당한다.

주 문

원판결 중 상고인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전항의 부분에 관해, 피상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상고비용은 피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2003년(受) 제1793호 상고대리인 中村裕二, 동 瀧澤秀俊의 상고수리(受理)신청이유 제2 및 2003년(受)제1794호 상고대리인 竹下正己 등의 상고수리 신청이유 제2의2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관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피상고인은 대학강사로 이른바 중군위안부문제 등을 연구하는 자이며, 저서, 강연, 인터넷의 홈페이지, 잡지 등에 기고하거나 텔레비전 프로에 출연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피상고인은 중군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에 책임이 있으며 중군위안부였던 사람들에게 대해 사죄 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03년(受) 제1793호 상고인 小林善範(이하 「상고인

小林」으로 한다)은 「小林요시노리」를 펜네임으로, 잡지 「SAPIO」에 연재되고 단행본으로 간행된 만화 「신(新)·고-마니즘선언」을 포함한 「고-마니즘선언」시리즈(이하 「고-마니즘선언 시리즈」로 총칭한다)를 집필하는 만화가로, 그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중군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에 책임이 있다는 논자(論者)와 논조(論調)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피상고인은 1997년 11월 1일 「고-마니즘선언 시리즈」의 컷(cut)을 상고인小林에게서 무단으로 채록(採録)하여, 중군위안부 문제 등에 관한 상고인小林의 견해를 비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심 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의 표현을 포함한 「탈(脫)·고-마니즘선언」이라는 제목의 서적(이하 「피상고인 저작」으로 한다) 초판 제1쇄(刷)를 출판했다.

피상고인 저작의 표지커버 상반부에는 「이것은 만화가小林요시노리에 대한 진혼(鎮魂)의 책」, 하반부에는 「탈·고-마니즘선언」, 「小林요시노리의 '위안부' 문제」라는 피상고인 저작의 표제 및 부제(副題)와 함께 표지커버의 뒷면 표지부분에도 동일한 표제 및 부제가 기재되어 있다.

이들 표제 가운데 「고-마니즘선언」 부분은 검은 글씨인데 반해 「탈(脫)」 부분만은 붉은 계통의 색깔로, 「고-마니즘선언」 부분보다 약간 큰 글씨로 되어 있었다. 또 뒷면 표지부분의 「小林요시노리」 부분은 붉은 글씨가 사용되어 있었다.

피상고인 저작은, 「첫머리-小林요시노리에 대한 레퀴엠(requiem·진혼곡)」, 차례, 본문부분 및 「맺는 말」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149쪽이다. 본문 부분 가운데 11쪽부터 100쪽까지가 「탈·고-마니즘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된 부분, 101쪽부터 143쪽까지가 「'위안부' 공격의 막후(幕後)」라는 제목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고-마니즘선언 시리즈의 컷이 채록되어 있는 것은 「탈·고-마니즘선언」이라는 제목부분이다.

상기 채록된 컷 수는, 전체 57컷(74장면)이며, 페이지

지의 2분의1 이상을 상기 채록된 컷이 접하는 페이지가 4페이지 있다. 상기 채록된 컷 중에는 인물에 눈가림을 그려넣은 것이 3컷, 손으로 쓴 문자를 더한 것과 배치를 바꾼 것이 각각 1컷씩 있고, 1컷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록된 컷에는 출전(出典)이 명기되어 있다.

고-마니즘선언은, 하나의 이야기가 적어도 좌우 양면에 걸친 2페이지이며, 통상 8페이지로 완결하는 만화이다. 피상고인 저작에 채록된 컷은 그 일부분에 불과하며 독립된 관상성(觀賞性)은 인정되나, 그 자체가 독립된 만화로서 읽을 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상고인 저작의 「탈·고-마니즘선언」 제목부분은, 상고인小林을 「よしりん(요시린)」으로 호칭하며 관서지방 사투리의 스스럼없는 필치로 게재되어 있다. 또한 고-마니즘선언 시리즈에서는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ご-まんかましてよかですか?」라는 대사(臺詞)가 기재된 컷이 삽입되어, 상고인小林의 의견이 요약된 컷이 계속되는 체재(休裁)가 정형화되고 있는데, 피상고인 저작의 「탈·고-마니즘선언」이라는 제목 부분에서는 제22장을 제외한 각장의 최후의 부분에서 「ゴ-マンかましてかめへんやろか?」라는 타이틀로 피상고인의 요약된 의견이 기재되는 체재가 정형화 되어 있다.

이 의견의 요약 부분에서는 「이대로라면 '고-마니즘선언'은 '작(作)·모(某)정치'가, 그림·小林요시노리'의 선전삐라가 된다」(제1장), 「"만화만 그리고 있으면 요시린처럼 될거야!"라고 어느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되면 부끄러운 일!」(제7장), 「ゴ-カン問題にドンカンな 요시린은 곧 'ゴ-カンニズム' 선언으로 불려질지도 몰라」(제10장),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책임자를 숨기게끔 된 あんさんは 이제 끝장인지도 몰라!」(제18장), 「사물을 ごっつう 단순하게 그리면 "그건 만화야"라고 사람들은 웃는다. 요시린은 그런 하찮은 '만화'를 그리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あんさんが 현재 그러한 만화가로 전락했음을 지금에서야 절실히 알게 되었다」(제19장)는 등으로 기재되었다.

그 밖의 부분에서도 「만화가·小林요시노리씨에 대한 진혼(鎮魂)의 책」, 「만화가·小林요시노리씨의 정신이 죽어있다」고 기재되기도 하고, 상고인小林에 대해 「우익의 데마고그(demagogue)」, 「특정정치세력의 어용만화가」 등으로 기재되어있다.

이와 같이 피상고인저작 중에는 상고인小林을 비방하고 야유하는 표현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3) 상고인小林은 피상고인저작의 출판 후, 제1심판결 별지 제1목록기재의 표현을 포함한 「신·고-마니즘선언 제55장」(이하 「본건만화」라 한다)을 집필했으며, 2003년(受)1794호 상고인주식회사 소학관(이하 「상고회사」로 한다)은 본건만화를 잡지 「SAIPO」 1997년 11월 26일호 및 단행본 「신·고-마니즘선언 제5권」(1998년 10월 10일 발행)에 게재하여 발행했다.

본건만화는 「제55장 광의(廣義)의 강제 바뀌치기론자에 대한 진혼(鎮魂)의 장(章)」이라는 부제(副題)가 붙여졌으며, 전체 8페이지 중 최초의 2페이지가 본건 채록이 저작권침해이며 위법이라고 비판하는 부분이며, 그 나머지 페이지에는 피상고인저작 중에서 다루어진 중군위안부문제에 관한 상고인小林의 견해에 대한 비판, 반론에 대한 재비판, 재반론이 게재되어있다.

본건만화 중의 제1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2, 3, 7, 8, 9, 15, 18, 20의 각 표현(이하 「본건 각 표현」으로 총칭한다)은 본건채록이 「도둑」이며, 피상고인저작이 「도둑책」이라고 반복하여 기술하는가 하면 당초(唐草)무늬의 보자기를 짚어지고 눈에 검은 아이마스크를 가린 고전적인 도둑의 모습을 한 피상고인의 얼굴과 닮은 인물을 그리는 등, 본건채록이 허용하는 인용의 한계를 넘은 저작권(복제권) 침해이며 위법이라는 상고인小林의 법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피상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본건만화 중 피상고인이 한 본건채록이 저작권침해이며 위법이라고 비판하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상고인저작에는 상고인小林이 집필한 고-마니즘선

언 시리즈의 컷이 상고인小林에 무단으로 채록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다음 「이것은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행한 것이다. 만화의 부분적인 인용은, 그것을 평하는 문장과와의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이 있는 한, 저작권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화에 대한 비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인용권’(引用權)이라고 불려도 좋을지 모른다.」는 피상고인저작의 「맺는 말」에 기재된 피상고인의 의견을 원문 그대로 소개하고, 이에 대한 상고인小林의 반론으로서, 업계에 관례로 인정되고 있는 부분적인 인용은 대사 등의 문장부분만에 한정되어 있어, 피상고인저작은 대사, 문장의 인용으로 충분함에도 일부러 상고인小林이 집필한 만화의 컷을 많이 사용하여 매상(賣上)을 늘리려고 했다는 등의 기재가 되어있다.

또한 피상고인저작의 「맺는 말」에서 「小林씨도 본문의 9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나의 얼굴을 제멋대로 그려놓고, 자신의 만화만은 일체 임의로 인용하지 말라는 등 방자한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부분도 원문 그대로 인용한 다음 이에 대한 상고인小林의 반론으로, 사람의 얼굴은 저작물이 아니며 초상화가 그려졌으면 저작물을 무단전재 해도 좋다는 등의 구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되어있다.

더욱이 인물에 눈가림을 그려넣은 것에 대해 「이러한 그림은 작가의 저작물을 함부로 개찬(改竄)·발표하는 악질적 행위이며 저작권상 특히 용서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상고인小林의 의견이 기재된 것에 이어 이러한 행위를 방임해둘 수는 없다고 하고 「이 저작권침해사건에 관해서는 변호사를 내세워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상고인小林의 대사가 기재된 컷이 그려져있다.

(4) 본건 각 표현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련된 것으로, 본건채록의 위법성을 일반독자에게 널리 호소하여, 상고인小林 자신의 작품을 포함한 만화의 저작권 옹호를 도모하려는 것이었으며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가 있다.

(5) 상고인小林은, 피상고인 저작이 상고인小林의 복제권 및 저작자인격권인 동일성보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피상고인, 피상고인 저작의 발행자 및 출판사에 대해 피상고인 저작의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별건소송」으로 한다)을 제기했다.

별건소송에 대해서는, 본건채록이 복제권 침해라고 인정할 수 없으나, 장면의 배치를 바꾸어 채록한 부분 1개소에 대해서는 동일성보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상기 채록에 관련한 부분을 포함한 피상고인 저작의 출판 등의 금지 및 20만엔의 위자료 지불을 명한 항소심의 판결이 확정되어 있다.

2. 피상고인은, 본건 각 표현이 피상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 상고인 등에 대해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의 게재 등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고인 등은, 본건 각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의견 또는 논평의 표현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그 내용이 피상고인에 대한 인신공격에 이를 만큼 의견 또는 논평의 영역을 이탈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피상고인의 청구들, 위자료 등의 일부의 지불 및 본건만화가 게재된 「SAPIO」지에 원판결의 별지 인용광고 목록기재의 사죄광고를 별지 인용광고양태(樣態) 목록기재의 양태로 게재할 것을 청구한 한도에서 인용(認容)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1) 본건에 있어서는, 피상고인이 상고인小林에게 무단으로 본건채록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며, 다만 본건채록이 저작권법 32조1항에 의한 인용(引用)으로서 적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법적평가의 다툼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다툼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함으로써 법원의 공권적이고 확정적인 판단이 확실하게 보여져야 할

것이며, 실제로 본건에 대해 상고인小林이 별건소송을 제기하여, 본건채록은 상고인小林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어 있다.

이같이 법의 해석적용만이 문제가 되어있는 사항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 법원에 의한 공권적이고 확정적인 판단이 확실하게 명시될 사항에 대해서는 최고재판소 1994년(オ) 제978호 동 1997년 9월 9일 제3소법정 판결에서 판시하는 「증거 등을 갖고 그 존재여부의 결정이 가능한 타인에 관한 특정사항」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본건채록은 상고인小林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본건 각 표현은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본건채록이, 법원에서 적법한 인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개연성이 있으며, 복제권침해로 판단될 개연성이 높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상고인 등이 저작권법의 전문가와 상의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었으며,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출판사인 상고회사 및 유명 만화가인 상고인小林에게 있어 그러한 상의를 하는데 지장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인 등은 이를 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상고인 등에게 본건채록이 복제권 침해로 위법이라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4. 그러나 원심의 상기판단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련이 있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는 데 있었을 경우, 적시된 사실이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을 때

는 상기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으며, 상기 증명이 없을 때에도 행위자에게 상기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고의 또는 과실은 부정된다(최고재판소 1962년(才) 제815호 동1966년 6월 23일 제1소법정 판결, 최고재판소 1981년(才) 제25호 동 1983년 10월 20일 제1소법정 판결 참조).

한편,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한 의견 및 논평의 표명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이 있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는 데 있었을 경우, 상기 의견 및 논평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을 때는, 인신공격 등 의견 및 논평으로서의 영역을 일탈하지 않는 한 상기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며 설령 상기증명이 없을 때도 행위자에게 있어 상기 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고의 또는 과실은 부정된다(최고재판소 1985년(才)제1274호 1988년 12월 21일 제1소법정 판결, 최고재판소 1997년 9월 9일 제3소법정 판결 참조).

위에서와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 및 논평의 표현이었던지에 의해 명예훼손과 관련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해표현이 어떠한 범주에 속하는지 판별하는 일이 필요한데, 당해표현이 증거 등을 갖고 그 존재여부 결정이 가능한 타인에 관한 특정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될 때는, 당해표현은 상기의 특정사항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최고재판소 1997년 9월 9일 제3소법정 판결 참조).

그리고 상기와 같은 증거 등에 의한 증명에 익숙하지 않은 사물의 가치, 선악, 우열에 관한 비평이나 논의 등은 의견 및 논평의 표명에 속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위에서와 같은 관점에서 검토할 때, 법적인 견해의 정당성 그 자체는 증명의 대상으로 될 수는 없

으며, 법적인 견해의 표명이 증거 등을 가지고 그 존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타인에 관한 특정사항이라고 할 수 없음을 명백하므로, 법적인 견해의 표명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 및 논평의 표명의 범주에 속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술과 같이,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의견 및 논평에 의한 명예훼손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요건을 달리 하고 있어, 의견 및 논평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특별히 따질 것도 없이 인신공격에 미치는 등 의견 및 논평으로서의 영역을 일탈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의견 및 논평을 표명할 자유가 민주주의사회에서 불가결한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구성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극진하게 보장하려는 취지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 판결 등에 의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위의 판별에 관계가 없으므로 법원이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적인 견해의 정당성에 관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법적인 견해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 또는 그에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적인 견해의 표명 그 자체는 그것이 판결 등에 의해 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항에 관련되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이유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의견 및 논평의 표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3) 본건 각 표현은 피상고인이 본건채록을 했다는 것, 즉 피상고인이 상고인小林에 무단으로 고-마니즘 선언 시리즈의 컷을 피상고인저작에 채록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피상고인이 행한 본건채록이 저작권침해이며 위법이라는 법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며, 상기 설시(說示)한 바에 의하면 상기 법적인 견해의 표명이 의견 및 논평의 표명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그리고 전기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본건 각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한 것이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는데 있었고 게다가 본건 각 표현의 전제가 되는 상기의 사실은 진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 본건 각 표현이 피상고인에 대한 인신공격에까지 미쳤다고 할 수 없고, 본건만화에서는 피상고인의 주장을 정확하게 인용한 다음 본건체록의 위법성의 유무가 법원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있고, 한편 피상고인은 상고인小林을 피상고인 저작 중에서 엄하게 비판했으며 그 안에는 상고인小林을 비방하고 야유하는 표현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등의 여러 가지 점에 비취볼 때 상고인小林이 행한 본건 각 표현은 피상고인저작 중의 피상고인의 의견에 대한 반론 등으로 보아 의견 및 논평의 영역을 일

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각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상고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原審)의 전기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법령의 위반이 있다.

논지는 이유가 있으며 원판결 중 상고인 등의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상에서 설시한 바에 의하면 피상고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상기 부분에 대해 피상고인의 항소를 기각해야만 한다. 따라서 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 처 : 『판례타임즈』 1163호 pp.116~130

번 역 :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 미국 판결

### 형사절차에 관한 공개된 공적 기록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언론사가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이 사건 사생활 침해 소송은 제기수정헌법에 의하여 인정될 수 없다

【Gates v. Discovery Communications Inc.】

캘리포니아 주대법원

Steve Gates(원고 겸 항소인) 대 Discovery Communications Inc. 등(피고 겸 피항소인)

2004년 12월 6일

캘리포니아주 제4항소심 재판장 Benke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임.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텔레비전 쇼의 프로듀서 등을 상대로 한 소송임.

샌디에고 카운티에 있는 캘리포니아 제1심법원은 명예훼손에 대한 피고측의 방소항변

(demurrer)은 받아들였으나,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피고측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음.

항소심은 위 1심 판결을 취소함.

당원(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상고기각함.

대법관 George(주심), Werdegar, Kennard, Baxter, Chin, Brown, Moreno.

## 대법관 Werdegar

당원(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텔레비전 기록영화의 프로듀서 등이 '중죄를 지어 수년간 감옥에서 복역을 하고 나와 평범하고 법을 지키는 시민으로 살아오다가 마침내 그 지역사회의 존경받는 인물이 된 사람'에 관한 정보를 법원의 공식기록으로부터 수집한 다음 이를 공개한 것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항소심은 피고들이 특정한 상황 하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당원은,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 기초적 사실관계

원고는 1988년 발생한 청부살인의 방조범(중범)이라는 이유로 1992년에 유죄판결을 받고 3년간 복역하였다. 피해자는 자동차 판매원이었는데,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의 집 문 앞에서 청부살인업자에 의해 총에 맞아 살해되었다. 유명한 자동차 판매상이 위 살인을 배후조종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그 범행 동기는 '판매상의 부모가 소유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제출하자 그 소송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살인사건이 발생할 당시 위 자동차 판매상의 보조 매니저(assistant manager)였던 원고는 처음에는 공모자로 기소되었지만, 나중에 그 기소 내용은 방조범(중범)으로 줄어들었다. 피고들은, 위 범죄가 일어난 지 12년이 지난 후인 2001년에 그 범죄에 대한 기사를 방송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사와 방송사들이다.

피고들의 기록영화가 방송된 후에 원고는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원고는, 그가 출소한 이후에 생산적 일에 종사하면서 법을 준수하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왔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더 나아가 피고들의 프로그램이 자신을 살인사건의 공모에 가담한 것

으로 거짓 묘사하였고, 증거를 만들기 위한 전화도청에 자신이 가담한 것으로 거짓 묘사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살인을 자백한 자라고 암시를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사생활침해와 관련하여 원고는, '청부살인음모 후 자신은 방조범(중범)에 불과하다고 말한 점'을 폭로함에 의하여, 그리고 '원고의 사진을 피고가 방송'함에 의하여 원고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원고가 '제한된 목적의 공적 인물'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악의를 가지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피고들은 또한 민사소송법 425.16조항인 反SLAPP법에 따라 사생활침해부분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재정신청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이 한 보도의 요점은 매우 정확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에 대한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어떤 뉴스가 보도가치가 없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적인 내용을 진실하게 보도한 것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면제하여 주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어 제1심법원은 사생활침해에 대한 피고들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원고가 '증소 가능성을 입증하였다'고 결론내리면서 피고들의 反SLAPP법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들은 反SLAPP법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 주 항소법원은 기본적으로 'Cox Broadcasting Corporation v. Cohen 판결'을 들어 제1심의 결정을 번복하였는데, 위 Cox 판결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방송국 기자가 공개된 법원기록을 조사하여 얻은 17세의 사망한 강간 피해자의 신분'을 방송국에서 방송한 것에 대하여 조지아 주는 제재를 가할 헌법상의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주 항소법원은, 법률판단으로서 '피고들의 방송은 사법절차에 관한 공개된 공적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진실한 정보들

이며, 따라서 Cox 사건에서 고등법원이 해석한 바와 같이 미 제1수정헌법에 의하여 보호' 되기 때문에 원고는 사생활침해 청구에서 승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당원(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이러한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 검 토(Discussion)

여기서의 쟁점은, '원고가 사생활침해 청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제1심법원의 결론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원고는 'Briscoe v. Reader's Digest Association, Inc. 판결'을 들면서 위 청구를 하고 있는데, 위 Briscoe 판결에서 당원(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복권된 죄수의 과거 전과는 가사 보도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를 부주의하고, 공격적이며, 유해한 방법으로 보도한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피고들은, "위 Briscoe 판결은 '적어도 사법절차에 관한 공개된 공적 기록에서 얻은 정보에 관한 한' 연이어 나온 고등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폐기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원은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인다.

Briscoe 판결은, 잡지사를 상대로 한 사생활침해 청구소송에 관한 것이다. 그 분쟁의 발단은, '원고가 11년 전에 화물트럭 약탈을 저질렀다.'는 기사를 피고 잡지사가 실은 데 있었다. "원고의 친구들과 그의 11살짜리 딸은 처음으로 그의 과거 전력에 대한 당황스러운 기사를 접하고는 원고를 조롱하고, 그를 떠나버렸다."고 원고는 주장하였다. 원고는, 그 기사의 폭로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는 오래 전에 일어난 것이고, 그는 그 후 법을 준수하는 평범한 생활을 하여 왔으며, 그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성취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기사에서 원고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보도가치가 없고 따라서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

다.

주 대법관 Peters가 작성한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당원(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청구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결론에 다다르기 위하여, 당원(주 대법원)은 Harvard Law Review 193쪽에 실린, Warren과 Brandeis가 쓴 "사생활에 대한 권리"라는 논문에서 '사생활에 대한 법적 권리'의 개념을 끌어왔다. 당원(주 대법원)은, 대중매체와 전자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의 익명성을 해치고, 개인의 사사로운 활동을 침해하며, 대중 앞에 개인의 특성을 노출시킬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수용할 필요성도 점차 높아져 왔다는 점에 주목을 한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충돌할 때 당원(주 대법원)은, "제1수정헌법의 보호를 받는, 공공의 이익과 관심에 관한 보도"와 "보도가치는 있지만 공공의 이익과는 다소 무관한, 과거의 범죄 및 과거 범죄자들의 신분에 관한 보도"를 구별하여야 한다. 당원(주 대법원)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언론의 일반적인 이익'이 때로는 '과거의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새로운 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제공하는 이익'보다 더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당원(주 대법원)은, 진실한 보도가 보호를 받는 것은 오로지 보도가치가 있고, 지역사회의 통상적인 관념에 충격을 줄 정도로 유해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보도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① '보도된 사실에 대한 사회적 평가', ② '사생활에 대한 그 보도의 침해정도', ③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는지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위에서 본 내용을 적용하기에 앞서 당원(주 대법원)은, Briscoe 판결에서 제1심의 배심원들이 '과거 화물트럭 약탈범'이라고 원고의 신분을 밝힌 것은 보도가치가 없는 것이고, 개인의 과거 범죄전력을 폭로하는 것이 대다수의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불쾌한 것이며, 원

고는 이러한 공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원고는 유효한 청구원인을 주장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Briscoe 판결에 따라 원고는, 배심원들이 “원고는 복역 후 10년 이상을 재활과정을 거쳐 평범하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재판 당시 ‘원고가 자신은 청부살인의 방조범(종범)에 불과하다고 말한 사실’은 보도가치가 없는 것이고, 개인의 범죄전력을 폭로하는 것은 대다수의 미국인 입장에서는 불쾌한 것이며, 원고는 이러한 공표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바가 없다.”는 점에 대한 사실인정을 했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의 反SLAPP법 재정신청을 기각하면서 명백히 원고들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이미 본 바와 같이 당원(주 대법원)은, ‘Briscoe 판결에서 유효하다고 인정한 이론이 어느 정도까지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점을 검토한다. Briscoe 판결이 나온 이래 지금까지 미 연방대법원은 여러 건의 유사한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충돌 문제를 아래와 같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Briscoe 판결 이후 미 연방대법원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언론의 자유’ 간의 충돌에 관한 문제를 다룬 여러 건의 판결을 내렸다.”

“Cox Broadcasting Corporation v. Cohen 사건에서 조지아 주에 사는 17살의 소녀가 강간을 당하는 도중 살해되었다. 그 범죄는 즉시 광범위하게 보도되었지만, 조지아 주법은 희생자의 이름을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었기 때문에 희생자의 이름은 공표되지 않았다. 그런데 기자가 법원에서 ‘접근이 가능한 그 사건의 기소장’을 보고 희생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 기소장은 누구나 살펴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료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그 기자의 고용주는 희생자의 이름을 방송하였다. 그 희생자의 아버지는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Cox 방송사는 자신의 방송이 제1수정헌법과 제14수정헌법에 의하여 면책특

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조지아 주 제1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조지아 주법에 따라 방송의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는 민사상 배상청구권이 주어진다고 판단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은 ‘제1수정헌법과 제14수정헌법에 따를 경우 범죄의 처벌절차 과정에서 공공연히 드러난 강간피해자의 이름을 공표하는 것이 사생활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원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보았다.”

“법원은 처음에는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적 움직임이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Cox 방송사는 ‘거짓이거나 현혹시키는 내용이 아닌 정보’를 공표한 것에 대하여 언론사는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명예훼손소송에서 공표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은 항변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원은 공적 인물이 아닌 개인이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진실성’이 헌법상 보장되는 항변사항(위법성 조각사유)이 되는지에 관한 문제를 조심스럽게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점은 사생활침해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진실하게 한 공표는 제1수정헌법과 제14수정헌법에 따라 민사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다시 말해 ‘卹는 원치 않는 공표로부터 자유로운 사생활의 영역을 한정하여 보호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개괄적인 질문을 던지기 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개된 자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공적인 처벌절차에 관계되어 있고,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공적인 서류’에서 얻은 강간피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보도한 것에 대하여 卹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언론과 사생활의 비밀 간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적절하다. 당원(대법원)은, 卹가 그러한 제재를 할 권리가 없다고 확신한다.”

“법원은,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정부가 하는 모든 행위’에 관한 보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이익은 그에 관한 정보가 이미 공적인 서류에 나타나 있을 때는 보호정도가 약해진다.”

“법원은, ‘州가 그 정보를 공식적인 법원 기록에 남김으로써 공적인 이익이 더 중요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공적인 기록은 그 자체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그것이 공개될 때 그 이익이 달성되는 것이다. 법원은, ‘그러한 보도는 우리의 정부 형태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이러한 정부형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1수정헌법과 제14수정헌법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법원의 공식적인 기록에서 얻은 진실한 정보를 보도하는 것에 대하여 州가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것’이란 점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공적 서류에 관하여 언론의 접근은 가능하게 하면서 그에 포함된 정보가 합리적인 일반인의 감정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그 공표를 금지시키는 것은 마음 내키지 않는 길을 걷어가는 것과 같다. 이는 언론으로 하여금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를 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된다. 이러한 법리를 따른다면 언론은 겁에 질려 자체 검열을 하게 되고, 결국 공표되어야 할 문제들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Okla. Publishing Co. v. District Court 사건에서는 11살의 소년이 살인사건에 관련된 소년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언론사 기자들이 구속적부심사를 하는 법원에서 방청을 하였고, 그 소년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전에 보도되었다. 그 후 비공개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제1심법원은 언론이 소년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취소하여 달라는 오클라호마 출판사의 항고신청에 대하여 오클라호마 대법원은 ‘제1심법원이 공개를 명하지 않는 한 소년범죄절차는

오클라호마 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들어 위 항고신청을 기각하였다.”

“미 연방대법원은 오클라호마 주 대법원의 결정을 파기하였다. 미 연방대법원은, Cox 판결과 그 밖에 다른 판결을 인용하면서, ‘언론기자들은 소년의 이름이 공개되고 있는 구속적부심사절차를 적법하게 방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년범죄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州법의 존재 여부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 소년의 이름은 범죄의 처벌과정에서 노출이 된 것인데, 이는 Cox 판결에서 강간피해자의 이름이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으로 넘어간 것과 같다. 미 연방대법원은 제1심법원의 명령이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결정이라고 보았다.”

“Smith v. Daily Publishing Co. 사건에서는 웨스트 버지니아에 사는 15세의 학생이 14세의 같은 반 친구에게 총을 맞아 살해되었다. 신문기자들은 범행현장에 있던 목격자로부터 범행을 저지른 학생의 이름을 알아냈다. 가해자의 이름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웨스트 버지니아 법은 법원의 허가 없이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그 소년의 이름을 공표하는 것은 형사적 처벌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이름을 공표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소가 제기되었다. 웨스트 버지니아 대법원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미 연방대법원은, ‘웨스트 버지니아 법이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정당하게 얻은 진실한 정보의 공표에 대하여 州법이 사전 검열을 하거나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는 결국 州법의 그러한 행동이 州 법령의 공적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증명을 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州는, 범죄자의 재발을 증진하기 위하여 범행소년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에 州의 공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것이 州 법령의 공적 이익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The Florida Star v. B.J.F. 사건에서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이름을 밝힌 것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플로리다 법은 성범죄 피해자의 이름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의 이름이 담긴 강간수사보고서가 경찰서에서 우연하게 언론에 배포되었고, Florida Star 신문사가 이를 보도하였다. 강간피해자는 범령위반을 이유로 그녀의 이름을 보도한 신문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신문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배심원들은 1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다시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보장’ 사이의 이익충돌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았다. Cox 판결, Okla. Publishing 판결, Daily Mail 판결 등에서 이러한 이익충돌을 이미 언급하였지만, 그 접근방식은 개별 사안마다 달랐고, 이 문제점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다.”

“Florida Star 신문사는, 앞서 말한 3개의 판결이 ‘언론이 진실을 보도한 것에 관하여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위 3개의 판결에서는 공표된 정보가 이미 공적 문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경우의 사생활 보호의 이익은 이 사건에서보다 비중이 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이름을 공표한 Florida Star 신문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제1수정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Cox 판결은 이 사건과 유사해 보이지만,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보았다. Cox 판결은 ‘사법절차에 관련된 공적 서류’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성범죄 피해자의 이름’을 공개한 것에 관한 것이었다. Cox 판결은, ‘사법절차에 관한 정확한 보도는 보호를 받는다.’는 특이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런데 Florida Star 신문사가 공표한 원

고의 이름은 ‘사법절차에 관련된 공적 서류’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공표당시 그러한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또한 ‘진실한 보도는 처벌될 수 없다는 법리’를 배척하였다. 법원은 Daily 판결에서 선언된 법리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만일 언론사가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면, 州 정부는 州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법원은, ‘정당하게 취득한 정보의 진실한 공개를 철저히 보호하는 위 법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에서 정당화 된다고 하였다. ① 첫째, 정부는 대부분의 경우 비밀스러운 정보를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도 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② 다음으로, ‘일반인들이 이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원은 ‘언론사가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가 항상 대중에 알려져 있거나 접근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어떤 정보를 공개하여 놓고, 그 공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하였다. 진실한 정보가 한번 공개되거나 공중의 영역에 들어가면, 법원으로서 그 유포를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 ③ 마지막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진실한 정보를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언론으로 하여금 겁을 집어먹고 자기 검열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법원은, Florida Star 신문사가 성범죄피해자의 이름을 공개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하면서, 공적 이익을 언급하였다. 원고는 플로리다의 비공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3가지 이익, 즉 ‘피해자의 사생활’,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 및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조장’을 주장하였다. 법원

은, 이러한 이익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공적인 이익보다는 중요치 않다고 보았다.”

“*Bartnicki v. Vopper* 판결에서 법원은 불법적으로 도청한 내용의 공개가 제1수정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이 사건에서 언론사는 ‘교직원노동조합 조합장과 조합 협상전문가가 단체협상에 대하여 핸드폰으로 나눈 대화’를 불법도청한 내용을 제공받아 보도하였다. 위 노동조합 간부들은 불법도청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불법도청은 연방법과 주법상 금지되어 있고, ‘그것이 불법도청된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불법이었다.”

“법원은, ‘그 대화 내용은 불법적으로 도청된 것이고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불법적이라는 점을 언론사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문제를 풀어 나갔다. 언론사는 비록 그 정보가 불법도청된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 대화 내용이 담긴 테이프는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그 테이프의 내용은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은, ‘공적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州 정부는 언론사가 적법하게 취득한 진실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언급하였다. 州 정부는 법령상의 2가지의 공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한 가지는 ‘불법도청을 하려는 동기를 제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화가 도청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해악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이익들은 불법도청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헌법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불법도청을 하려는 동기를 제거한다는 이익’은 ‘불법도청한 정보를 그 후 적법하게 취득하여 공표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원은, ‘州가 대화 내용이 도청되고 있는 사람들

의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관하여 충분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화 도청을 허용한다면, 사적인 대화에 찬물을 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대화를 공표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은 제1수정헌법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 되는데, 그 이유는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진실한 정보의 보도를 처벌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지었다.”

[1] 당원(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Cox* 판결 및 그에 뒤이은 *Oklahoma Publishing* 판결, *Daily Mail* 판결, *Florida Star* 판결, *Bartnicki* 판결 등에서 보여 준 고등법원의 결정이 ‘재활 과정을 거친 전과자에 관한 사실을 부주의하게 보도한 신문사는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한 *Briscoe* 판결의 판시 내용과 심하게 배치되고 있다(그 판시가 공개된 공식적인 법원 기록에서 얻어진 사실에 적용되는 한)고 결론내린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ox*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州는, 일반에게 공개된 법원의 공적 기록에서 얻어진 진실한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고, 특히 *Oklahoma* 판결에서의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연방헌법문제에 관하여 당원(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당연히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

고등법원은, *Cox* 판결의 법리 즉 ‘공적인 관심사에 관하여 언론사가 적법하게 취득한 진실한 정보를 공개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법리를 좀 더 명확하게 언급하면서, 州 법령의 공적 이익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을 배척하였다. 당원(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재활목적을 위하여 전과자의 익명성을 오랜 기간 보호하려는 州의 공적 이익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어진다고 결론내린다.

원고는, “*Cox* 판결 및 그 따름 판결들에서는 악의적인 보도가 있기 몇 일, 몇 주 또는 몇 달 전에 범행

이 발생한 것이지만, Briscoe 판결에서는 범행이 있은 후 수년 후에야 보도가 있었으므로 서로 다른 사안에 관한 판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법원에서는, Cox 판결 및 그 따름 판결들에서 ‘그 자료가 수년전에 이미 공개되었다는 점’이 ‘언론의 공개할 권리’에 영향을 준다고 판시한 바가 전혀 없다. Cox 판결의 판시는 무조건적인 것이다: “진실한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법원의 공식적인 기록을 통하여 공표되었다면, 언론이 이를 보도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Cox 판결의 논거는 ‘법원 기록’ 그 자체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그 법원기록이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고등법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공적 기록이란 본질적으로 정부의 활동과 관련된 공적 이익에 관한 것이고, 공적 이익이란 언론이 공적 기록의 진실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다.

당원(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최근 개인적인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사생활침해를 한 사안에서 입장을 표명할 몇 번의 기회를 가졌으며, 그 과정에서 법원은 ‘단순히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공개된 법원의 공식적인 기록에서 얻은 진실한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할 몇 가지 관찰을 하였다. 항소법원은 이 점을 아래와 같이 정확하게 표명하고 있다.

“Florida 판결과 Bartnicki 판결의 차이점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제1수정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와의 법익 충돌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는 Briscoe 판결에서의 설명과는 문맥상 서로 다르다.”

“Shulman v. Group W Productions, Inc. 판결은 2명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제기한 사생활침해 소송에 관한 것이다. 프로그램 제작사가 2사람이 구조되어 응급 처치 받는 장면을 녹화하였고, 그 장면이 텔레비전의 자동차사고에 관한 기록영화의 일부로서 제작되어

방영되었다. 피해자들은 2가지 근거를 들어 사생활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하나는 불법적인 침해를 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제작사는 그 사고가 보도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자신들의 보도는 제1수정헌법에 따라 보호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법률적 판단 문제만 남아 있는 경우에, 정식재판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막 바로 선고하는 판결)을 신청하였다.”

“개인적인 사실을 공표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공표된 사실이 ‘적법한 공적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닐 것, 즉 보도가치가 없어야 한다. 보도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그동안 연방대법원이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 법원은 Cox 판결과 Florida Star 판결을 검토하였지만, 그 판결들은 사생활 보호 문제에 관한 지침이나 특히 보도가치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법원은 위 판결들이 언론에 공개된 법원의 공적 기록에 관한 판결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법원은 이 문제에 관하여 캘리포니아 판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였다. 검토결과 법원은, Briscoe 판결을 요약하였고, ‘그 판결에서 11세 소년의 범죄에 대한 사실은 보도가치가 있지만, 범죄자로서 그의 신분을 보도하는 것은 보도가치가 없다는 결론’에 주목하였다. 법원은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요인과 두 법익간의 균형을 검토하였다.”

“Shulman 사건에서 법원은, ‘그 방송의 전반적인 주제는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이었다고 결론지었다. 더 중요한 쟁점은, 구조되어 치료받는 피해자들의 이미지가 과연 보도가치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법원은 그러한 이미지가 보도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2] 보도가치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에 실패한 Shulman 판결의 한정적인 판시내용을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의 관찰이 이 사건 문제의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특

히 Shulman 판결에서는 “Briscoe 판결 이래 공적 기록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의 사법절차에 관한 진실한 보도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헌법이 보호하는 범주에 들어간다.”는 취지의 고등법원 결정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았다. ‘과거’의 사법절차에 관한 진실한 보도 역시 보호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Shulman 판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당원(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위 고등법원의 위 법리가 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한정적인 제한을 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당원(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Shulman 판결에서 Cox 사건을 다룬 고등법원의 주된 관심사는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정부의 행동을 보도하는 언론의 책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당원은 또한, Cox 판결의 전제인 “州는 공적인 기록을 통해 정보를 공중의 영역에 놓은 이상 공적 이익은 달성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을 한다.

마지막으로 당원(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Florida Star 판결에서의 고등법원은 “정부가 언론에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그 정보의 유포가 공중의 영역에 있다는 묵시적인 결정을 한 것이고, 그러한 결정을 믿고 보도를 한 언론사를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점에 의존하여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 주목한다.

[3] 피고들이 만든 기록영화가 역사물이나 역사물의 재현이 아니라 사건 보도에 불과하다고 하여 헌법적 보호를 받기에 미흡한 것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뉴스 보도’이든 ‘연예오락기사’이든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정도로 적용된다. 다른 주의 고등법원이 유사한 사생활 침해소송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제1수정헌법이 현재의 사건을 보도하는 사람보다 역사가를 덜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이유들 때문에, Cox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선례가 될 수 없다. 당원은, 위 고등

법원과 같이, “언론에 공적 기록을 공표하고나서,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불쾌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보도를 금지”하는 과정을 밟고 싶지 않다. 그러한 법리는 언론으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면서 공적 문제에 관하여 일반인들에게 보도를 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법리는 언론으로 하여금 겁을 먹고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일반인들이 알아야 하는 많은 정보’를 보도되지 못하게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4] 따라서 Cox 판결과 그 따름 판례에 따라 당원은 “형사절차에 관한 공개된 공적 기록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언론사가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이 사건 사생활 침해소송은 제1수정헌법에 의하여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다.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은, 청구살인 음모후 원고가 자신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말한 사실을 피고가 폭로한 점과 원고의 인물사진을 방송한 점”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위 사실이나 원고의 사진은 원고가 1992년 체포되어 기소될 당시의 기록에 이미 나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사생활 침해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반면 피고의 反SLAPP법 제정신청은, ‘법률판단문제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생활침해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인다. 이와 반대의 결론을 내린 제1심 법원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주 문(Disposition)

원심의 결론(항소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출 처 : Media Law Reporter Vol. 33, No. 6, pp.1173~1181.

번 역 : 윤 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 □

영국사례 1

**‘부부교환 모임’은 공공의 관심사로 이를  
잠입취재한 것은 합법적인 언론활동으로 볼 수 있다**

불만처리위원회는 Lutterworth의 Liberty Hotel의 소유자인 Neil Armstrong씨가 The News of the world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만신청인은 자신의 호텔에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부교환모임’에 위 신문의 기자 2명이 취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참가하여 현장을 취재하고 사진을 찍은 것은 보도윤리강령 제10장 ‘잠입취재의 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 행사는 대단히 합법적인 것으로 공공이 관심을 가질 만한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에 대해서는 항상 공개했고, 과거에는 기사를 초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The News of the world지는 평범한 호텔에서 가끔 개최되는 부부교환모임은 일반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취재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잠입취재한 것은 합법적인 언론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기자들이 신분을 밝혔을 경우 만족할 만한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진 취재 또한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정당한 취재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일반인들도 우연히 이 모임에 참여했을 수도 있으므로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한다는 언론사측 방어논리를 반박했다. 즉, 불만신청인은 부부교환 모임은 회원들에게만

공개되어 있으며 호텔에 들어오는 누구든 모임의 성격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사실, 모임행사 동안은 회원이 아니라면 로비를 지나갈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로비가 바라보이는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성적 행위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불만신청인의 가장 중요한 불만은 기자들이 행사에 참석하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 그들을 감독할 수 없었던 점이라고 판단했다.

보도윤리강령 제10장은 기자의 취재행위에 관한 것으로, 불만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자들이 호텔지배인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회원신청서에도 단지 자신들의 이름만 게재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불만신청인이 운영하는 부부교환모임은 사회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이를 취재 보도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며, 이를 잠입 취재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언론

활동이라고 판단하여,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영국사례 2

**불만신청인이 자신의 건강문제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불만신청은 이유있다**

불만처리위원회는 Louise Miliband 여사가 The Mail on Sunday 2005년 1월 2일자 기사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보도 윤리강령 제3장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불만신청을 인정했다.

The Mail지는 기사에서 예비내각의 장관인 David Miliband씨 부부의 입양 문제를 보도하면서 부인의 건강에 관해 자세히 보도했다. 이에 대해 불만신청인은 자신의 건강문제는 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로 공적인 관심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세히 보도함으로써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The Mail지는 이 보도로 인해 불만신청인에게 고통을 안겨 준 것에 대해 깊이 사과했고,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약속했으나, 불만신청인은 이를 거절했다. 불만신청인의 건강에 관한 자료는 그녀 부친의 친구가 제공한 것이

고 The Mail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내각의 대변인실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대답을 얻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사는 불만신청인의 건강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보도했으며, 국제입양문제가 공공의 관심이 되고 있기에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불만처리위원회는 신청인의 건강문제는 극히 사적인 것으로 이에 대한 공개가 합법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건강문제가 공공의 관심사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문제의 기사는 이 두 조건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가족 친구가 미국에 있는 기자에게 사실을 공개한 것은 불만신청인이 공개에 대해 동의했음을 암시한다는 언론사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문제의 친구가 불만신청인의 동의하에 말을 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

언론사는 보도에 앞서 예비내각 공보관실로부터 불만신청인의 건강문제에 대해 보도해도 좋다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 더욱이 언론사가 그 뉴스를 동정적으로 다룬 것은 부적절했다. 따라서 불만처리위원회는 불만신청인의 건강상태를 동의 없이 보도해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 보도윤리강령 제3장을 위반했다는 불만을 인정했다. □

영국사례 3

**범인체포현장 취재기사에서 설사 범인의 신원이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다**

불만처리위원회는 Grimsby 지역에 살고 있는 Marks Balls씨

가 The Grimsby Telegraph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The Grimsby Telegraph지는 2004년 11월 29일자 『경찰 5명의 축구장 홀리건 체포』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이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다수의 홀리건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체포된 홀리건 가운데 하나인 불만신청인은 위 기사가 자신의 집주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었다며 이는 보도윤리강령 제3장 사생활의 장을 위반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불만신청인은 본문기사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거리의 이름이 공표되었고, 함께 게재된 사진에서 자신의 집 주소가 드러나 있으며, 신문사 웹 사이트에 올라 있는 사진에도 자신의 집 주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언론사측은 경찰의 요청에 의해 체포과정을 동행 취재했다고 밝히면서, 기사와 현장 사진 어디에도 불만신청인은 물론 불만신청인의 집주소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이 불만을 제기한 후 웹 사이트에 올려놓았던 사진을 삭제했으며, 신청인에게 공적으로 사과했다고 밝혔다.

불만처리위원회는 독자들이 신문 및 웹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와 사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

한다면, 불만신청인이 누구인지 알 수는 있겠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언론사가 사진 설명 기사에서 그 현장이 불만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밝히지 않았고, 사진에 불만신청인의 집 주소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며, 12개 지역에서 체포 작전이 있었다고 보도하는 등 불만신청인의 신원을 적시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가 불만신청인의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공표한 것이 경찰이 범인을 체포한 현장이라는 점 때문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보인다면 이는 억지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즉, 체포가 이루어지는 동안 불만신청인의 이웃이나 현장을 지나던 사람들이 이에 상황을 알 수 있기에, 이는 그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 된다. 따라서 이 보도가 불만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 더구나 경찰이 동행 취재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보았다. □

## 영국사례 4

### 적나라한 사진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군사학교 교사 관련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불만처리위원회는 The Daily Mirror지 2005년 1월 15일자 『적나라한 사진 스캔들의 주인이 된 선생님』 제하의 기사가 보도 윤리강령 제1장 정확성의 장 및 제3장 사생활의 장을 침해했다며 한 부인이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사는 군사대학 교사인 불만신청인의 적나라한 사진이 학교 당국에 의해 발견되어 정

직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불만신청인의 사진들 가운데서 얼굴 사진만을 뽑아 게재했다.

이에 대해 불만신청인은 문제의 사진들은 친구가 보낸 것으로 언론사가 보도하기 전에 공공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진의 보도는 그녀 자신의 사생활

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까지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 기사는 마치 그녀 자신이 그런 성난 이미지가 공표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게 작성되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언론사측은 불만신청인의 성난 이미지가 표현되는 것을 최대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문제의 기사는 학교측 대변인에게 확인한 것이고 군사학교로부터 그녀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은 기사화하기에 무리가 없는 소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사는 불만신청인이 그런 성난 이미지의 사진이 게재되는 것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불만신청인은 문제의 기사로 인해 자신이 학교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직업과 사생활은 별개의 것이며, 사진이 게재됨으로써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불만처리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학교측의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불만처리인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불만신청인의 사진은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그녀의 행위는 문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따

라서 위원회는 정직처분의 배경을 기사화한 문제의 기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런 이유로 불만신청인의 모든 사생활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논쟁의 대상이 된 사진들은 적나라했고, 어느 정도는 공공의 영역에 속하지만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고자 할 때에는 불만신청인의 사생활과 정당한 공공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균형있게 보도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얼굴 사진만을 게재한 것

은 언론사의 정확한 판단에 따른 올바른 결정으로 불만신청인이 받게 될 수치감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판단, 위원회는 보도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한편 정확성의 장을 위반했다는 불만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문제의 기사는 불만 신청인이 성난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보여 주려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정확성의 장 또한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 □

## 호주사례 1

### 불만신청인의 견해가 토론의 대상이 된 경우 이에 대한 언론사의 반박문 게재는 정당한 언론활동이다

호주신문평의회는 Tony Kevin씨가 The Australian지 2004년 11월 24일자 여론란에 게재된 Janet Albrechsten씨의 『생각없는 판단』 제하의 칼럼과 그 칼럼에 대한 자신의 독자투고에 대해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칼럼에서 Albrechsten씨는 팔루자에 대한 미군의 선제공격은 범죄라는 불만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는 생각 없

는 반미주의자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Albrechsten씨는 “Kevin씨는 팔루자에 대한 미군의 공격은 단순히 팔루자에 대한 공격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1944년 나치에 의한 바르샤바 공격과 1999년 러시아군의 체첸 수도인 그로즈니에 대한 공격과 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팔루자에 대한 공격이 전쟁범죄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를 나치에 의한 바르

샤바 공격과 비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참을 수 없는 일이며, 지적인 성격 파탄자의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는 사실 관계를 무시하고 단지 정치적 이유만 고려하는 단순하고 생각 없는 반미주의자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불만신청인은 Sydney Morning Herald지에 게재한 독자 의견기사에서 팔루자에 대한 미군의 공격은 전쟁범죄라 주장하면서,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또한 이러한 전쟁 범죄에 도덕적으로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독자투고형식의 기사를 게재해 주겠다는 언론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350자에 달하는 투고문을 보냈다. 그러나 언론사측은 이를 150자로 줄여

2004년 11월 25일자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불만신청인은 편집된 투고문은 미군의 팔루자에 대한 자신의 견해 중 입증할 수 없는 주장만 제기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자신의 투고내용을 바꾸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신문평의회는 불만신청인이 The Sydney Morning Herald지와 자신의 웹 사이트 그리고 Sydney에서 한 연설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밝힌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의 의견은 토론의 대상이 되었고 그에 대해 다른 언론사가 반박의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정당한 언론활동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위원회는 투고기사의 경우 그 의미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집 게재하는 것은 언론사의 권리라고 밝히면서 불만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 보상금을 부모들이 남용했다고 보도했다. 교회에서 지불한 2백10만불의 보상금 중 일부가 수영장 사용료, 해외여행경비 또는 저당금을 갚는데 사용되었다고 보도했다. 보상금은 수표로 가족들에게 지불되고 있고 교회는 이 보상금이 아동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성폭행당한 아동들의 부모들인 신청인들은 문제의 기사가 대단히 악의적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단정적이고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고, 교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모든 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자신들의 인간관계와 재정문제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언론사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듣고 기사화했다면 좀더 정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사측은 불만신청인들 중 누구도 그 기사가 오보라고 진술하고 있지 않으며, 취재원들이 그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호에 문제의 기사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신문사가 보상금을 남용한 부모들을 비난할 자격이

## 호주사례 2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기사라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기사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주신문평의회는 성폭행당한 아동들의 부모가 The Independent Weekly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 신청을 받아들였다.

아델라이데 지역에서 발행되

는 위 잡지는 2004년 11월호 『성폭행 보상금을 남용한 부모들』 제하의 기사에서 학교 버스 운전기사에게 성폭행당한 어린이들에게 지역 천주교에서 지급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 3건의 독자투고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어쨌든 언론사측은 특정 부모들을 거론하고, 어떤 식으로든 어떤 가족을 특정하고, 그 부모들로부터 온 항의 편지를 게재한 것은 남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증거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신문평의회는 이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공정하고 균형 있는 기사를 보도하기 위해 언론사는 아동들의 부모의견을 기사에 반

영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이 기사는 교회에서 지급한 보상금의 남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에, 어떤 방법으로든 남용 혐의가 있는 부모들을 직접 취재했어야만 했다. 신문평의회는 언론사가 이러한 노력을 했더라면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기사가 작성·보도되었다는 불만은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러한 노력 없이 불만신청인의 신원을 공포하였다며 불만신청을 받아들였다. □

이러한 정책은 수립된 바 없으며, 이는 자유당 정책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언론사측은 보도에 앞서 Brown의원에게 녹색당 주요 정책 보고서를 요구했으나, 녹색당은 웹 사이트를 참조해 줄 것을 요구했고, 웹 사이트의 자료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만 신청인의 불만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다음 연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Brown의원이 기자 회견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언론사 측은 수정 없이 보도했다. 이 기사에 대한 Brown 의원의 반박 기사는 다음 달에 보도되었다.

신문평의회는 위 기사는 대단히 부정확하며, 그 결과 평의회 보도 기준, 즉 기사가 정확하기를 조사하고, 부정확한 보도가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실히 하며, 공공이 관심을 갖는 문제는 공정하고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한다는 등의 보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만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대해 언론사측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평의회는 이를 기각했다. □

### 호주사례 3

#### 연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 언론사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호주신문평의회는 녹색당 상원의원인 Bob brown씨가 The Herald Sun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을 인정했다. The Herald Sun지는 2004년 8월 31일자 『녹색당, 불법의약품 지지』 제하의 기사에서 녹색당이 추구하는 주요 정책에 관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불만신청인은 보도 내용이 잘못되었고, 이 기사는 2004년 연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불만신청인은 첫째, 법인세를 달러당 49센트까지 인상할 것이라

고 보도했으나, 이는 현재 녹색당의 정책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둘째,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덜 먹고, 기업가들로 하여금 철도, 선박 같은 대안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며 화상회의를 적극 권장한다고 보도했으나 이를 강제로 실시할 예정은 아니다. 셋째, 사업이민을 줄이고 주택세를 부과하며, 1995년 수준으로 사회조직을 축소하겠다고 보도했으나 이러한 정책은 수립된 적이 없다. 넷째, 인구를 2천만명으로 제한한다고 보도했으나

# 언론과 법

## 언론소송과 판결

### “보안사 안가 특해보도 명예훼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박동영)는 4일 조선일보사가 “보안사 안가를 사들이면서 신군부의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주)한겨레신문사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사에 모두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일보 전 대표이사 방우영이 회고록을 통해 '12·12사건 직후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만났는데 그가 국방헌금 내는 셈 치고

신문사가 정동 안가를 인수해달라고 요구해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인수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이어 2001년 장영달 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래혹막을 밝히려며 조선일보와 보안사의 '토지 교환승낙서'를 공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국회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의 인용보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권언유착'의 신호탄이나 부정간 정치자금 수수의 증거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 2001년 9월10일 국

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장영달 의원이 80년 4월 조선일보 방우영 당시 사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교환 승낙서'를 입수해 공개하며 “1980년 5억원이 넘는 보안사 정동 안가와 2억원에 불과한 조선일보사 연회동 가옥이 맞교환됐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확인 취재를 거쳐 “조선일보사의 눈부신 성장과 '권언유착' 의혹도 여기서 단서를 찾게 될 지도 모른다”는 등의 기사와 만평을 실은 바 있다.

한겨레 2005년 2월 5일

### 이신범 씨 국정원·검찰 상대 1억원 손해소

국가정보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기간 판결을 받은 이신범 전 의원은 27일 국가와 국가정보원 및 검찰 관계자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장에서 “국회의원의 직

무상 활동을 증거도 없이 기소해 6년 동안 괴롭힌 국정원과 검찰의 공권력 남용을 응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1999년 4월 “국정원이 국회의사당 529호실을 비밀사무실로 운영하며 정치권의 동향을 파악하고 감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4월 기소됐으며, 국정원이 같은해 12월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소기간으로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2005년 4월 27일

### 인터넷 명예훼손·성폭력 ‘위험수위’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과 성폭력이 최근 수년사이 급증, ‘위험수위’에 도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 산하 ‘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센터’에 접수된 상담의뢰건수는 2001년 278건에 불과했으나 2002년 1천248건, 2003년 1천916건에 이어 지난해엔 2천285건으로 각각 파악됐다. 특히 이중 명예훼손 상담의뢰건수는 2001년 33건에 그쳤으나 2002년 115건, 2003년 894건, 2004년 979건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윤리위측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없이 명예훼손이나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근의 상황으로 미뤄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윤리위 관계자는 특히 “명예훼손 등 사안이 중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권고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한다”며 “따라서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과 성폭력 등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과 성폭력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온라인 실시간 상담시스템 구축과 홍보강화, 법률지문활동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접수된 각종 사이버 범죄신고건수는 지난 2002년 11만8천868건, 2003년 16만5천119건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의 경우에도 아직 통계는 잡히지 않았지만 약 20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2005년 2월 10일

## 대법, 특정한 모욕주는 ‘대화명’ 사용 유죄

인터넷 이용자들이 빈번히 사용하는 MSN 메신저에 특정인을 모욕하는 내용을 대화명으로 사용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해직된 회사 대표를 모욕하는 내용의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MSN 메신저에서는 메신저 화면을 켜자마자 대화상대방들의 메신저 로그인과는 무관하게 대화명이 적시된 화면이 게재되는 만큼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화명을 사용, 다수가 쉽게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이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인력채용 사이트에 게시한 글은 단순한 의견의 개진인 아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의 적시”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 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재작년 10월 모 컴퓨터 관련 업체에 고용된지 20여일만에 해고되자 이 회사 대표에게 욕설 내용의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하고, 인력채용 사이트 게시 판에 해직된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매일경제 2005년 2월 23일

## “김대업 씨 · 오마이뉴스 등 한나라에 1억 줘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 씨와 이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등 두 곳을 상대로 한나라당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모두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른바 ‘병풍’ 사건의 핵심인 김씨는 5000만원, 오마

이뉴스는 3000만원, 주간지 일요시사는 2000만원을 한나라당에 물어주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2002년 7월 김씨가 “병무청 관계자와 한나라당이 병역비리 은폐를 위해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하고, 오마이뉴스 등이 이를 보도하자 “허위보도로 대선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1, 2심 재판부는 “김씨 주장은 검찰 수사결과 허위로 밝혀졌다”면서 “오마이뉴스 등도 제보나 소문에 대해 고도의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고 무책임한 기사를 게재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2005년 5월 10일

## 유인태 전 수석에 300만원 배상 판결

청와대 공식 기자회견에서 특정기자를 지칭하며 불쾌한 감정을 표현한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열린우리당 도봉을 국회의원)이 해당 기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0단독 김태훈 판사는 29일 대한매일신보(현 서울신문) 전 청와대 출입기자 곽OO 씨가 유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유 의원은 곽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곽 기자는 2003년 10월 대한매일 1면에 당시 논란이던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 “대통령 재신임 투표, 야당에서 반대하면 강행하지 않겠

다”고 보도했다.

이에 유 의원은 “곽 기자가 자신의 질문을 나의 답변으로 왜곡해 보도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이어 곽 기자는 기자칼럼에서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답한 내용을 기사화한 것인 데도 오히려 청와대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 보도했다.

유 의원은 칼럼이 보도된 날 오전, 기자들이 모인 청와대 춘추관에서 곽 기자를 지목, “정말 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다. 당신, 그러면 안 돼. 사기 치는 거야. 녹음이 안 돼 있다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것 아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유 수석이 기자회견석상에서 공개적으로 기자를 직접 지명해 언성을 높여 항의한 것은 당시 참석자들에게 ‘곽 기자가 기자로서 전혀 없는 사실을 근거로 허위 기사를 게재했다’는 취지로 오인(誤認)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또 “더욱이 곽 기자가 통화한 내용과 다른 취지로 보도했다고 해도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넘어 청와대 기자회견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언성을 높인 것은 곽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못 박았다

조선일보 2005년 4월 30일

## '靑에 北스파이 침투설' 언론사, 靑 맞고소

황인성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이 최근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인터넷 매체 프린티어 타임스의 대표이사과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해당 언론사가 명예훼손이라며 맞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린티어 타임스는 21일 "본지에 보도된 기사는 단순 허위사실이나 단순 추측으로 쓴 글이 아니다"면서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있다"는 내용은 본지 주관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일본 주간지 '주간문춘'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또한 "황 비서관이 몇 번의 욕고를 치렀다는 이유로 북한의 스파이라고 보도한 사실이 없다"면서 "과거 이미 밝혀진 내용과 법원이 내린 판결 등을 근거로 기사를 쓴 것이지 기사 속에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주장은 전혀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에 황 비서

관이 주장하는 내용은 비방이자 매도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황 비서관이 "허위사실의 나열과 무분별한 비약, 추측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한 보도기사인지 극우단체의 매터도적 유인물인지 구분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중도·정도를 표방하는 신문인 본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극우단체로 비하했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좌파, 우파를 나눠 편가르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프린티어 타임스는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다"는 기사를 최초 보도한 일본의 주간지 '주간문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본지 기사가 보도된지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황 비서관이 본지를 '허위 보도'라며 고소한 사실을 보도 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창 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프린티어 타임스는 지난해 11

월 2일 "일본 주간지 '주간문춘'이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다'는 보도에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친북 좌파들의 급부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이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청와대 인사는 황인성 시민사회비서관"이라며 황 비서관의 이력을 상세히 소개했다.

황 비서관은 고소장에서 "허위사실의 나열과 무분별한 비약, 추측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한 보도기사인지 극우단체의 매터도적 유인물인지 구분되지 않는다"며 "몇번의 욕고를 치렀다는 사실을 들어 '북한의 스파이'라는 주장을 들어 '북한의 스파이'라는 주장을 어이없는 매도이자 비방"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인터넷 매체를 고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일보 2005년 2월 21일

## "총풍 때 안기부가 사생활공개, 국가책임 5천만원 배상하라"

이른바 '총풍' 사건에서 안기부가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김윤기)는 17일 오후(53)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장OO(56)씨가 "안기부의 가혹행위,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오씨에게 1천만원, 장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언론에 보도된 안기부 내부 문건에 '내연의 여자가 있다' '빛 때문에 이 사건을 모의했다'는 등 장씨의 사생활을 공개한 것

은 정당한 수사 발표를 넘어서 명예훼손"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해명할 목적으로 안기부가 문건을 작성했고, 문건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이들을 조사할 때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해 정신적 고통을 끼친 데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건 당시 '고문에 의한 안기부의 조작극'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큰 논란이 일었던 점과 관련해, 재판부는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문을 당한 상황에 대한 장씨와 오씨의 진술이 계속 바

뀐 점이나 장씨의 멍든 몸을 찍은 사진을 감정한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이들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03년 이 사건 상고심에서 "총격 요청 등 한씨의 돌출행동이 있었지만 세 사람 사이에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나, 고문·조작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총풍 사건은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씨와 장씨, 그리고 한OO(46)씨가 관문점 총격시위를 북한에 요청했던 사건을 말한다.

한겨레 2005년 4월 17일

## 경찰 ‘패러디 수사’ 청와대 지침없이 골머리

경찰이 한 보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이른바 ‘대통령 저격 패러디’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쳤지만 청와대의 ‘지침’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패러디 만평을 실은 인터넷 매체 ‘독립신문’ 대표 신OO 씨(36)와 이 패러디를 제작한 A(21)씨를 조사하고 독립신문 서버와 A씨의 개인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하는 등 사실상 수사를 마쳤다.

경찰은 그러나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청와대의 지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반의사불벌죄는 공소 제기할 때 피해자에게 처벌을 요구하는지 물어봐야 하는 것이지만 명예훼손 자체에 대해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

서 “위임을 해도 되는 만큼 청와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패러디 그림은 지난 16일 우익 인터넷 매체 ‘독립신문’에 한 네티즌이 독자 투고 형식으로 올린 것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마를 저격수가 정조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2005년 5월 10일

## 검찰, 수사과정 피의사실 공표 엄격 제한

검찰은 앞으로 피조사자의 소환사실 공개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수사단계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 방침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피조사자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리에 연루된 일부 정치권의 불만과 청와대의 문제제기에 떠밀려 국민의 알권리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찮아 논란이 예상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4일 제42회 법의 날을 맞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검찰은 중립적 수사 못지 않게 수사과정의 인권보호도 절실하다는 국민적 여론을 수용하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문제제기 등을 감안,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문제가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 제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피조사자의 소환사실 공개 및 중간수사 발표 등을 강력히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언론사로부터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 문의시 이를 확인해주는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사 담당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인권침해 사례에 준해 자체 감찰활동을 벌어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문제가 ‘언론사간 과당 취재경쟁’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오보를 내거나 청사내 사진촬영 금지 등 취재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기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 등 언론사에 대한 직접 제재도 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 등 심리단계에서 피의사실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행개선을 요청하고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이나 검찰 송치시 피의사실 공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번 방침은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현행과 같은 브리핑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언급, 수사와 관련된 대언론 브리핑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조사자가 수사담당자를 쉽

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관 실명제를 도입하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및 가족 참관의 확대,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감찰 및 인사반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검찰과 별도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감청영장 신청시에도 구속영장처럼 ‘영장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증거물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 증거물의 훼손 및 유실 등을 방지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반말·욕설 등 비하적 언어사용을 일절 금지하고 원격 화상조사제를 현행 고소인·참고인에서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며 조사시간을 자정으로 제한하는 등 밤샘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검찰은 동의없는 임의동행 금지, 긴급체포시 감독자의 사전승인 등 영장주의와 불구속 수사원칙을 준수하고 주민등록 사항이나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 조회를 엄격 통제하며 범죄 피해자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에도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2005년 4월 25일

### 상담센터 출범 1주년 맞아

지난 4월 1일로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언론보도피해의 사전예방 및 구제에 관한 교육을 위해 지난해 4월 1일 문을 연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는 1년 동안 모두 2,371건의 상담을 했으며, 언론사, 대학교 및 각급 단체들을 대상으로 모두 60회의 교육을 실시했다.

### 제주지역토론회 열려



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제주지역 인사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가졌다. 고창실 위원(전 제주산업정보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종배 위원(전 제민일보 상무이사)이 「달라진 언론중재제도와 중재위의 역할 -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살펴본 중재절차」라는 주제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지역의 언론계, 관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8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7월 28일 시행을 앞둔 언론중재법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 부산간담회 개최

조준희 위원장은 4월 20일 부산에서 지역 언론사 대표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노기태 국제신문사장, 이몽룡 KBS 부산방송총국장, 강중묵 부산MBC 사장, 박용길 부산방송 사장, 김봉남 CBS 부산방송본부장 등 언론사 대표와 부산중재위원들이 참석하여 언론피해의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중재위원 워크숍

위원회는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충북 수안보파크호텔에서 중재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새 언론중재제도의 실무적 운영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박영상 위원(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 사회를 맡았으며, 양삼승 위원(변호사)과 송영천 위원(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 각각 「중재절차의 변화와 효과적인 운영방안」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효율적 조정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 언론피해구제교육 교재 펴내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는 지난 4월 11일 언론피해구제교육용 교재를 발행했다. 이번에 펴낸 교재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과 언론중재위원회」 및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과 언론중재위원회」등 모두 2권이다.

상담센터에서는 언론사, 기업, 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료로 언론피해예방 및 구제에 관한 교육을 해왔다.



### 위원회 자료실 개방

위원회는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도서 및 정기간행물, 자료, 해외원서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5월 9일부터 자료실을 개방 운영하고 있다. 도서 및 자료 목록은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자료실 이용지침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 한달 동안 소장 도서 및 자료 목록을 재분류하고 서고를 재정비했다.

자료실은 서울 프레스센터빌딩 9층(조사연구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 도서 및 자료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다.

- 강병국(2005, 2월). 새 언론법 국회통과: 언론피해구제법 해설 - 명예훼손 위법성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가능. **신문과 방송**, 제410호, 26-30.
- 강형철(2005, 4월). 공영방송: 합리성과 독립성 제고 위한 규제방식. **방송문화**, 제286호, 8-11.
- 김구철(2005, 3월). 방송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방송법 개정안 문제 있다. **신문과 방송**, 제411호, 18-21.
- 김기원(2005, 봄). 광고와 언론: 광고에서도 언론자유 확대해야. **관훈저널**, 통권 제94호, 111-121.
- 김동균(2005, 3월). 방송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방송법 개정 추진 배경과 내용. **신문과 방송**, 제411호, 13-17.
- 김동률(2005, 4월). '공인의 프라이버시권' 논란: 공인에게는 알권리가 프라이버시보다 우선해. **시민과변호사**, 제135호, 14-18.
- 김영섭(2005, 봄). 블로그 해부: '기자 블로그'의 공익성과 책임성. **관훈저널**, 통권 제94호, 31-40.
- 김재협(2005, 봄).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중재제도: 새 법률상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의의. **언론중재**, 통권 제94호, 26-41.
- 김주희(2005, 3월). 디지털시대 방송심의 제도 개선방안: 심의제도 개선 필요. **방송문화**, 제285호, 2-3.
- 김창룡(2005, 2월). 새 언론법 국회통과: 신문법 통과 이후의 과제 - 신문발전위 업무중복과 예산낭비 우려. **신문과 방송**, 제410호, 18-21.
- 문건영(2005, 3월) A의원 호텔방 소동 보도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알권리인가. **신문과 방송**, 제411호, 84-87.
- 문재완(2005, 2월). 새 언론법 국회통과: 신문법 무엇이 문제인가 = 신문자유 핵심인 경영보호를 부정해. **신문과 방송**, 제410호, 13-17.
- \_\_\_\_\_ (2005, 4월). 상업적 표현의 자유와 방송광고사건 심의제도. **인권과정의**, 제344호, 43-60.
- 박수택(2005, 3월). 위기의 언론윤리: 범언론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 **신문과방송**, 제411호, 44-47.
- 박진우(2004, 상권). 프랑스의 신문시장 독점방지와 경쟁보장을 위한 법제. **세계의 언론법제**, 146-184.
- 박형상(2005, 2월). 새 언론법 국회통과: 신문법 제정의 취지와 한계 - 신문의 기능 및 점유율 법 개념 연착륙. **신문법 통과 이후의 과제 - 신문발전위 업무중복과 예산낭비 우려**. **신문과 방송**, 제410호, 8-12.
- 손태규(2005, 2월). '현실적 악의 규정'에 대한 인식과 판단: 한국 법원과 외국 법원의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49(1), 192-220.
- \_\_\_\_\_ (2005, 봄). 법원의 편향된 언론관. **관훈저널**, 통권 제94호, 186-198.
- 송영신(2005, 봄). 언론법 제정과 시행령 쟁점: 언론피해구제법 시행령 주요 쟁점. **열린미디어열린사회**, 통권 제13호, 134-145.
- 양삼승(2005, 봄).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중재제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언론중재**, 통권 제94호, 4-25.
- 양창수(2005, 봄). 명예훼손의 범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 **언론중재**, 통권 제94호, 54-65.
- 윤석민(2005, 3월). 방송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논란의 배경과 쟁점. **신문과 방송**, 제411호, 8-12.
- 이용성(2005, 봄). 언론법 제정과 시행령 쟁점: 신문법 시행령 주요쟁점. **열린미디어열린사회**, 통권 제13호, 104-115.

- 이재진(2005, 4월). '공인의 프라이버시권' 논란: 언론 보도로 인한 공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국민의 알권리. *시민과변호사*, 제135호, 19-23.
- 이효성(2005, 봄). '연예인 X파일' 사건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 *언론중재*, 통권 제94호, 42-53.
- 임중수(2005, 3월). 디지털시대 방송심의 제도 개선방안: 해외방송 심의제도의 현황과 함의. *방송문화*, 제285호, 4-7.
- 장 일(2005, 3월). 연예인 X파일과 연예저널리즘: 연예인 X파일 보도점검. *신문과 방송*, 제411호, 119-121.
- 장호순(2005, 봄).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중재제도의 변화. *언론중재위원회 지방토론회 발제논문*, *언론중재*, 통권 제94호, 110-112.
- 정상규(2005, 봄). 사이버 명예훼손의 제문제(상). *언론중재*, 통권 제94호, 66-79.
- 정재호(2005, 3월). 연예인 X파일과 연예저널리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본 연예인 X파일과 언론윤리. *신문과 방송*, 제411호, 114-118.
- 조동시(2005, 3월). 2004년 시청자불만처리와 언론중재. *신문윤리위 제재현황*. *신문과 방송*, 제411호, 140-143.
- 조준상(2005, 봄). 언론법 제정과 시행령 쟁점: 방송위 방송법 개정안 논란. *열린미디어열린사회*, 통권 제13호, 134-145.
- 주동황(2005, 3월). 신문법 시행령 제정방향: 신문발전위 직무와 기금운영방안이 핵심. *신문과 방송*, 제411호, 130-132.
- 초성운(2005). 통신 방송 융합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방향. 이재웅 국회의원 주최 '방송과 통신이 하나 되는 시대' 정책토론회 발제논문 2005. 2. 15.
- 최영목(2005, 3월). 디지털시대 방송심의 제도 개선방안: 방송심의제도 쟁점과 개선방향. *방송문화*, 제285호, 8-11.
- 최영재 · 홍성구(2004, 12월). 언론자유와 공정성. *한국언론학보*, 48(6), 326-343.
- 최용준(2005). 케이블TV산업의 현주소와 법제 개선방향. *방송위원회 주최 '케이블TV 10년 평가와 향후 전망' 세미나 발제논문*, 2005. 1. 27.
- 한상혁(2005). 재허가 추천 거부 이후의 법적인 문제 검토. *언론개혁시민연대 · 언론노동조합주최 '경인지역방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논문*, 2005. 1. 26.
- 한영학(2005, 3월). 방송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NHK의 '정치적 공평' 기준과 예산운영 시스템. *신문과 방송*, 제411호, 22-25.
- 한중호(2005, 봄). 참여정부와 언론정책. *관훈저널*. 통권 제94호, 233-241.
- 함석천(2005, 봄).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중재제도: 손해배상청구권의 도입과 언론중재. *언론중재*, 통권 제94호, 42-53.
- 허행량(2005, 봄). 연예인 X파일. *관훈저널*. 통권 제94호, 199-208.
- 홍기선 · 황근(2005). 방송 · 통신 융합에 대응한 정부정책 평가: 규제기구간 정책갈등을 중심으로. *한국뉴미디어방송협회 주최 '방송 · 통신 융합의 정책이념과 실제' 세미나 발제논문*, 2005. 2. 16.
- 황용석(2005, 2월). 새 언론법 국회통과: 인터넷언론 법제화의 의미 -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다원주의 적용될 것. *신문과 방송*, 제410호, 31-35. □

# On-Line 중재 상담실



## 망자의 죽음에 관한 언론의 과도한 보도

얼마 전 친척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방에서 독극물이 나왔고, 경찰에서는 자살로 추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주의 의견에 따라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하지 않았습니 다. 즉 정확한 사인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도 그냥 자살추정으로 결론난 상황입니 다. 그러나 신문과 라디오의 보도 내용은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 했다'로 나왔습니다. 더욱이 보도 내용 에는 사는 동네와 이름(김모 씨 처럼)까지 정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는 것은 어떻게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을 사실인 양 보도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사에서 동네 이름과 고인 의 성까지 보도하여 사생활까지 침해하였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보도입니까? 보도에 대한 정정 기사 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기사 가 나갔다는 것이, 사생활을 침해 했다는 것이 화가 납니다. 유족들은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우리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중재절차를 통해 정정 보도나 반론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하거나, 정기간 행물을 자체 심의하여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권리를 침해한 기사 등에 대하여 시정권고 하는 기관입니 다.

자살사건을 보도하면서 고인의 신원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공개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 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사내용이 공공의 관심사로서 우월한 공 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사는 면책 될 수도 있습니다.



## 언론보도에 대한 질문

언론보도 시 제보자의 의견만 듣고 기사화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사는 사실에 입각하여 제보 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게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공정한 보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허위 제보인 경우 제보자 공 개도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 야 합니까?



우리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중재절차를 통해 정정 보도나 반론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하거나 정기간 행물을 심의하여 시정권고 하는 기관입니다.

제보자의 의견을 듣고 쓴 기사가 사실과 다르 거나 편파적일 경우 우리 위원회에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에 허위 제보를 한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 을 물을 수 있겠으나 언론사로서는 취재원을 보호 해야 하는 의무도 있으므로 취재원 공개의무를 일 료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재판부에서 취재 원을 보호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과 공정한 재판실 현이라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취재원 비닉권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편파보도로 명예훼손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편파보도로 명예가 훼손 되었습니다.

○○일보 신문에 게재된 편파기사로 인해서 피 해를 본 것인데요. 물론 그분은 실명까지 거론되 었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보도되

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고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이 상대방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분께서 중재신청을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기사는 명백하게 거짓으로 작성되었고 기자는 이쪽에 사실확인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

**A** 귀하께서 문의하신 것처럼 ○○일보 지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었거나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보도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우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Q** **취재 기자의 무단 침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취재를 위하여 가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새벽에 주택 월당) 집주인의 동의 의사도 없이 원하지 않는 보도사항을 무단 취재(촬영)한 후 이를 보도하여 집주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이것 또한 중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경찰에 무단 가택침입죄로 고소 준비 중인 상황이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재 또는 처벌이 가능한 사항인지요?

**A** 우리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중재절차를 통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중재대상은 보도로 인한 피해에 한하며, 취재과정에서 발생한 가택 무단침입행위 등에 대한 중재나 처벌은 중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우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Q** **인터넷언론보도에 대해**

질의1. 인터넷언론(방송, 신문)보도에 대해서도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질의2. 작년에 허위사실을 보도한 내용이 인터넷방송사이트에 아직도 게재되어 있습니다(초기화면에는 없지만 뉴스검색으로 재시청할 수 있음). 이런 경우도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 첫째, 현재 중재신청이 가능한 매체는 '정기간행물의등 록에관한법률', '방송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의거,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방송·뉴스통신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언론을 상대로 한 중재신청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둘째, 작년의 방송내용이 인터넷 사이트에 남아 있는 경우 이 또한 인터넷 언론의 일종으로서 역시 중재대상매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5년 7월 28일부터는 새로이 제정된 '언론중재 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인터넷 매체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우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Q** **실명표기된 기사로 인한 피해 사례**

인터넷에 본인의 이름을 검색하면 기사가 나옵니다. 몇 년 전 사건입니다. 벤처기업을 했습니다. 재판의 판결은 유상증자에 관한 절차법 위반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첫 기사는 처음 체포되던 날 체포 전에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 왔더군요. 또 기사의 제목이 사이버 벤처기업 대표 구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사 본문에는 본인의 이름 실명과 나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사실과 다르고 현재 법적 책임을 다하였는데 기사검색에서 실명검색을 하면 나타나서 당시의 아픈 기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A** 우리 위원회는 보도내용이 잘못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중재절차를 통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인터넷 매체에 의한 피해는 언론중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우리 위원회에 중재신청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기사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피해 사항에 대해 반박문 게재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전화 02-3415-0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정 : 2005. 1. 1.

시 행 : 2005. 7. 28.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5. “정기간행물사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뉴스통신”이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말한다.

7.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9.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0.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1. “언론사의 대표자”라 함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언론분쟁”이라 함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3.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4. “언론보도”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5. “정정보도”라 함은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6. “반론보도”라 함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②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

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①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형제자매로 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⑤사망한 자에 대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격권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인)**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

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

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

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⑨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중재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에서 해촉된다.

**제9조(중재부)** ①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②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재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사무처)** ①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

도 2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

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 제1절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

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월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언론사의 대표자가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⑤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언론사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

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2절 조정

**제18조(조정신청)** ①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 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구술이나 서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피해자가 제14조제1항·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한 때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조정)** ①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 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한다.

⑥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⑨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⑩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증거조사)** ①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

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③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 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제21조(결정)** ①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중재부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다.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3절 중재

**제24조(중재)** ①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재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③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척·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중재부가 하고,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④중재위원의 회피는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중재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4절 소 송

**제26조(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①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부의 관할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재판)** ①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

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회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8조(불복절차)** ①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언론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법원은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의 배상)** ①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5절 시정권고 등

**제32조(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⑤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⑥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⑧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취업금지)** 형법 제357조 또는 제3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언론사의 임원이 되거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

## 제4장 벌칙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다른 규정에 의하여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물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전 언론보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 보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청구기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 또는 중재 신청기간에 관한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

행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중재위원 및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의 규정 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및 지역중재부

■ 사무처 및 서울중재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대표 02)397-3114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상담센터 02)397-3089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051)759-7083 / FAX:051)759-7084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제일빌딩 5층)  
053)763-0020 / FAX:053)763-0021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동명회관 A동 5층)  
062)676-0360 / FAX:062)676-0361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 / FAX:042)525-0779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SK생명빌딩 2층)  
031)211-9027 / FAX:031)212-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 / FAX:033)255-2879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4-62 (세전빌딩 302호)  
043)286-8083 / FAX: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 FAX: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옹호동 73-39 (동산빌딩 302호)  
055)263-1787 / FAX: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064)722-3328 / FAX:064)726-3201